

微視的 接近方法을 이용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와 稅收效果  
推定에 관한 研究

1997. 4.

成 明 宰

## 序 言

勤勞所得稅는 우리나라의 租稅 가운데 기본적인 稅目的 하나이다. 勤勞所得稅는 稅收比重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稅收增加率도 매우 높아 최근의 租稅負擔率 增加趨勢에 一助를 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勤勞所得에 대한 稅負擔이 다른 種類의 所得에 대한 稅負擔에 비해 過重하다는 의견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러한 主張의 根據로는 대부분 勤勞所得稅의 경우 課標가 100% 노출될 뿐더러 稅收增加率도 餘他 稅目的 그것을 크게 상회한다는 사실을 든다. 또한 勤勞所得稅 負擔의 絕對水準 또한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勤勞所得稅를 대폭 輕減하여야 한다는 主張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主張은 實證分析에 의한 客觀的 研究結果를 根據로 한 것은 별로 없는 반면, 論議者의 막연한 心證에 의한 推定 또는 事業所得者의 稅負擔과 비교할 때 느껴지는 相對的인 剝奪感에 연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과연 勤勞所得稅의 負擔이 다른 稅目에 비해 過重한지의 與否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心證的 呼訴에 의존하기보다는 實際 納稅資料를 基礎資料로 사용하여 勤勞所得稅 稅收의 增加要因 및 實效稅率 比較 등과 같이 객관적 자료에 입각한 實證研究 結果의 分析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勤勞所得稅는 稅收比重이 상당히 높은 稅目的 하나로서 勤勞所得稅制의 體系가 변화하게 되면 1천만명 이상의 俸給生活者 및 扶養家族들의 可處分所得 또한 크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勤勞者의 勞動供給에도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先驗的인 推測이나 洞察力을 바탕으로 所得稅 體系에 대한 改編方案을 모색하는 것은 본래의 의도와 달리 改惡의 可能性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納稅人員에서뿐만 아니라 稅收規模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勤勞所得稅 課稅體系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되게 개편하기 위해서는 納稅 關聯 資料를 분석한 實證研究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위와 같은 客觀的 資料를 이용하여 勤勞所得稅를 分析한 體系的인 研究가 不備하였다.

이에 本 研究院에서는 勤勞所得稅에 대한 實證分析이 필요하다는 現實的 要請에 따라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申告 標本資料를 바탕으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및 稅法改正 效果 推定을 위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本 研究를 수행하게 되었다.

勤勞所得稅의 課稅體系 改編을 위한 基礎 研究結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勤勞所得稅에 대한 稅收推計와 稅法改正 效果 推定 프로그램을 開發하는 것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追加的인 研究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다만 本 研究에서는 勤勞所得稅 課稅體系 改編과 관련한 實證研究의 範圍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研究로서 위의 두 가지 부문에 研究對象을 국한하였다. 여타의 다른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의 研究로써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本 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成明宰 專門研究委員이 執筆하여 완성하였다. 本 報告書의 核心要素인 資料 提供·協助에서부터 報告書의 完成·發刊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著者는 院內세미나 및 報告書 執筆 과정에서 유익한 助言을 많이 해준 本院의 여러 博士들, 그리고 익명의 두 심사자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 또한 本 研究의 시작시점에서부터 자료제공과 보고서에 대한 검토작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財政經濟院 所得稅 制課 및 國稅廳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深深的 感謝의 뜻을 표하고

있다.

本 報告書의 分析結果와 內容은 著者의 見解이며 本 研究院의 公  
的 見解를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1997年 4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 目 次

I. 序論 .....	13
II. 우리나라 所得稅의 課稅體系 및 稅收推移 .....	16
1. 所得稅의 種類 및 課稅體系(1995年 12月 29日 改正稅法 基準) .....	16
가. 所得稅의 種類와 稅率體系 .....	16
나. 綜合所得稅의 課稅體系 .....	19
다. 勤勞所得稅의 課稅體系 .....	21
2. 勤勞所得稅 課稅體系의 變遷 .....	23
가. 勤勞所得稅 稅率體系의 變遷 .....	25
나. 勤勞所得控除 體系의 變遷 .....	26
다. 人的控除 體系의 變遷 .....	29
라. 特別控除 體系의 變遷 .....	32
마. 勤勞所得稅額控除 體系의 變遷 .....	34
3. 所得稅의 稅收推移 .....	38
III. 稅收推計模型의 電算 프로그램 흐름圖 .....	42
1. 電算 프로그램 흐름圖의 概要(1996年 適用 所得稅法 基準) .....	42
가. 勤勞所得者 1人當 決定稅額 프로그램 .....	42
나.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한 電算 프로그램 .....	45

2. 出力資料의 種類 .....	47
<b>IV. 稅收推計模型의 豫測力 檢證 .....</b>	<b>50</b>
1. 分析資料 .....	50
가. 資料의 種類 .....	50
나. 資料의 構成 .....	51
2. 資料特性에 따른 分析의 限界 .....	53
3. 豫測力 檢證 .....	54
가. 豫測力 檢證方法의 概要 .....	54
나. 豫測力 檢證結果 .....	56
<b>V. 勤勞所得稅 課稅體系 改編의 模擬實驗結果 .....</b>	<b>64</b>
1. 最近의 稅法改正 效果의 推定 .....	64
가. 最近 3年間의 勤勞所得稅 稅法改正 效果의 推定 .....	65
나. 1996~1997年의 勤勞所得稅 稅法改正 效果의 推定 .....	73
다. 最近의 勤勞所得稅 稅法改正 效果에 대한 綜合 .....	75
2. 勤勞所得稅 課稅體系 改編의 效果 推定 .....	79
가. 시나리오 .....	79
나. 稅收效果 .....	80
다. 所得控除와 稅額控除의 比較 .....	87
<b>VI. 分析 및 模型의 限界點과 改善方向 .....</b>	<b>92</b>
1. 分析資料의 特性에 의한 分析의 限界 .....	92
가. 資料 特性에 의한 分析의 限界 I : 費用控除的 控除項目을 中心으로 .....	92
나. 資料 特性에 의한 分析의 限界 II : 分布變化 關聯 控除項目을 中心으로 .....	94

다. 資料 特性에 의한 分析의 限界 III: 年末精算 申告 漏落· 重複 問題 .....	95
2. 稅收推計 프로그램 關聯 問題點 .....	95
가. 標本 抽出方法의 差異에 따른 分析結果의 誤差 可能性 ...	96
나. 勤勞所得稅 納稅者 分布 推定과 關聯한 分析의 限界 ...	97
3. 改善方向 .....	98
 VII. 要約 및 結論 .....	 100
 參攷文獻.....	 104
 <附錄>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微視模型 프로그램 .....	 105

## 表 目 次

〈表 II - 1〉 綜合所得稅의 稅率體系	18
〈表 II - 2〉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	18
〈表 II - 3〉 讓渡所得稅의 稅率體系	19
〈表 II - 4〉 勤勞所得稅 稅率體系의 變化推移	26
〈表 II - 5〉 勤勞所得控除 體系의 變化推移	28
〈表 II - 6〉 所得稅 基本控除의 變化推移	30
〈表 II - 7〉 所得稅 追加控除의 變化推移	31
〈表 II - 8〉 所得稅 特別控除의 範圍와 限度의 變化推移	35
〈表 II - 9〉 勤勞所得稅額控除의 變化推移	37
〈表 II - 10〉 우리나라 所得稅의 稅收推移	40
〈表 IV - 1〉 1994~1995年 勤勞所得稅 稅收의 推定值(豫測值)	57
〈表 IV - 2〉 1994~1995年 勤勞所得稅 稅收의 推定(豫測)結果 (相對比)	61
〈表 V - 1〉 1994年 稅收推定值 對比 稅收效果 (1994年 稅收推定值=100)	67
〈表 V - 2〉 1995年 稅收推定值 對比 稅收效果 (1995年 稅收推定值[中間]=100)	72
〈表 V - 3〉 1996年 稅收推定值 對比 稅收效果 (1996年 初期 稅法 稅收推定值[中間]=100)	74
〈表 V - 4〉 1996年 稅收推定值 對比 稅收效果 (1996年 8月 稅法 稅收推定值[中間]=100)	75
〈表 V - 5〉 稅法改正 效果 推定을 위한 시나리오	81

<表 V - 6> 1996年 8月 稅法 稅收推定值 對比 1997年の 稅收(1996年 稅收推定值[中間]=100) .....	88
<表 V - 7> 1997年 稅收推定值 對比 1997年の 稅收 (1997年 稅收推定值[中間] = 100) .....	89
<表 V - 8> 1997年 稅收推定值 對比 1997年 稅收 (1997年 稅收推定值=100) .....	90

## 圖 目 次

[圖 II - 1] 우리나라 綜合所得稅制의 課稅體系 .....	22
[圖 II - 2] 우리나라 勤勞所得稅制의 課稅體系 .....	24
[圖 III - 1] 勤勞所得者 1人當 決定稅額 算出 프로그램 흐름圖의 概要 .....	44
[圖 III - 2]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한 電算 프로그램 흐름圖의 概要 .....	48

## I. 序 論

우리나라의 所得稅는 크게 申告分과 源泉分으로 구분할 수 있고, 다시 所得稅 申告分은 讓渡所得稅와 事業所得稅 등으로 세분되며 所得稅 源泉分은 勤勞所得稅와 利子·配當所得稅 등으로 세분된다<sup>1)</sup>. 이 가운데 勤勞所得稅는 所得稅 가운데 稅收比重이 가장 큰 項目으로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약 4분의 1에 가까운 약 1천만명의 人口가 勤勞所得稅의 納稅義務者인 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稅目的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所得稅의 課稅體系는 超過累進稅率 體系로 되어 있으며 課標를 算定함에 있어 일정한 所得控除를 허용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算出稅額으로부터 稅額控除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所得稅率 體系는 기본적으로 超過累進稅率 體系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수 및 소득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所得稅 課標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納稅者들의 課標區間이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되어 보다 높은 所得稅 限界稅率이 적용됨에 따라 所得稅 收入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所得稅는 稅收가 所得에 대해 매우 彈力的인 경우가 많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所得稅 輕減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稅法改正이 수차례 있었고 所得控除나 稅額控除 制度 및 稅率體系가 개편되었는바 所得稅 收入의 增加率이 상당히 둔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에는 지속적

1) 이 외에 山林所得, 其他所得, 退職所得에 대한 所得稅도 있으나 稅收比重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인 稅制減免을 골자로 하는 所得稅法의 改正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經濟 全般에 걸쳐 전반적인 賃金水準이 크게 상승하여 勤勞所得稅 등을 중심으로 所得稅 收入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所得稅 收入 增加率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所得稅 收入은 勤勞所得稅를 중심으로 매우 높은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정확하게 豫測하기 위한 研究는 많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稅收推計에 관한 연구는 다수가 있으나 대부분의 所得稅 關聯 研究는 時系列 資料의 分析을 통해 稅收의 趨勢的 變化만을 예측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個別 納稅者들의 所得分布 變化 및 課稅體系 改編에 따른 稅收效果를 예측하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勤勞所得稅를 중심으로 所得稅 稅收가 크게 增加하면서 실제의 稅收가 당초 예상하였던 豫算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稅收推計 方法에 대한 批判의 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稅收推計에 대한 요구가 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個別 納稅者에 대한 納稅 關聯 資料에 기초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에 관한 연구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바 本 研究는 이러한 점에 焦點을 맞추었다.

巨視分析을 기초로 한 기존의 연구로는 政府의 豫算編成時 所得稅 收入에 대한 정확한 豫測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所得稅와 관련한 稅制改編時에도 稅制改編에 따른 稅收效果나 分配效果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없다. 이에 따라 本 研究에서는 所得稅 가운데 가장 稅收比重이 크고 稅法改正에 따른 稅收效果가 매우 큰 勤勞所得稅를 중심으로 보다 稅收豫測力이 우수하고 또한 稅制改編에 따른 稅收效果를 잘 예측할 수 있는 微視的 接近方法을 이용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模型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政府의 豫算編成時에 유용한 資料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勤勞所得控除를 비롯한 각종 所得控除와 稅額控除 및 稅率體系 등의 改編時에 이에

상응하는 稅收效果와 分配效果 등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유용한 模型을 제공하고자 한다.

本 研究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Ⅱ章에서는 우리나라의 所得稅 課稅體系와 稅收推移를 살펴본다. 第1節에서는 所得稅의 課稅體系에 대해 綜合所得稅와 勤勞所得稅의 稅額算出 方式을 도표를 이용하여 흐름圖 形式으로 소개한다. 第2節에서는 우리나라 勤勞所得稅 課稅體系的 變遷을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第3節에서는 所得稅 稅收에 대하여 主要 所得種類別로 變化推移를 살펴본다. 第Ⅲ章에서는 本 研究의 주된 관심대상인 稅收推計의 微視的 模型 設定을 위해 勤勞所得稅와 관련한 稅收推計模型의 電算 프로그램에 대한 흐름圖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第Ⅳ章에서는 勤勞所得稅 稅收推計模型의 豫測力을 檢證한다. 本 研究에서는 1994년 歸屬分 勤勞所得稅 年末精算電算申告資料에서 層化無作爲法으로 抽出한 標本資料를 분석에 사용하는바, 稅收推計模型의 正確性 또는 豫測力을 檢證하기 위해 當該年度에 대한 勤勞所得稅 稅收를 模型分析을 통해 逆으로 推計해 본 후 그 결과를 1994년과 1995년의 勤勞所得稅 收入과 비교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第Ⅴ章에서는 第Ⅲ章과 第Ⅳ章의 논의를 토대로 완성된 微視的 接近方法을 이용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模型을 바탕으로 각종 稅法改正의 諸 效果를 推定 또는 檢證해 본다. 第1節에서는 1994년 이후의 稅法改正이 세수에 미친 영향을 模擬實驗을 통해 추정해 본다. 그리고 第2節에서는 勤勞所得稅 課稅體系가 개편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各種 效果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模擬實驗을 통해 분석해 본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稅收效果와, 所得控除와 稅額控除의 效果에 대한 相互比較 등이다. 第Ⅵ章에서는 本 研究에서 개발한 稅收推計模型이 지니는 限界點과 改善方向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第Ⅶ章에서는 本 研究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서 우리나라의 所得稅, 그 가운데 특히 勤勞所得稅制의 改編에 대한 功過를 평가해 본다.

## II. 우리나라 所得稅의 課稅體系 및 稅收推移

本章에서는 綜合所得稅와 勤勞所得稅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所得稅의 課稅體系와 稅收推移를 살펴본다. 그럼으로써 勤勞所得稅에 대한 課稅體系의 基本概念을 숙지한 후 다음의 第III章에서 논의할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한 프로그램의 흐름圖 작성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本章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第1節에서는 現行 所得稅法에 따른 所得의 種類와 課稅體系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第2節에서는 勤勞所得稅 課稅體系의 變遷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第3節에서는 勤勞所得稅를 중심으로 所得稅의 所得種類別 稅收推移를 살펴본다.

### 1. 所得稅의 種類 및 課稅體系(1995年 12月 29日 改正稅法 基準)

#### 가. 所得稅의 種類와 稅率體系

우리나라의 所得稅法에서는 所得의 種類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所得의 區分’에 관한 現行 所得稅法 第4條의 第1項에 의하면, 居住者에 대한 所得의 種類를 크게 綜合所得, 退職所得(所得稅法 第22條 참조), 讓渡所得(所得稅法 第88條 이하 참조), 山林所得(所得稅法 第23條 참조)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sup>1)</sup>. 居住者에 대한 綜合所得은 所得稅法 第16條~第21條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1) 非居住者의 所得에 관해서는 第121條의 規定에 의해 구분한다.

다시 利子所得, 配當所得, 不動產貸貸所得, 事業所得, 勤勞所得, 一時財產所得, 其他所得의 일곱 가지로 구분된다.

利子所得, 配當所得, 不動產貸貸所得, 事業所得, 勤勞所得, 一時財產所得, 其他所得은 各 所得金額이 합산됨으로써 종합과세(綜合所得稅)된다. 다만 위의 所得은 모두 綜合所得稅의 課稅對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利子·配當所得, 其他所得 가운데 源泉分離課稅되는 部分은 綜合所得稅 課標에서 제외된다<sup>2)</sup>. 그리고 勤勞所得만 있으면서 勤勞所得稅 年末精算으로 所得稅에 대한 納稅義務가 종결되는 납세자의 勤勞所得의 경우에는 綜合所得稅 申告義務가 없기 때문에 綜合所得稅 課稅對象에서 제외된다.

綜合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稅率體系는 超過累進稅率體系로 구성되어 있는바 稅率은 최저 10%에서 최고 40%의 네 단계로 되어 있으며, 各 所得稅 課標區間에 해당되는 所得에 대해서만 해당 구간에 대한 限界稅率이 적용된다. 綜合所得 가운데 勤勞所得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勤勞所得稅 年末精算만으로 綜合所得稅 申告義務가 면제되지만, 이 경우 勤勞所得에 대한 稅率도 綜合所得稅의 稅率을 그대로 원용하여 적용한다.

山林所得과 退職所得의 경우에도 綜合所得稅의 稅率을 적용한다. 退職所得(甲種)의 경우에는 所得稅法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源泉徵收하는데 退職所得控除後의 退職所得을 勤務年數로 나누어 退職所得稅의 課標를 산출하고 여기에 綜合所得稅率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다시 勤務年數를 곱하는 방법, 즉 年分年乘의 方法을 적용하여 決定稅額을 산출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 課稅方法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이상 <表 II-1> 참조).

2) 金融所得의 경우에는 基準金額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원 以下 分에 대해서는 源泉分離課稅되며 超過分에 대해서만 綜合課稅된다.

&lt;表 II-1&gt; 綜合所得稅의 稅率體系

(單位：萬圓, %)

課稅標準 區間	稅 率
0~1,000	10
1,000~4,000	20
4,000~8,000	30
8,000~	40

利子所得, 配當所得, 事業所得, 勤勞所得(甲種), 其他所得의 경우에는 所得稅法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源泉徵收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앞서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綜合所得稅 確定申告를 통해 最終稅額을 결정한다.

源泉分離課稅되는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15%이고,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債券이나 長期貯蓄에 대한 利子(와 割引額)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25% 또는 30%의 稅率

&lt;表 II-2&gt; 利子所得 및 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

(單位：%)

		稅 率
利子所得	長期債券 (5 ~ 10年)	30
	(10年 以上)	25
	長期貯蓄 (5年 以上)	30
	非營業貸金	25
	其他	15
配 當 所 得		15

註：長期債券과 長期貯蓄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債券과 長期貯蓄의 利子和 割引額에 대해 당해 長期債券(長期貯蓄 包含)을 보유한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法 제14조 제2항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합산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그 利子和 割引額에 대해 적용하는 稅率임.

이 적용된다. 다만 源泉徵收된 金融所得 가운데에서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綜合所得稅 申告義務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綜合所得稅의 稅率體系가 적용되고 따라서 源泉徵收한 부분과 最終 決定稅額의 차이에 대해 還給 또는 追加納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源泉徵收되는 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은 20%이다.

現行 所得稅法에 따르면 (資產의) 讓渡란, 資產에 대한 登記 또는 登錄 與否에 관계없이 賣渡, 交換, 法人에 대한 現物出資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資產이 有償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讓渡所得이란 이와 같은 資產의 讓渡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所得을 일컫는다.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경우에는 綜合所得稅와 마찬가지로 超過累進稅率體系를 가지고 있으나 綜合所得稅의 稅率과는 다른 稅率이 적용되고 있다. 讓渡所得稅의 稅率體系는 課稅標準 區間에 따라 최저 30%에서 최고 50%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資產의 保有期間이 2년 미만이거나 未登記讓渡資產에 대한 讓渡所得稅는 각각 50%와 7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表 II-3> 讓渡所得稅의 稅率體系

(單位: 萬圓, %)

課稅標準 區間	稅 率
0~3,000	30
3,000~6,000	40
8,000~	50

註: 단, 保有期間이 2년 미만인 경우는 50%, 未登記讓渡資產의 경우에는 75%의 稅率이 적용됨.

#### 나. 綜合所得稅의 課稅體系

綜合所得稅는 各項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利子所得, 配當所

得, 不動產賃貸所得, 事業所得, 勤勞所得, 其他所得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다만 利子所得, 配當所得, 不動產賃貸所得 등과 같은 資產所得의 경우에는 納稅者 個人에 대해 人別로 所得을 합산하여 綜合所得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該當 所得에 대한 夫婦의 所得을 합산하여 綜合所得을 산출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나 事業所得과 勤勞所得, 其他所得의 경우에는 人別로 합산하여 綜合所得을 산출하여 과세한다. 다만 綜合所得을 산출함에 있어서 不動產賃貸所得, 事業所得, 其他所得의 경우에는 각종 必要經費를 공제하고, 勤勞所得의 경우에는 勤勞所得控除를 공제한 후의 所得을 합산함으로써 綜合所得을 산출한다. 그러나 利子所得과 配當所得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所得과 달리 綜合所得을 산출함에 있어 必要經費와 같은 控除項目이 없다.

綜合所得稅의 課稅標準은, 綜合所得으로부터 基本控除, 追加控除를 공제함으로써 산출하지만 勤勞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特別控除(또는 標準控除)까지도 함께 공제한다. 綜合所得稅의 課稅標準이 산출되면 <表 II-1>의 綜合所得稅 稅率을 적용하고 여기에 각종 稅額控除 또는 加算稅를 반영함으로써 최종적인 綜合所得稅 決定稅額을 산출한다.

基本控除라 함은 基本的인 人的控除의 하나로서 本人과 配偶者 및 扶養家族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綜合所得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1996년 8월의 臨時國會에서 單獨家口 및 2人 家口에 대한 基本控除의 最低限을 각각 200만원과 250만원으로 상향조정 한 바 있다. 그러나 基本控除의 合計가 綜合所得 金額을 초과할 경우에 그 超過分은 없는 것으로 한다.

追加控除라 함은 基本控除의 對象者가 65세 이상(一名 敬老優待控除)이거나 障礙者, 婦女子世帶主, 6세 이하의 直系卑屬(女性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의 경우에 한함)인 경우 1인당 50만원씩 공제해 주는 것으로 역시 人的控除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追加控除

의 경우에도 基本控除와 마찬가지로 基本控除後 綜合所得의 金額이 追加控除를 초과하면 그 超過分은 없는 것으로 한다.

特別控除는 項目別 控除와 標準控除로 구분된다. 項目別 控除는 勤勞所得이 있는 경우에 한해 勤勞所得金額으로부터 다음의 項目을 控除해 준다. 特別控除의 항목으로는 (保障性)保險料(50만원 限度, 단 醫療保險料의 경우에는 全額), 醫療費(給與額의 3% 超過分, 단 100만원 限度), 教育費, 住宅마련貯蓄 拂入金額(貯蓄 拂入金額의 40%, 年間 72만원 限度), 寄附金特別控除가 있다. 다만 特別控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標準控除'라 하여 定額으로 年間 60만원을 공제해 준다<sup>3)</sup>. 特別控除의 경우에도 控除金額이 基本控除 및 追加控除後 勤勞所得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超過分은 없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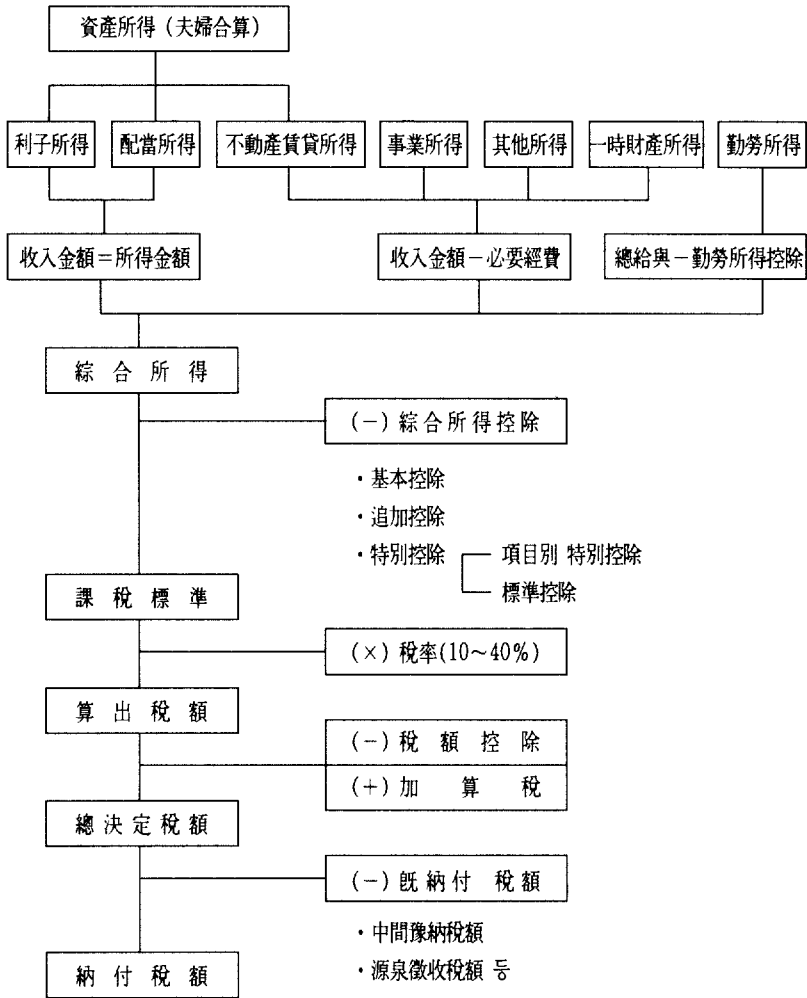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각종의 所得控除後에 綜合所得稅의 課稅標準을 산출하고, 여기에 綜合所得稅率을 적용한 후 각종의 稅額控除 또는 加算稅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決定稅額을 산출한다.

#### 다. 勤勞所得稅의 課稅體系

우리나라의 勤勞所得稅 課稅體系는 年間 總給與額으로부터 各種 非課稅所得과 勤勞所得控除를 차감하여 勤勞所得金額을 산출하고, 勤勞所得金額으로부터 人的控除(基本控除와 追加控除)와 特別控除(또는 標準控除)를 차감하여 勤勞所得稅 課稅標準을 산출하며, 여기에 (綜合)所得稅率을 적용하여 稅額을 산출한 후 최종적으로 勤勞所得稅額控除 등을 포함한 각종 稅額控除를 차감함으로써 勤勞所得稅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勤勞所得稅는 給與 支給時에

3) 特別控除의 額이 6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特別控除를 신청하지 않고 標準控除를 신청하는 것이 稅負擔 측면에서 보다 유리함은 물론이다. 標準控除는 事業所得자에게도 許容된다.

[圖 II-1] 우리나라 綜合所得稅制의 課稅體系



註：利子·配當所得, 其他所得 가운데 源泉分離課稅分과, 勤勞所得만 있으면서 勤勞所得稅 年末精算으로 納稅義務가 종결되는 납세자의 勤勞所得은 綜合所得稅 申告對象에서 제외함.

稅額의 일부를 源泉徵收하므로 年末精算時에는 위와 같은 方法으로 산출한 決定稅額과 미리 源泉徵收한 稅額의 차이를 納付 또는 還給

함으로써 納稅節次가 종료된다.

1995년까지만 해도 연월차 수당(1백만원 한도)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給與가 非課稅所得으로 분류되었으나, 1996년 歸屬分 勤勞所得稅부터는 生産職 勤勞者의 時間外 勤勞手當(年間 240만원 限度)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거의 모든 非課稅 手當을 課稅所得으로 전환하였으며, 대신 所得控除 水準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전반적으로 稅負擔이 종전에 비해 증가하지 않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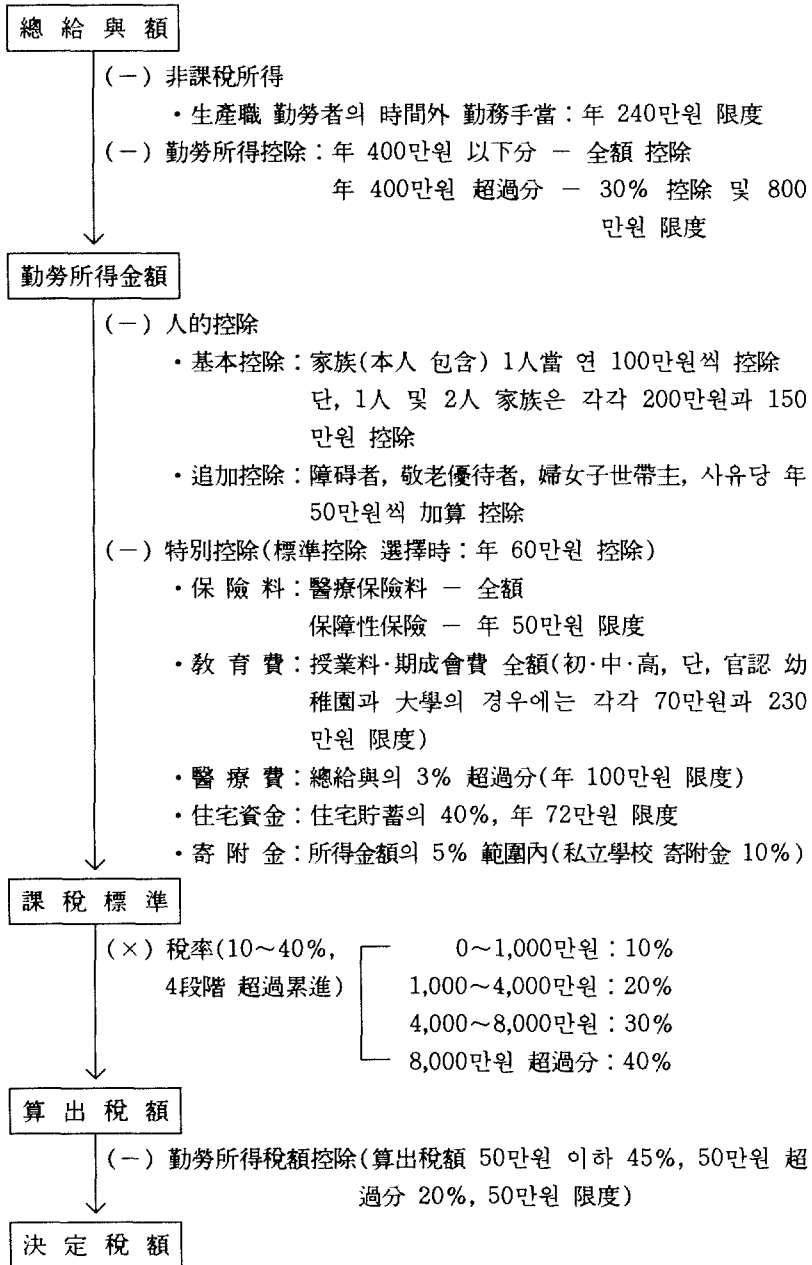
勤勞所得稅 控除項目 가운데 가장 比重이 큰 것은 勤勞所得控除로, 年間 課稅所得 總額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全額을 공제해 주고 400만원 超過分에 대해서는 超過分の 30%를 공제하되 800만원을 上限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 人的控除를 나타내는 基本控除와 追加控除 및 特別控除(또는 標準控除)는 綜合所得稅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와 같은 각종 所得控除 項目을 차감하면 勤勞所得稅의 課稅標準이 산출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勤勞所得稅의 課稅標準이 산출되면 여기에 勤勞所得稅率(綜合所得稅率)을 적용하여 稅額을 산출하며, 여기에 勤勞所得稅額控除를 포함하여 각종의 稅額控除를 차감한 후 최종적으로 稅額을 결정한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은 勤勞所得稅額控除로, 算出稅額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5%, 50만원 超過分에 대해서는 20%의 비율로 稅額控除하며 限度는 50만원으로 한다(1996年 所得稅法).

## 2. 勤勞所得稅 課稅體系의 變遷

本節에서는 1975년 이래로 綜合課稅體系가 확립된 이후의 勤勞所得稅 課稅體系의 變遷에 대해 稅率, 勤勞所得控除, 人的控除, 保險料控除 등의 特別控除, 勤勞所得稅額控除의 다섯 가지 측면에서 간략히 살펴본다.

[圖 II-2] 우리나라 勤勞所得稅制의 課稅體系



### 가. 勤勞所得稅 稅率體系의 變遷

綜合課稅 體系가 확립된 1995년 이후의 勤勞所得稅는 매우 복잡하였던 세율체계에서 단순한 체계로, 最高 限界稅率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稅率階級の 數를 보면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16~17개로 세율계급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稅率階級の 數가 많았던 것은 稅負擔의 垂直的 分布를 보다 세분화하여 衡平을 유지한다는 데 논리적 근거가 있었는데, 勤勞所得稅 課標가 증가할수록 稅負擔의 累進度가 서서히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勤勞所得稅의 最低稅率은, 1970년대에는 8% 수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는 5~6%의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다만 1996년에는 最低稅率이 10%로 上向調整되고 課稅標準 區間도 1천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最低 課稅標準 區間 가운데 낮은 所得을 가진 勤勞者의 경우에는 稅負擔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最低稅率의 上向調整과 더불어 勤勞所得控除와 각종 人的控除 水準도 대폭 上向調整되었기 때문에 低所得層에 대한 勤勞所得稅 負擔은 종전과 비교해 볼 때 평균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扶養家族의 數가 적은 家口의 勤勞所得者의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稅負擔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6년 8월에는 이러한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單獨家口 및 2人家口에 대한 人的控除 水準을 상향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다項을 참조하기 바란다.

勤勞所得稅의 最高 限界稅率은 1975년 이후 1980년대까지만 해도 防衛稅를 포함하여 60% 이상 84%까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크게 下向調整되어 1996년에는 40%가 되었다. 勤勞所得稅의 最高稅率이 종전에 84%

&lt;表 II-4&gt; 勤勞所得稅 稅率體系的 變化推移

(單位：個，萬圓，%)

	稅率階級 數	最低階級		最高階級	
		課標上限(年)	稅 率	課標下限(年)	稅 率
1975~76	16	24	8	4,800	70
1977	16	42	8	5,760	70
1978~79	17	60	8	8,400	70 (84)
1980~81	17	120	6	6,000	62(74.4)
1982	17	120	6	6,000	60 (72)
1983~88	16	180	6	6,000	55 (66)
1989~90	8	250	5	5,000	50 (60)
1991~92	5	400	5	5,000	50
1993	6	400	5	6,400	50
1994~95	6	400	5	6,400	45
1996	4	1,000	10	8,000	40

註：( ) 안은 防衛稅를 包含한 稅率임.

(防衛稅 제외시 70%)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던 것은 곧 高所得 層의 勤勞意慾을 크게 低下시킨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것이 이후에 최고세율이 下向調整되게 된 背景의 하나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도 최고 소득세율이 인하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였던 점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最高稅率이 적용되는 課標 區間의 下限은 그 동안의 소득수준의 增加趨勢와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最高稅率 水準이 시대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最高稅率 課標區間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 나. 勤勞所得控除 體系的 變遷

1975년 이후 1981년까지 勤勞所得控除制度는 定額控除制度로 운용되어 왔는데, 1975년에는 所得水準에 관계없이 18만원(1975년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경우)을 공제하였으며, 이후 점차 勤勞所得控除 金額이 상향조정되어 1980년과 1981년에는 54만원으로 인상되었다.

1982년부터는 勤勞所得控除 金額이 定額分과 所得比例分으로 二元化되었다. 1982년의 경우를 보면, 年間 勤勞所得(課稅所得 基準)이 8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勤勞所得 全額을 勤勞所得控除로 공제하여 주었으며, 勤勞所得이 88만원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基本金額 88만원에 추가하여 勤勞所得 88만원 超過分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300만원 超過分에 대해서는 10%를 所得控除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도 勤勞所得控除의 上限이 170만원으로 설정되었는바 高所得層의 경우에는 一定 限度 以上の 所得控除를 제한함으로써 中低所得層의 稅金輕減惠澤을 상대적으로 보다 커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3段階 超過累進 勤勞所得控除 方式은 199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1991년부터는 2段階 超過累進 勤勞所得控除 方式으로 算出方式을 單純化하였다. 또한 勤勞所得控除 水準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1996년에는 基本金額 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勤勞所得 400만원 超過分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30%를 공제하며 總限度는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가장 최근인 1996년에 개편된 勤勞所得控除制度는, 1995년에 잠정적으로 調整期間을 거친 후 1994년에 비해 勤勞所得控除額 및 勤勞所得控除의 限度가 대폭 상향조정되었는바 이는 각종의 非課稅所得을 대폭 課稅所得으로 전환하고 最低 所得稅의 稅率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勤勞所得稅 負擔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1997年 稅法에서는 勤勞所得控除 體系가 1996년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控除의 한도가 상향조정되었는바 控除의 下限과 上限이 각각 500만원과 900만원으로 100만원씩 引上되었다.

〈表 II-5〉 勤勞所得控除 體系의 變化推移

(單位: 萬圓)

	賞與特別控除	勤勞所得控除
1975	月定給與額의 100% 限度 (12)	18
1976	月定給與額의 200% 限度 (14)	30
1977	月定給與額의 400% 限度 (36)	30
1978	月定給與額의 400% 限度 (40)	40
1979	月定給與額의 400% 限度 (52)	48
1980~1981	月定給與額의 400% 限度 (52)	54
1982	88 以下 全額, 88 超過 300 以下分의 20%, 300 超過分의 10%	(170)
1983~1988	94 以下 全額, 94 超過 300 以下分의 20%, 300 超過分의 10%	(170)
1989~1990	140 以下 全額, 140 超過 400 以下分의 25%, 400 超過分의 15%	(230)
1991~1992	230 以下 全額, 230 超過分의 30%	(490)
1993	250 以下 全額, 250 超過分의 30%	(600)
1994	270 以下 全額, 270 超過分의 30%	(620)
1995	310 以下 全額, 310 超過分의 30%	(690)
1996	400 以下 全額, 400 超過分의 30%	(800)
1997	500 以下 全額, 500 超過分의 30%	(900)

註: 賞與特別控除는 1981년 말에 폐지되었으며, ( ) 안은 賞與特別控除 및 勤勞所得控除의 限度를 나타냄.

그 외에 1981년까지는 賞與特別控除制度라는 것이 있었다. 賞與特別控除란 一種의 人的控除의 성격도 상당히 지니고 있었는데, 勤勞所得者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賞與金 가운데 月定給與를 기준으로 一定比率만큼을 所得控除받는 것이었다. 賞與特別控除는 1975년 당시 月定給與의 100%를 限度로 하였으며 점차 控除比率이 확대되어 1977년부터 1981년까지 400%로 상향조정되었다. 1982년부터는 賞與特別控除制度가 폐지되었는바 이에 따른 勤勞所得稅 負擔의 急增 可能性을 緩和하기 위해 勤勞所得控除의 限度가 크게 확대되면서 控除金額 算出方式도 전술한 바와 같이 多段階 控除方式이 채택되었다.

#### 다. 人的控除 體系의 變遷

勤勞所得稅와 관련하여 人的控除라 함은, 基礎控除,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와 障礙者控除, 敬老優待控除, 婦女子世帶主控除, 맞벌이特別控除 등과 같이 家口의 人的構成에 따라 所得을 控除해 주는 것을 일컫는다. 人的控除 가운데 앞의 세 가지는 1996년부터 基本控除로 통합되면서 개편되었으며, 나머지 項目들 역시 1996년부터 追加控除로 통합되면서 개편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맞벌이特別控除는 1996년부터 폐지되었다.

이상과 같은 人的控除 項目 가운데 가장 중요한 控除項目은, 거의 대부분의 勤勞者가 控除의 對象이 되는 基本控除라고 할 수 있다. 基本控除는 1995년까지만 해도 勤勞者 本人과 配偶者 및 扶養家族에 대한 1人當 控除額이 서로 달랐으나 1996년부터는 이에 대한 구분없이 모두 1人當 1백만원씩 공제해 주는 제도로 개편되면서 所得稅制의 單純化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1996년의 所得控除體系의 改編과 관련해서는 配偶者 및 扶養家族에 대한 基本控除 金額이 종전에 비해 平均的으로 거의 2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한 것을 매우 특징적인 변화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앞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所得稅 控除體系를 單純化하면서 給與의 種類와 性格에 따라 예외적으로 많이 인정되던 各種 非課稅手當을 대폭 정리하여 課稅所得에 포함시킴으로써 예외적인 所得(또는 手當)을 가급적 축소하면서 所得稅 課稅의 底邊을 확대하고자 한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追加控除는 基本控除와는 별도로, 基本控除의 控除對象者 가운데 障礙者, 만 65세 이상의 老人, 婦女子로서 世帶主인 경우, 맞벌이夫婦로서 女性 勤勞者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각 항목별로 별도의 1人當 基準金額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즉 追加控除制度는 社會福祉厚生 차원에서 障礙者, 老人, 婦女子世帶主 그리고 맞벌이夫婦들에 대해

金錢的 또는 非金錢的 諸 費用을 所得稅 측면에서 경감시켜 주기 위해 定額控除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障礙者控除는 1975년 이전에도 있었으나, 敬老優待控除, 婦女子世帶主控除, 맞벌이夫婦特別控除는 각각 1989년, 1991년, 1993년에 신설된 控除項目이다.

<表 II-6> 所得稅 基本控除의 變化推移

(單位：萬원/人)

	基礎控除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
1975	18	12	6
1976	18	12	12
1977	24	18	12
1978	24	24	12
1979	24	30	18
1980~1981	30	30	24
1982~1988	30	42	24
1989~1992	48	54	48
1993	60	54	48
1994~1995	72	54	48
1996	100	100	100

註：1. 1996년부터는 基本控除로 통합되었음.

2. 1996년부터 單獨家口와 2人家口의 경우에는 人的控除의 下限이 각각 200만원과 250만원으로 설정되었음.

追加控除의 경우에도 基本控除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1996년부터 障礙者, 老人, 婦女子世帶主를 구분하지 않고 1人當 50만원씩 定額控除해 주는 방식으로 制度가 改편되었음을 볼 수 있다.

基本控除 또는 追加控除와 같은 人的控除는 家族構成員의 數와 生計費間의 관계 또는 障礙者, 老人, 婦女子世帶主 등에 대한 社會保障의 측면에서의 間接的 支援, 勞動의 供給 측면 및 맞벌이夫婦에 대한 稅制支援 擴大 등을 고려하여 多분히 生計費 控除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동일한 勤勞所得을 가진 勤勞所得

者라고 하더라도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勤勞所得者 家口의 人的特性(demographic characteristics)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勤勞所得稅 負擔의 隔差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表 II-7> 所得稅 追加控除의 變化推移

(單位: 萬원/人)

	障礙者	敬老優待	婦女子世帶主	맞벌이夫婦
1975~1981	12	—	—	—
1982~1988	30	—	—	—
1989~1990	48	36	—	—
1991~1992	48	48	54	—
1993	48	48	54	54
1994~1995	54	48	54	54
1996	50	50	50	50

註: 1996년부터 追加控除로 통합되었음.

所得稅의 基本控除 및 追加控除와 관련하여 1996년부터 적용되는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基本控除나 追加控除의 對象者에 대한 單位當(또는 1人當) 控除金額이 각각 동일하게 개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所得稅制의 簡素化 또는 單純化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996년에 단행되었던 基本控除와 追加控除 金額의 單一化는 이미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대폭적인 非課稅所得의 整理(課稅所得으로의 編入), 稅率體系의 改編(또는 單純化<sup>4)</sup>) 등에서 볼 수 있는 所得稅制의 單純化 추세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稅制의 單純化 過程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課

4) 이는 勤勞所得稅 稅率階級の 數가 從前의 여섯 가지에서 네 가지로 그 數가 축소되었을 뿐더러 稅率도 5%, 9%, 18%, 27%, 36%, 45%에서 10%, 20%, 30%, 40%로 보다 쉽게 개편된 것을 말한다.

稅所得의 增加와 最低稅率의 上向調整에 따른 稅負擔 增加를 완화하고자 勤勞所得控除와 人的控除 및 特別控除 등에서 所得控除의 폭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勤勞所得稅 負擔이 종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輕減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음도 물론이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課稅所得이 증가하였지만 人的控除 擴大의 惠澤을 누리기 어려운 單獨家口(또는 獨身家口)와 2人家口의 경우에는 종전에 비해 오히려 稅負擔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人的控除의 下限을 각각 200만원과 150만원으로 上向調整하게 되었다<sup>5)</sup>. 이와 같은 개편은 1996년의 所得稅制 簡素化를 목표로 한 改編方向과는 다소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所得稅에서의 基本控除와 追加控除의 基本性格은 定額控除의 體系를 가지고 있으므로 保險料控除나 醫療費控除 등에서 볼 수 있는 實費控除의 性格을 지니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들 공제항목과 크게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 라. 特別控除 體系의 變遷

勤勞所得稅와 관련한 所得控除 項目 가운데 保險料控除, 醫療費控除, 教育費控除, 寄附金控除, 無住宅勤勞者控除, 創作所得特別控除 등 불가피하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社會保障的 性格의 支出額을 공제하거나 低所得層을 支援하기 위해 해당 項目에 대한 支出額을 공제하는 特別控除制度는 부분적으로 實費控除的 또는 實費辨償的 性格을 띠고 있다<sup>6)</sup>. 따라서 特別控除는 다른 종류의 所得控除 項目

5) 이를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基本控除의 확대가 아니라 追加控除 項目 가운데 小數控除者 追加控除를 추가하여 單獨家口와 2人家口의 경우 각각에 대해 100만원과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實物資本에 대해서는 減價償却이 인정되는 반면에 人的資本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이 인정되지 않는바, 特別控除는 人的資本에 대한 減價償却과 유사한 性格을 지닌 所得控除 項目으로 해석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과 달리 勤勞所得金額과 勤勞者 家口內의 家族構成이 동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保險料나 醫療費에 대한 支出額과 각종 단체에 대한 寄附金의 크기, 住宅의 保有有無 등에 따라 所得控除額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바 결과적으로 勤勞所得稅의 稅負擔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

保險料控除의 경우에는 1977년에 年間 12만원을 한도로 신설되었으며, 이후 控除限度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3년 이후 최근까지 5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保險料控除의 대상은 醫療保險料와 대부분의 保障性 保險에 대한 保險料이다. 다만 醫療保險料의 경우에는 控除限度와 관계없이 支出額 全額이 控除對象이 된다.

醫療費控除는 1978년에 24만원을 控除限度로 설정하면서 신설된 項目이다. 醫療費控除의 導入 初期에는 각종의 療養費와 療養給與, 醫療費 補助金 등을 제외한 醫療費 支出額을 대상으로 공제하여 주었다. 그러나 1982년부터는 醫療費 支出額 가운데 總給與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控除해 주는 방식으로 개편되었으며 1991년부터는 이 비율이 3%로 하향조정되었다.

教育費控除는 1983년에 신설되었으며 이후 1988년까지 本人에 대한 教育費를 全額 控除하고, 直系卑屬 2人까지는 1인당 12만원을 한도로 공제하였다. 이후 1989년부터는 本人 및 直系卑屬을 포함하여 初·中·高에 대한 教育費를 全額 控除해 주고 있으며 1996년부터는 教育費 控除對象이 더욱 확대되어 大學生과 幼稚園生의 경우에도 각각 年間 230만원과 7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 주도록 개편되었다.

無住宅勤勞者控除는 1980년에 신설되어 1995년까지 적용된 控除制度로서 住宅을 소유하지 않은 低所得 勤勞者를 대상으로 定額(100만원) 控除해 주었다.

1980년에는 360만원을 한도로 하는 創作所得控除가 신설되어

1990년까지 적용되었으나 1990년 12월의 所得稅法 改正時에 關聯條項이 삭제되면서 폐지되었다.

寄附金特別控除는 1982년에 신설되었는바 寄附金を 法定寄附金과 指定寄附金の 두 가지로 구분하여 공제해 주고 있다. 法定寄附金の 경우에 所得稅法 등에서 규정한 경우의 寄附金에 대해서는 寄附金 全額을 控除해 주며, 指定寄附金の 경우에는 年間 總給與의 100분의 5(私立學校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을 限度로 控除해 주고 있다.

1996년부터는 保險料控除, 醫療費控除, 教育費控除, 寄附金特別控除 등을 特別控除라는 명칭으로 하나로 통합하여 所得稅法에 규정하고 있다. 다만 特別控除로 控除體系를 개편하면서 이들 控除項目에 대한 控除를 신청하지 않거나 勤勞所得이 없고 綜合所得만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여 標準控除라는 명칭하에 年間 60만원을 일괄적으로 定額控除해 주는 제도가 신설되었다. 標準控除의 도입은 特別控除의 控除對象 金額이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우 적은 金額을 공제신청하기 위해 관련 證憑資料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勤勞所得稅 徵收 關聯 行政業務도 덜어 준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制度라고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측면에서 所得稅 控除體系가 進一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마. 勤勞所得稅額控除 體系의 變遷

현행 勤勞所得稅額控除制度는 1979년 8월 14일에 제정된 臨時特別稅額控除制度에 起源을 두고 있으며, 1981년 12월 31일의 所得稅法 改正에 따라 현재와 같은 勤勞所得稅額控除制度로 改稱되었다. 勤勞所得稅額控除制度는 1989년에 關聯條項이 삭제됨으로써 폐지되었으나, 이듬해인 1990년부터 再導入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勤勞所得稅額控除는 勤勞所得稅 算出稅額의 一定比率을 稅

<表 II-8> 所得稅 特別控除의 範圍와 限度의 變化推移

(單位: 萬원)

	保險料控除	醫療費控除	教育費控除	無住宅控除	創作所得控除	寄附金控除
1977	12	-	-	-	-	-
1978	12	24*	-	-	-	-
1979	15	24*	-	-	-	-
1980~1981	24	24*	-	-	360	-
1982	24	24**	-	-	360	法定寄附金 은 全額 控 除, 指定寄 附金은 總給 與의 100분 의 5를 限度 로 控除
1983~1988	24	24**	A	-	360	
1989	24	24**		-	360	
1990	24	24**	本人, 直系	100	360	
1991~1992	24	100***	卑屬 2人가	100	-	
1993~1995	50	100***	지 全額 #	100	-	
1996	50	100***		-	-	

註: 1. 醫療保險料는 全額 控除.

2. \*는 醫療保險法 또는 公務員 및 私立學校 教職員 醫療保險法의 규정  
에 의하여 지급받는 療養費 療養給與, 勤勞基準法 또는 産業災害補償  
保險法에 의하여 지급받는 療養費 療養給與,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  
費補助金을 제외하며, \*\*는 當該年度 總給與의 100분의 5 超過金額,  
\*\*\*는 當該年度 總給與의 100분의 3 超過金額이 控除對象임.

3. A는 本人의 경우 全額을 공제하고 直系卑屬 2인까지는 1人當 12만원  
을 限度로 하며, #는 大學生과 유치원생의 경우 각각 230만원과 70  
만원을 限度로 함.

4. 1996년부터 特別控除로 改編되었으며, 特別控除 대신 標準控除를 선택  
하는 경우 證憑書類의 有無에 관계없이 60만원을 공제해 줌.

額控除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1989년에 일시적으로  
폐지된 이후 制度가 再導入되면서부터는 稅額控除의 控除限度가 새  
로이 설정되면서 一定額 이하로 稅額控除를 제한하였다.

勤勞所得稅額控除의 導入 初期인 1979년에는 日傭勤勞者를 포함  
하여 月定給與가 50만원 이하인 勤勞所得者의 경우에는 算出稅額의  
30%, 50만원을 초과하는 勤勞所得者인 경우에는 20%를 稅額控除  
해 주었다. 이후 1981년에는 算出稅額에 대한 勤勞所得稅額控除率

과 月定給與 基準金額이 하향조정되었고 1983년에는 月定給與 基準金額이 세 단계로 세분되었다.

전술하였듯이 1989년에는 勤勞所得稅額控除가 폐지되었다가 1990년에 재도입되었다. 재도입된 勤勞所得稅額控除制度는 기존의 制度와 크게 차별되는 점이 있었다. 먼저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가 설정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즉 종전에는 아무리 (勤勞)所得이 높다고 하더라도 算出稅額에 비례하여 稅額이 공제됨에 따라 高所得 勤勞所得者의 稅金輕減 效果가 상당히 컸던 것에 비해, 1990년부터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가 설정되어 算出稅額이 높은 高所得 勤勞所得者라고 하더라도 一定 水準(30만원 限度) 이내로 稅額控除 水準이 제한됨에 따라 中低所得 勤勞所得者에 비해 勤勞所得稅 負擔의 輕減率이 작아져 稅負擔의 垂直的 衡平性이 상대적으로 저고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른 변화는 종전과 달리 所得(月定給與)이나 算出稅額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勤勞所得者가 동일하게 20%의 勤勞所得稅額控除率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1990년 7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月定給與 1백만원을 기준으로 稅額控除가 差別化되고 稅額控除率도 40%와 30%로 差別化되었으며, 稅額控除의 限度도 8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이와 같은 개편은 勤勞所得稅의 負擔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1년에는 月定給與 水準에 관계없이 年間 總給與가 3,600만원 이하인 勤勞所得者를 대상으로 算出稅額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개편되었으며, 稅額控除의 한도도 50만원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1991년에는 年間 總給與가 3,600만원을 초과하는 勤勞所得者의 경우에는 算出稅額에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勤勞所得稅額控除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sup>7)</sup>. 이에 따라 中低所得 勤勞所得者의 경우에 종전에

7) 다만 總給與가 3,600만원을 초과하는 勤勞所得者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總給與가 3,600만원에 미달하는 勤勞所得者보다 勤勞所得稅後 假處分

<表 II-9> 勤勞所得稅額控除의 變化推移

(單位: 萬원)

	對 象 者	勤勞所得稅額控除率
1979.8 制定	月定給與額 50萬원 以下(日傭勤勞者 包含)	30
	50萬원 超過	20
1981	月定給與額 30萬원 以下(日傭勤勞者 包含)	20
	30萬원 超過 50萬원 以下	10
1982(勤勞所得稅額控除)	月定給與額 30萬원 以下(日傭勤勞者 包含)	20
	40萬원 以下	10
1983~88	月定給與額 30萬원 以下(日傭勤勞者 包含)	30
	40萬원 以下	20
	50萬원 以下	10
1989	폐 지	-
1990 再導入	全勤勞者	20 (30萬원 限度)
	日傭勤勞者	20
1990. 7 改正	月定給與額 100萬원 以下	40 (80萬원 限度)
	100萬원 超過	30 (80萬원 限度)
	日傭勤勞者	40
1991	年間 總給與額 3,600萬원 以下	20 (50萬원 限度)
	日傭勤勞者	20
1992~1995	全勤勞者	20 (50萬원 限度)
1996 改正	全勤勞者 - 算出稅額 50萬원 以下分	45
	算出稅額 50萬원 超過分	20 (50萬원 限度)
1997	全勤勞者 - 算出稅額 50萬원 以下分	45
	算出稅額 50萬원 超過分	30 (60萬원 限度)

비해 勤勞所得稅額控除 惠澤의 絕對規模는 상당히 축소되었지만 高

所得이 더 작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總給與가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勤勞所得者에게는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를 초과하지 않는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 稅額控除를 허용해 줌으로써 衡平性의 문제를 해소하였다.

所得 勤勞所得者의 경우에는 전혀 稅額控除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階層間 勤勞所得稅 負擔의 相對的 累進度는 종전에 비해 더욱 커지게 되었는바 오히려 稅負擔의 垂直的 衡平性은 逆說的으로 제고되어 中低所得 勤勞所得者의 相對的인 稅金輕減 惠澤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sup>8)</sup>.

그러나 1992년에는 年間 總給與額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어 給與水準과 관계없이 모든 勤勞所得者에게 勤勞所得稅額控除 惠澤이 확대되었다. 1996년에는 1991년부터 單一 控除率 체계로 유지되어 오던 稅額控除率이 다시 二元化되면서, 算出稅額을 기준으로 50만원 以下分에 대해서는 控除率이 20%에서 45%로 확대됨으로써 中低所得 勤勞所得者의 稅金이 크게 경감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의 所得稅 課稅體系의 변화가 單純化·簡素化의 方向에서 추진되어 왔음을 놓고 볼 때, 小數控除者 追加控除制度의 도입과 함께 所得稅制의 單純化·簡素化 趨勢에 다소 逆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97年の 改正稅法에서는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가 年間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算出稅額 50만원 超過分에 대한 稅額控除率도 20%에서 30%로 上向調整되었다.

### 3. 所得稅의 稅收推移

所得稅는 納稅 또는 徵稅의 形態에 따라 申告分과 源泉分 稅收로 구분된다. 所得稅 申告分의 경우에는 讓渡所得과 事業所得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所得稅 源泉分의 경우에는 勤勞所得과 利子所得, 配當所得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所得稅는 國稅 가운데 附加價値稅 다음으로 稅收比重이 높은 稅

8) 이는 高所得 勤勞所得者와 中低所得 勤勞所得者의 상대적인 稅金輕減惠澤만을 비교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中低所得 勤勞所得者의 相對的인 稅金輕減惠澤이 더 커졌다고 하더라도 勤勞所得稅額控除의 絶對水準이 전반적으로 종전에 비해 축소되었음은 물론이다.

目이다. 특히 所得稅는 稅收의 所得彈力性 또한 매우 높은 稅目으로서 稅收增加率이 매우 높다. 따라서 1984년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前年 對比 所得稅 增加率이 經常國民總生産 增加率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所得稅가 國稅收入에서 차지하는 稅收占有比가 전반적으로 점차 上昇하는 趨勢에 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3低 好況으로 크게 所得水準이 上昇하고 勞使間 賃金協商이 매우 활발해지면서 賃金이 크게 引上됨에 따라 所得稅의 課標 또한 크게 증대되면서 稅收增加率이 더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所得의 種類別로 所得稅의 稅收比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러 종류의 所得稅 가운데 稅收比重이 가장 높은 것은 勤勞所得稅이다. 勤勞所得稅는 1970년대 후반 이후 198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總所得稅 對比 占有比가 약 40%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후 稅收占有比가 점차 上昇하다가 1980년대 말부터 대체로 減少하는 趨勢로 반전되었다. 그러나 이후 최근 수년간에는 다시 稅收占有比가 上昇하는 趨勢에 있는바 1995년에는 약 37.3%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勤勞所得稅는 納稅義務者의 數(약 1천만명 이상으로 추정됨)뿐만 아니라 세수비중 측면에서도 所得稅 가운데 가장 중요한 構成項目이라고 할 수 있다.

勤勞所得稅 收入의 增加率을 보면 전반적으로 景氣가 好調를 보였던 시기에는 稅收增加率이 높은 반면 景氣가 다소 좋지 않았던 時期에는 增加率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勤勞所得稅 收入이 景氣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景氣가 好調를 보이는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雇傭이 增加하여 總體的인 所得稅 課標가 增加할 뿐만 아니라 個別 勤勞者의 所得도 상당히 크게 增加하기 때문에 勤勞所得稅의 增加率이 높다. 더욱이 所得稅의 稅率體系가 累進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所得稅 稅收增加率은 더욱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景氣가 下落하는 경우

&lt;表 II - 10&gt; 우리나라 所得稅의 稅收推移

(單位：%, 億원)

	申告分	源 泉 分			總 計
		勤 勞 所 得 稅	利子·配當	計	
1977	1,549	1,389 [39.39] (-)	589	1,978	3,527 (10.56)
1978	2,089	1,955 [41.79] (40.70)	633	2,588	4,678 (32.62)
1979	2,863	2,524 [41.07] (29.13)	760	3,284	6,147 (31.41)
1980	2,988	2,662 [40.24] (5.44)	965	3,626	6,614 (7.60)
1981	3,147	3,931 [44.36] (47.70)	1,783	5,714	8,862 (33.99)
1982	3,737	3,858 [38.36] (-1.87)	2,461	6,318	10,055 (13.47)
1983	4,360	4,460 [39.26] (15.62)	2,540	7,001	11,361 (12.99)
1984	4,537	5,144 [41.85] (15.33)	2,609	7,753	12,291 (8.18)
1985	5,269	6,385 [43.10] (24.13)	3,161	9,546	14,816 (20.54)
1986	6,259	7,748 [43.42] (21.34)	3,839	11,587	17,846 (20.45)
1987	7,177	9,774 [45.27] (26.15)	4,638	14,412	21,589 (20.97)
1988	9,842	14,004 [47.25] (43.28)	5,795	19,799	29,641 (37.30)
1989	12,999	15,169 [42.65] (8.32)	7,401	22,570	35,569 (20.00)
1990	20,172	17,228 [36.48] (13.57)	9,831	27,059	47,231 (32.79)
1991	26,183	18,376 [28.45] (6.66)	20,035	38,411	64,594 (36.76)
1992	27,583	26,701 [33.34] (45.31)	25,799	52,501	80,084 (23.98)
1993	36,051	29,946 [31.65] (12.15)	28,631	58,577	94,629 (18.16)
1994	41,189	37,511 [33.47] (25.26)	33,378	70,889	112,078 (18.44)
1995	46,766	50,784 [37.29] (35.38)	38,632	89,416	136,182 (21.51)

註：1. [ ] 안은 所得稅 總計 對比 占有比이고 ( ) 안은 前年 對比 增減率임.

2. 利子·配當所得稅의 경우에는 稅收比重이 낮은 다른 종류의 所得稅 收入도 일부 包含되어 있음.

에는, 반대의 논리가 적용된다. 즉 景氣下落時에는 雇傭이 減少하고 賃金上昇率도 하락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勤勞所得稅 課標의 增加率이 둔화될 뿐더러 累進所得稅率 體系로 인해 所得稅 增加率이 상당히 크게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경제전반에 걸쳐 노동쟁의 등으로 인해 賃

金引上率이 매우 높았는바 勤勞所得稅의 課稅體系가 累進稅率 體系로 되어 있다는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稅收가 크게 增加하였다. 즉 就業人口가 증가함에 따라 納稅義務者의 數가 증가하고, 所得水準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免稅點 以上の 給與를 받는 근로자의 數도 증가하였을 뿐더러 이에 따라 보다 높은 限界稅率이 적용되는 所得稅 課標 區間에 속하는 納稅者의 比率이 크게 증가하여 勤勞所得稅의 세수증가율이 매우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成明宰(1995)의 研究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의 研究에 의하면 勤勞所得稅 稅收函數 推定式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期間에 대해 國民總生産에 대한 기울기 더미를 사용한 결과 係數의 값이 陽數로 나타났을 뿐더러 推定值의 統計的 有意性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1980년대 이후 所得, 즉 國民總生産에 대한 勤勞所得稅의 稅收彈力性이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勤勞者 賃金水準의 급격한 上昇 등과 같은 經濟構造의 變化要因을 잘 설명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밖에 利子·配當所得稅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稅收가 증가하여 왔으며 1990년대 초에는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이 10%에서 20%로 인상되면서 종전에 비해 稅收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즉 利子·配當所得稅 收入의 경우에는 貯蓄原本이 증가함에 따라 稅收가 증가하지만 稅率의 引上도 세수증가에 일조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1996년에 源泉徵收稅率이 15%로 인하되었는데 이에 따라 稅收는 상당히 크게 감소될 것으로 사료된다.

### Ⅲ. 稅收推計模型의 電算 프로그램 흐름圖

#### 1. 電算 프로그램 흐름圖의 概要(1996年 適用 所得稅法 基準)

##### 가. 勤勞所得者 1人當 決定稅額 프로그램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한 電算 프로그램의 흐름圖의 기본적인 구조는 [圖 II-2]에 나타난 勤勞所得稅制의 課稅體系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勤勞所得者 1人當 勤勞所得稅 決定稅額을 산출하는 過程에 대한 電算 프로그램의 흐름圖를 요약하면 다음의 [圖 III-1]과 같다.

各 勤勞者의 年間 總給與로부터 勤勞所得稅 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非課稅所得, 즉 生産職勤勞者에 대한 時間外 勤勞手當 등을 선별하여 분리해 냄으로써 課稅所得을 산출한다. 課稅所得으로부터 勤勞所得控除를 차감하여 勤勞所得金額을 산출하고, 勤勞所得金額으로부터 基本控除, 追加控除, 特別控除를 공제함으로써 勤勞所得稅 課稅標準을 산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綜合所得稅率를 적용하여 稅額을 算出하고, 이로부터 勤勞所得稅額控除와 各種 稅額控除를 차감하여 勤勞所得稅 決定稅額을 산출함으로써 작업을 종료한다.

여기서 勤勞所得控除를 산출하는 算式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勤勞所得控除} = & \text{課稅所得} \times \{1 - 1[\text{課稅所得} > 400\text{만원}]\} + \\ & 1[\text{課稅所得} > 400\text{만원}] \times \text{Min}\{800\text{萬圓}, 400\text{萬圓} + \\ & (\text{課稅所得} - 400\text{萬圓}) \times 0.3\} \end{al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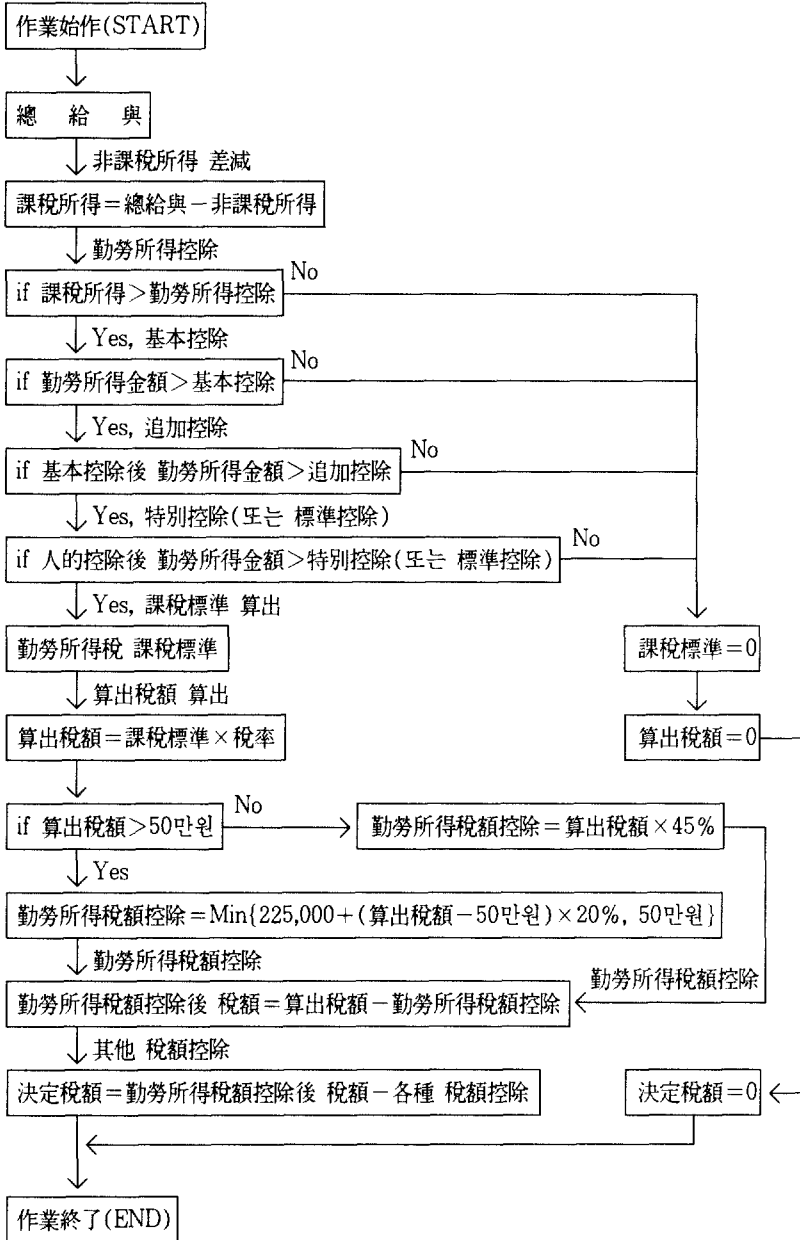
단  $1[\cdot]$ 은 指示函數(indicator function)로  $[\ ]$  안의 내용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는 函數이다. 따라서 課稅所得이 400만원 以下인 경우에는 勤勞所得控除는 課稅所得이 되고,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에 400만원 초과분의 30%를 합산한 금액과 800만원 중 작은 값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출된 勤勞所得控除額이 課稅所得보다 작은 경우에는 課稅所得으로부터 勤勞所得控除額을 차감하여 勤勞所得金額을 산출한 후 다음 단계의 基本控除, 追加控除, 特別控除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課稅標準이 零이 되는바 決定稅額이 零이 되어 작업이 종료된다.

基本控除에서는 本人과 配偶者 및 扶養家族의 數를 합산하여 그 數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되고, 追加控除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 人員의 數에 50만원을 곱한 금액이 공제된다. 特別控除의 경우에는 각종의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산한 금액이 공제된다.

勤勞所得金額으로부터 基本控除, 追加控除, 特別控除를 順次的으로 차감하여 勤勞所得稅 課稅標準을 산출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勤勞所得金額이 基本控除額보다 작을 경우에는 勤勞所得金額을 基本控除額으로 하고 課稅標準 및 決定稅額이 零이 되어 작업이 종료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追加控除의 段階로 넘어간다. 追加控除 段階에서도 基本控除의 단계에서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작업이 진행되며, 特別控除의 段階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반복된다.

위와 같은 過程을 거친 결과, 勤勞所得金額이 각종 控除額보다 적은 경우에는 勤勞所得稅 課稅標準과 決定稅額이 零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勤勞所得金額으로부터 각종 控除額을 모두 차감하여 勤勞所得稅 課稅標準을 얻게 된다. 課稅標準에 대해 10~40%의 네 단계 綜合所得稅率을 적용하여 稅額을 산출하면 勤勞所得稅 算出稅額을 얻게 된다. 勤勞所得稅의 최종적인 決定稅額은 算出稅額으로부터 勤勞所得稅額控除를 포함한 각종 稅額控除를 차감함

[圖 III-1] 勤勞所得者 1人當 決定稅額 算出 프로그램 흐름圖의 概要



으로써 얻어진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勤勞所得稅額控除이다. 算出稅額이 187만 5천원 이상인 경우에는 勤勞所得稅 稅額控除의 上限인 50만원의 세액이 공제되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算出稅額의 45% 또는 20%를 稅額控除하게 된다. 이에 대한 算式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勤勞所得稅額控除} = & 50\text{만원} \times \{1 - 1[\text{算出稅額} < 187\text{만 5천원}]\} \\ & + 1[50\text{만원} < \text{算出稅額} < 187\text{만 5천원}]\} \times \\ & \{22\text{만 5천원} + (\text{算出稅額} - 50\text{만원}) \times 0.2\} \\ & + 1[\text{算出稅額} < 50\text{만원}]\} \times \text{算出稅額} \\ & \times 0.45 \} \end{aligned}$$

#### 나.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한 電算 프로그램

本項에서는, 앞의 가項에서 설명한 個別納稅者(標本 觀測值)에 대한 勤勞所得稅 決定稅額을 算出하기 위한 電算 프로그램 흐름圖를 기초로 하여 勤勞所得稅 全體 納稅者에 대한 所得稅의 稅收를 추정하는 프로그램 흐름圖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먼저 주어진 標本資料를 總給與 區間別로 구분하여 整列한다. 勤勞所得稅에 대한 稅收推計를 시작하기 위해 첫번째 總給與 區間을 선정한 후 [圖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방법으로, 첫번째 區間, 즉  $j=1$ 의 納稅者 가운데 첫번째 納稅者(標本觀測值,  $i=1$ )부터 마지막  $N_1$ 번째 納稅者(標本觀測值,  $i=N_1$ )까지 順次的으로 각각의 個別納稅者에 대한 勤勞所得稅 決定稅額을 산출한다. 그리고 첫번째 區間的 標本에 대한 人別 決定稅額을 합산한다. 그리고 두번째 總給與 區間으로 이동하여 같은 작업을 반복 시행하여 두번째 給與 區間的 標本에 대한 決定稅額의 總額을 산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여 마지막  $J$ 번째 구간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總給與 區

間別 決定稅額의 총액을 산출한다. 이후 各 總給與 區間別 總決定稅額에 各 區間的 母集團 對比 標本抽出率( $\equiv \alpha_j$ )의 逆數를 곱함으로써 各 구간별 母集團의 總決定稅額을 推定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구간에 대한 總決定稅額의 推定值를 합산함으로써 勤勞所得稅에 대한 總決定稅額, 즉 勤勞所得稅 稅收를 추정한다.

[圖 III-2]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總給與 區間  $j$ 의 母集團 對比 標本の 抽出比率( $\alpha_j$ )의 경우에는 推定하고자 하는 勤勞所得稅 歸屬年度의 母集團의 總納稅者 數와 給與階級別 納稅者 數의 比重(占有比) 등에 따라 추정하고자 하는 歸屬年度의 勤勞所得稅 稅收가 달라질 수 있다. 즉 過去의 特定 年度 歸屬分에 대한 標本資料를 이용하여 당해연도 이후의 勤勞所得稅 稅收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정하고자 하는 年度의 勤勞所得稅 納稅者의 總數와 分布를 추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章에서 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勤勞所得稅 稅收를 추정하기 위한 電算 프로그램에서는 두 번의 計算循環고리(loop)를 통해 各 總給與 區間別 決定稅額을 산출하고 있다. 하나는 各 區間內에서 동일한 區間內에 소속되어 있는 標本에 대한 개별적인 稅額計算을 위해 사용되며, 다른 하나는 첫번째 區間에서 마지막 區間까지의 各 區間別 標本에 대한 稅額의 合計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와 같은 循環고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의 計算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記號의 定義:

$j$  =  $j$ 번째 總給與 區間

$J$  = 總給與 區間的 總數

$i$  =  $i$ 번째 納稅者(標本)

$N_j$  = 總給與 區間  $j$ 의 納稅者 標本 數

$\alpha_j$  = 總給與 區間 j의 母集團 對比 標本抽出 比率

$gy_j, gy, GY_j, GY$	= 總給與
$nty_j, nty, NTY_j, NTY$	= 非課稅所得
$ty_j, ty, TY_j, TY$	= 課稅所得
$lyd_j, lyd, LDY, LDY$	= 勤勞所得控除
$ly_j, ly, LY_j, LY$	= 勤勞所得金額
$byd_j, byd, BYD_j, BYD$	= 基本控除
$ayd_j, ayd, AYD, AYD$	= 追加控除
$syd_j, syd, SYD, SYD$	= 特別控除
$tb_j, tb, TB, TB$	= 課稅標準
$t_j, t, T, T$	= 算出稅額
$lytd_j, lytd, LYTD_j, LYTD$	= 勤勞所得稅額控除
$otd_j, otd, OTD, OTD$	= 其他 稅額控除
$yt_j, yt, YT, YT$	= 決定稅額

단, 小文字는 標本에서의 納稅者 (觀測值)의 人別 또는 區間別 資料를 나타내고, 大文字는 總給與 區間 또는 總 納稅者(母集團) 全體를 나타내며, 아래첨자는 j번째 區間과 i번째 納稅者 (標本)를 나타냄.

例:  $gy_j = \sum_{i=1}^{N_j} gy, GY_j = gy_j \div \alpha_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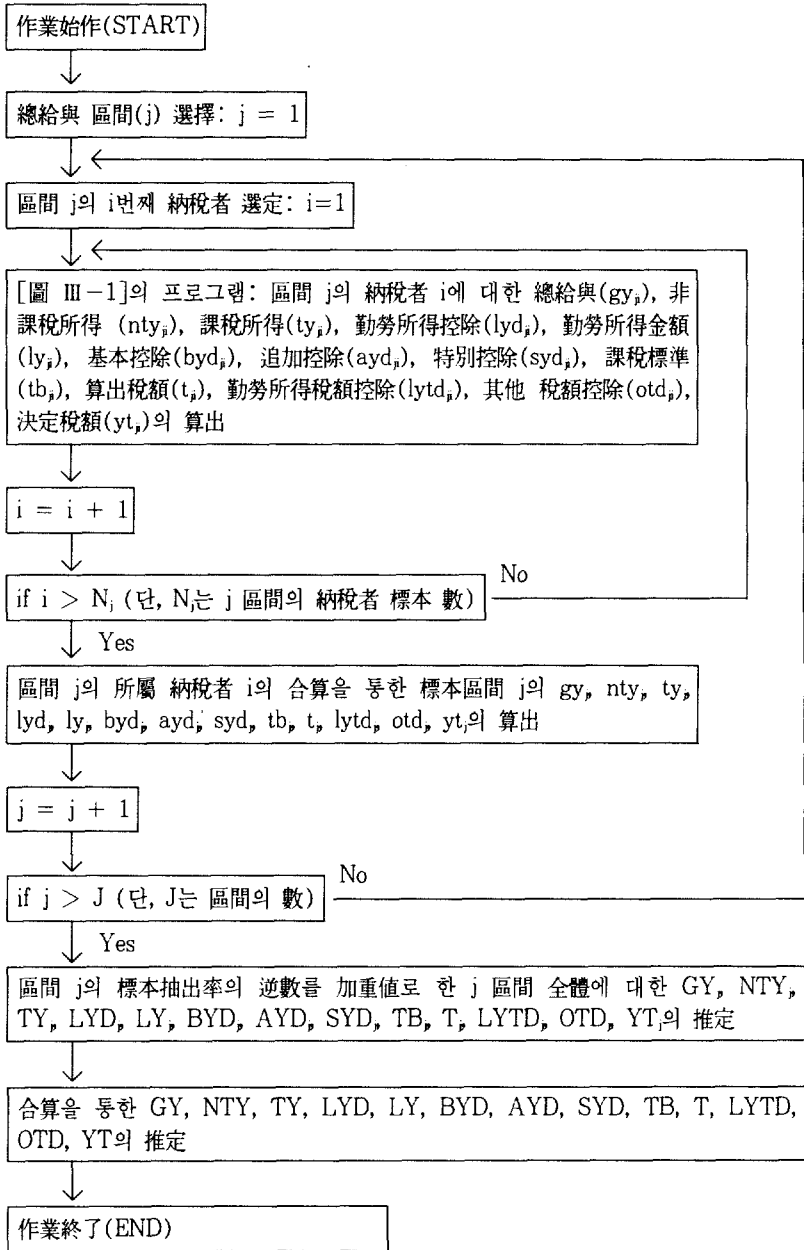
$$GY = \sum_{j=1}^I GY_j$$

## 2. 出力資料의 種類

本 研究에서 개발하는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한 기본 프로그램에서 이용하는 분석자료는 특성상 特定 年度에 대한 歸屬分 勤勞所得稅 關聯 資料이기 때문에 發生主義에 입각하여 勤勞所得稅 稅收 및 각종 稅收效果를 분석한다. 반면에 勤勞所得稅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稅收 관련 統計는 現金主義에 입각하여 徵收時點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特定 年度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와 現金主義에 입각한 稅收統計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sup>1)</sup>. 뿐만 아니라 勤勞所得稅 稅收推計와 관련된 本 研究의 특성상

1) 이와 같은 推定値와 實績値間의 차이는 發生主義와 現金主義의 차이에 도 기인하지만 推定誤差로 인해 발생하기도 한다.

[圖 III-2]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한 電算 프로그램 흐름圖의 概要



과거의 資料를 바탕으로 장래의 勤勞所得稅 稅收을 예측하는 것인 만큼 소득구간별 勤勞所得者의 數와 全體 勤勞所得者의 數 등, 勤勞所得稅 納稅者들에 대한 所得分布와 總納稅者 數를 推定해야 하기 때문에 稅收規模의 絶對水準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本 研究에서는 위의 두 가지 문제를 우회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稅收의 絶對規模를 파악하기보다는 時間의 경과에 따른 勤勞所得者의 分布와 總數의 變化 推定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종 控除水準의 변화에 따른 稅法效果에 대한 變化率을 분석하기로 한다<sup>2)</sup>.

第1節에서 살펴본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및 稅收效果를 추정하기 위한 기본 프로그램에 의한 출력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本 研究에서는 먼저 非課稅所得까지 포함한 全 勤勞所得者의 所得總額(總給與)을 10,000으로 보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각종의 非課稅所得 및 課稅所得·勤勞所得控除·人的控除·追加控除·特別控除·課稅標準·算出稅額·稅額控除·決定稅額 등의 占有比와, 稅收效果·勤勞所得控除·人的控除·追加控除·特別控除 등의 所得控除水準, 勤勞所得稅額控除 등에 대한 變化效果 등을 살펴본다. 또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는 總規模의 變化效果뿐만 아니라 勤勞所得者 1人當 平均值的 變化效果도 아울러 분석한다.

이상의 出力資料에 대한 분석결과를 나타냄에 있어서는 表記의 편의상 第1節에서 정의한 記號를 사용하기로 한다<sup>3)</sup>.

- 
- 2) 이러한 문제와 관련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章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3) 그러나 附錄에 수록된 稅收推計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記號를 사용하지 않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 IV. 稅收推計模型의 豫測力 檢證

本章에서는 第三章에서 살펴본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프로그램의 흐름도를 구체화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에 1994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標本資料를 이용하여 본격적인 勤勞所得稅 稅收推計模型을 개발하기로 한다. 第1節에서는 프로그램에 직접 이용되는 1994年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내용과 標本의 構成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第2節에서는 年末精算 資料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 인한 분석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고, 第3節에서는 자료를 이용한 稅收推定結果와 實績值間의 誤差의 크기와 原因에 대해 살펴본다.

### 1. 分析資料

#### 가. 資料의 種類

本 研究에서는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해 1994년도 歸屬分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資料를 기본자료로 사용한다. 다만 本 研究에서 사용하는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資料는 全數資料가 아니라 納稅者 個人의 人的情報가 제외된 순수한 勤勞所得稅 課稅 關聯 資料로서 給與區間別로 일정 비율을 無作爲抽出하는 방법, 즉 層化無作爲抽出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各 給與區間別 分析結果를 종합하여 總稅收 및 總稅收效果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給與區間別 標本抽出率의 逆數, 즉 各 給與區間別 加重值를 고려하여 各 區間別 분석결과를 逆算하여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給與區間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總給與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이외에도, 總給與로부터 非課稅所得을 제외한 課稅所得 등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稅法이 개정되어 非課稅所得의 種類와 범위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標本을 다시 구성하여야 하는 분석상의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非課稅所得의 種類 및 範圍가 調整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標本の 修正이 필요 없도록 하기 위해 總給與를 기준으로 給與區間을 구분하였다.

本 研究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分析對象 年度가 1996년 이후인 만큼, 分析의 基礎資料로 사용하는 1994년 자료와는 상당한 정도의 時差가 있다. 따라서 1994년 자료를 기초로 1996년 또는 그 이후의 연도에 대한 勤勞所得稅 稅收 및 各種의 稅收效果를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는 분석대상 연도의 資料에 대한 勤勞所得稅 納稅者의 總數와 總給與 區間別 納稅者의 比率 등을 추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1991년부터 1994년까지의 勤勞所得稅 總納稅者의 數와 區間別 分布 등을 바탕으로 勤勞所得者의 給與區間別 豫想 分布를 추정하였다. 다만 분석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勤勞所得稅 納稅者들의 分布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하나의 分布만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平均的인 趨勢를 중심(中間值)으로 最大值와 最小值의 세 가지를 설정하여 分析結果의 誤差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給與區間別 加重値와 더불어 時間의 經過에 따른 區間別 占有比 및 總納稅者 數의 變化效果 등을 모두 고려하여 逆算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總體積인 效果를 추정하였다.

#### 나. 資料의 構成

資料의 기본적인 構成은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申告書式에 나타나 있는 항목 가운데 納稅者 個人의 人的情報를 제외하고, 勤勞所得稅

決定稅額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情報, 즉 기타의 모든 申告書式의 項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항목으로는 總給與와 非課稅 및 課稅所得, 配偶者 有無 및 扶養家族의 數, 障礙者 또는 老人의 數, 婦女子世帶主 與否, 保險料, 醫療費, 教育費, 寄附金 등과 같은 各種의 費用控除의 성격을 지닌 控除項目, 住宅마련貯蓄과 個人年金貯蓄 등의 拂入額의 一定 比率만큼에 대한 所得控除, 勤勞所得稅額控除을 포함한 各種의 稅額控除項目 등이 있다.

1994년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申告者의 總數는 약 1,030만명으로 추정된다<sup>1)</sup>. 給與區間은 年間 總給與가 0원인 경우를 포함하여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는 100만원 단위로 101개 區間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區間으로 분류하여 總 102개의 給與區間이 설정되었다. 勤勞所得稅 納稅者의 分布는 總給與額이 낮을수록 納稅者의 數가 많고 總給與額이 많을수록 納稅者의 數가 적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바 標本을 추출함에 있어서는 總給與額이 높은 區間으로 이행함에 따라 母集團에 대한 標本抽出率을 점차 높여 가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준비과정을 거쳐 1,030만명 정도의 1994년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申告者를 母集團으로 하여 앞 項에서 밝힌 바와 같이 給與區間別 層化無作爲抽出法으로 標本을 추출하였는바, 그에 따른 標本の 總數는 16만 5,053개이다.

---

1) 勤勞所得稅 納稅者가 당해연도에 2개 이상의 직장을 가진 경우 年末精算 申告書는 중복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의 제거 과정에서 일부 納稅者에 대한 申告書가 중복 또는 누락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年末精算 申告者의 數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總數라는 표현 대신 總數에 대한 推定值란 표현을 사용하였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 2. 資料特性에 따른 分析의 限界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申告書式의 작성에 있어서는 特別控除와 같이 각 항목별로 控除額의 上限이 주어진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項目에 대한 제도 개편시의 稅收效果 등을 추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醫療費控除의 경우를 보면, 醫療費 支出에 대한 控除對象의 범위가, 年間 總給與의 3%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1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勤勞者의 醫療費支出額이 總給與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勤勞者가 실제로 지출한 醫療費에 대한 統計資料를 전혀 얻을 수 없다. 더욱이 總給與의 3%를 초과하는 醫療費 支出額이 醫療費控除 限度인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年末精算 申告書에는 공제한도인 100만원만이 기재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얼마만큼의 醫療費를 지출하였는지는 파악할 수 없다. 물론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醫療費控除와 관련한 制度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의 초점이 醫療費控除制度의 개편에 있다고 한다면 과연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한 稅收效果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추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分析結果에 대한 信賴度가 의문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예상되는 資料의 構成項目에는 醫療費控除 이외에도 保險料控除, 寄附金控除, 住宅마련貯蓄控除, 個人年金貯蓄控除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어진 資料의 여건상 별도의 假定을 수립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稅收效果를 추정해 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勤勞所得控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所得控除의 限度가 있다고 하더라도 總給與 또는 課稅所得으로부터 勤勞所得控除額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

는 발생하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 3. 豫測力 檢證

#### 가. 豫測力 檢證方法의 概要

第Ⅲ章에서 설명한 흐름도를 기초로 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1994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申告資料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프로그램을 이용한 稅收豫測值에 대한 豫測力 檢證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1994年 歸屬分 所得稅法을 적용하여 추정한 1994년도 歸屬分 勤勞所得稅 推定值와 1994年 徵收分 勤勞所得稅 稅收實績을 비교하여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프로그램의 推定力을 검증해 보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1994년 자료를 바탕으로 1995년의 勤勞所得者의 數와 分布를 추정한 후 1995년 歸屬分 所得稅法을 적용하여 추정한 1995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推定值와 1995年 徵收分 勤勞所得稅 稅收實績을 비교함으로써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프로그램의 豫測力을 검증하도록 한다.

그러나 歸屬分 稅收와 徵收分 稅收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歸屬分 稅收는 當該年度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된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稅收를 말하는 반면 徵收分 稅收는 該當 所得의 歸屬年度와 상관없이 실제로 세금이 징수된 時點, 즉 當該年度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된 稅收를 말하기 때문에 양자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前年度 移越分 또는 年末精算分 稅收를 제외한, 매달 源泉徵收한 勤勞所得稅 源泉徵收分の 경우에는 대부분이 당해연도의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인바 歸屬分과 徵收分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年末精算을 통한 當該年度 勤勞所得稅는 대부분 이듬해 1월에 納付(또는 徵收)된다. 따라서 1월에 징수되는 勤勞所

得稅에는 1월분 勤勞所得에 대한 勤勞所得稅 源泉徵收分の 일부와 前年度 勤勞所得稅 年末精算에 의한 前年度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일부가 포함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歸屬分 稅收와 徵收分 稅收間에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더욱이 최근 수년간의 勤勞所得稅 稅收推移를 보면 매년 작게는 12% 정도에서 많게는 4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年末精算分 稅收를 제외한 前年度 및 當該年度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가 동일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최근 수년간에는 當該年度 歸屬分 年末精算에 따른 勤勞所得稅 精算徵收分은 前年度 歸屬分 年末精算에 따른 勤勞所得稅 精算徵收分보다 대체로 작게는 10% 많게는 40% 정도까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徵收分 稅收보다 歸屬分 稅收가 더 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年末精算에 의한 勤勞所得稅 精算 納付額이 오히려 陰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은, 1~11月分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分 稅收에서는 醫療費控除나 保險料控除, 教育費控除, 寄附金控除 등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규정에 따라 일괄 소득의 일부분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年末精算時에 이와 같은 所得控除分이 매우 커서 還給稅額이 많이 발생하게 될 때 나타날 수 있다<sup>2)</sup>. 이와 같이 연말정산에 따른 최종적인 精算稅額의 符號와 크기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우며, 그 符號에 따라 歸屬分 稅收와 徵收分 稅收間의 大小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이 勤勞所得稅 年末精算分 稅收에 국한하여 발생하는 만큼 勤勞所得稅 總稅收規模에 對比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부분의 경우에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부분이 年末精算時에 과도한 還給稅額이나 追加納付稅額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은 흔하지 않다.

## 나. 豫測力 檢證結果

### (1) 推定結果와 誤差의 原因

本項에서는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프로그램의 推定力과 豫測力を 檢證함에 있어서 第三章 第2節에서 언급하였던 이유로 인해 絶對規模보다는 1994年 歸屬分 稅收의 推定值 또는 1995年 歸屬分 稅收 豫測值와 實績值間의 차이, 즉 推定誤差 또는 豫測誤差를 實績值에 대한 相對比로서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1994년과 1995년의 세수는 이미 실현된 값인 만큼 總計에 대한 비교도 병행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稅收推定(豫測)誤差의 原因과 誤差의 水準을 檢證한다는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絶對規模를 표시함에 유의하기 바란다.

1994년과 1995년의 勤勞所得稅 徵收實績은 각각 3조 7,511억원과 5조 784억원이다. 本 研究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에 기초한 稅收推定值(1995년의 경우에는 豫測值)는 각각 3조 4,101억원(1994年 推定值)과 4조 4,421억원(1995年 豫測值 最小), 4조 5,619억원(1995年 豫測值 中間) 또는 4조 6,818억원(1995年 豫測值 最大)으로 勤勞所得稅 稅收 實績值에 대한 비율은 각각 90.9%와 87.5~92.2%이다<sup>3)</sup>. 이와 같이 本 研究에서 고안한 稅收推計 프로그램에 의한 勤勞所得稅 稅收의 推定值(또는 豫測值)는 實績值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推定值와 實績值가 서로 차이가 나는

---

3) 1995년의 경우에는 納稅者 數 및 分布에 대한 最大 또는 最小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가정과 분포추정 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먼저 最小의 경우에는 勤勞所得稅 納稅者의 總數를 직전 3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給與區間 占有比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總計가 1이 되도록 조정된 후 總 納稅者 數 推定值를 給與區間別 占有比 推定值에 배분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반면에 最大의 경우에는, 各 給與區間別 總 納稅者의 數를 최근 3년간 平均 增減率을 이용하여 추정된 후 勤勞所得稅 總 納稅者 數는 各 區間의 納稅者 數 推定值를 합계한 數值를 推定值로 하였다.

이유는 앞의 가項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크게 歸屬分과 徵收分 稅收의 統計分類差異에 의한 誤差와 推定(豫測)誤差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前者에 의한 誤差는 불가피한 것인 만큼 수용할 수밖에 없으나 後者の 경우에는 그 원인을 밝힘으로써 誤差를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表 IV-1> 1994~1995年 勤勞所得稅 稅收의 推定值(豫測值)  
(單位: 億圓[總計], 圓[1人 平均], %)

	1994年 推定結果			1995年 豫測結果				
	實績	推定值		實績	推定值			
		總計	1人平均		最小	中間	最大	1人平均
稅收	37,511	34,101	331,227	50,784	44,421	45,619	46,818	412,404
比重	—	90.9	—	—	87.5	89.8	92.2	—

註: 比重은 實績值 對比 比重임.

먼저 歸屬分 稅收와 徵收分 稅收間의 차이는 가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歸屬分과 徵收分間의 稅收統計 分類過程上에서 나타나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稅收推定誤差의 상당 부분은 推定(豫測)誤差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推定(豫測)誤差는, 분류과정에서 누락된 資料의 數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 勤勞所得稅 納稅者의 總人員數 산출에 있어 상당히 오차가 커진 데 가장 큰 원인이 있고, 勤勞所得稅 決定稅額(또는 稅收)을 산출함에 있어 稅收減少의 效果를 지니는 所得控除나 稅額控除가 다소 過大計上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추가하여 1995年 稅收豫測值와 實績值間에 서로 차이가 나타나게 된 또 다른 원인을 찾는다면, 1994年 勤勞所得稅 納稅者의 總數와 分布를 추정함에 있어 分布推定의 誤差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誤差의 發生原因을

하나씩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먼저 資料의 漏落에 의한 稅收 過小推定 可能性에 대해 살펴보자. 대부분의 勤勞所得者들은 當該年度 동안 한 직장에 근무하는바 그들의 경우에는 勤勞所得稅 年末精算申告書도 1년에 한번만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勤勞所得者가 當該年度 동안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상당 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同 勤勞所得者가 근무한 적이 있는 모든 직장 에서 申告書가 작성되어 報告되는바 그러한 勤勞所得者의 경우에는 申告書가 여러 개 제출됨에 따라 複數로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해 자료를 분석할 경우 當該年度에 근무한 직장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근무지에서 보고된 年末精算申告書에 기초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자료의 분류과정에서 이러한 중복된 신고서 가운데 中間段階에서의 申告書를 배제하여야 하는데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신고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제외되지 않아야 할 資料까지 제외되기 때문에 總納稅者의 數가 실제보다 작게 나타난 것이 한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에는 所得控除나 稅額控除가 실제보다 과대하게 추정됨에 따라 本 研究의 프로그램에서 산출한 稅收(또는 決定稅額) 推定値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된 원인에 대해 살펴보자. 勤勞所得者 가운데에는 疾病, 外遊 등의 불가피한 이유 또는 失手로 인해 勤勞所得稅 年末精算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뿐더러 그 외에도 12월 이전에 퇴사하여 12월 말의 勤勞所得稅 年末精算時에 새로운 職場에 就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年末精算申告書가 보고되지 않는 일이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年末精算申告에 의한 資料申告의 人員數가 실제의 勤勞所得者의 數보다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標本資料 分析에 의한 標本에 대한 稅收의 推定値를 이용하여 母集團에 대한 稅收를 逆算하는 방법을 통해 稅收를 추정하게 되

면, 稅收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추정하게 되는 한 요인이 된다. 더욱이 이러한 경우에는 年末精算時에 각종 所得控除와 稅額控除를 받게 되었다라면 11월까지 납부한 源泉徵收分 稅額 가운데 환급받아야 할 부분도 상당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年末精算에서 제외됨에 따라 還給稅額의 일부가 환급되지 않고 다음해의 綜合所得稅 申告時에 환급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源泉徵收分 稅收가 年末精算에 기초한 稅收보다 커질 수 있다.

그러나 本 研究에서는 자료가 이상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本 研究에서는 모든 勤勞者들이 勤勞所得稅 年末精算을 하였다는 假定下에서 決定稅額을 산출하였는바 이러한 것도 推定稅額이 實績值보다 작아지게 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즉 위와 같은 勤勞所得者의 경우에는 勤勞所得稅 精算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듬해 綜合所得稅 申告時에 이루어지는 만큼 勤勞所得稅 源泉徵收分을 포함한 勤勞所得稅의 徵收分 稅收가 歸屬分 稅收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상이 1994년과 1995년에 대한 분석결과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推定(豫測)誤差의 원인이다. 그러나 1995년의 경우에는 勤勞所得稅 納稅者의 總數와 分布에 대해서도 별도로 추정해야 하는 만큼 分布와 總納稅者 數 推定에 있어 또 다른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모든 實證研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문제를 내포함을 의미한다. 즉 本 研究에서는 1995년의 勤勞所得稅 納稅者의 總數와 分布를 추정함에 있어, 勤勞所得稅 納稅者 總數 또는 각 給與區間別 納稅者 人員數에 대한 平均的 增加(또는 變化) 趨勢만을 반영하여 추정하였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의 納稅者 總數와 分布의 變化가 추정된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값을 가지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오차는 勤勞所得者 納稅者의 總數와

分布에 대한 推定方法을 개선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하더라도 誤差發生의 餘地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이 외에도 정확히 밝혀 내기 어려운 오차의 원인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1994년 및 1995년 勤勞所得稅 稅收에 대한 推定結果는 徵收分 實績値에 비해 약 10% 정도 과소하게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두 개 年度만을 놓고 본 것인 만큼 이로부터 확정적인 결론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1994년의 경우에 推定値가 實績値의 약 91% 정도, 1995년의 경우에는 최소와 최대 豫測値의 범위가 90%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本 研究의 稅收推計 프로그램에서 추정한 勤勞所得稅 稅收는 實績値의 90~91% 정도의 수치를 (安定的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推定値(또는 豫測値)로부터 10%를 加算(gross-up)해 주면 대체로 실적치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 (2) 推定結果의 主要 內容

다음의 <表 IV-2>에는 1994년과 1995년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에 대한 推定(豫測)結果를 나타내었다.

먼저 總給與를 1萬으로 보았을 경우에 1994년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決定稅額(또는 勤勞所得稅 稅收)은 324.004로 나타났다. 따라서 非課稅所得과 課稅所得을 합산한 總給與에 대비한 勤勞所得稅 納稅者에 대한 總平均實效稅率은 3.24%라고 할 수 있다. 主要 項目에 대한 總給與 對比 構成比를 살펴보면, 非課稅所得은 總給與의 약 6.5% 정도이며, 保險料控除, 醫療費控除, 教育費控除, 無住宅勤勞者控除, 맞벌이 夫婦特別控除 및 勤勞所得控除는 總給與의 42.8%

<表 IV-2> 1994~1995年 勤勞所得稅 稅收의 推定(豫測)結果(相對比)

	1994年 推定結果	1995年 豫測結果		
		最 小	中 間	最 大
總給與(A=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非課稅所得(B)	647.543	619.940	619.938	619.943
課稅所得(C=A-B)	9,352.457	9,380.060	9,380.062	9,380.057
必要經費(D=D <sub>1</sub> +...+D <sub>6</sub> )	4,279.069	4,275.734	4,275.734	4,275.734
保險料(D <sub>1</sub> )	206.853	210.820	210.822	210.824
醫療費(D <sub>2</sub> )	41.302	44.212	44.214	44.216
教育費(D <sub>3</sub> )	68.058	72.846	72.846	72.845
無住宅勤勞者(D <sub>4</sub> )	22.243	17.984	17.986	17.980
맞벌이夫婦(D <sub>5</sub> )	33.407	28.005	28.004	28.010
勤勞所得控除(D <sub>6</sub> )	3,907.206	3,901.874	3,901.870	3,901.867
勤勞所得金額(E=C-D)	5,073.379	5,104.326	5,104.328	5,104.323
總控除(F=F <sub>1</sub> +...+F <sub>6</sub> )	1,126.599	1,074.467	1,074.469	1,074.471
所得控除(F <sub>1</sub> =F <sub>11</sub> +F <sub>12</sub> +F <sub>13</sub> )	1,112.347	1,058.590	1,058.588	1,058.594
基礎控除(F <sub>11</sub> )	511.361	451.501	451.500	451.500
配偶者控除(F <sub>12</sub> )	187.679	184.096	184.096	184.096
扶養家族控除(F <sub>13</sub> )	327.349	328.162	328.165	328.160
障礙者控除(F <sub>2</sub> )	3.563	3.576	3.574	3.580
敬老優待控除(F <sub>3</sub> )	46.708	50.013	50.015	50.010
婦女子世帶主控除(F <sub>4</sub> )	2.613	2.177	2.181	2.178
寄附金特別控除(F <sub>5</sub> )	33.084	39.064	39.063	39.062
個人年金貯蓄控除(F <sub>6</sub> )	14.252	15.877	15.881	15.877
課稅標準(G=E-F)	3,946.789	4,029.858	4,029.852	4,029.852
算出稅額(H)	416.414	446.156	446.151	446.153
稅額控除(I=I <sub>1</sub> +...+I <sub>9</sub> )	92.410	97.008	97.008	97.007
外國納付稅額(I <sub>1</sub> )	2.318	2.633	2.633	2.633
勤勞所得稅額(I <sub>2</sub> )	67.725	71.824	71.828	71.831
財形貯蓄稅額(I <sub>3</sub> )	9.473	8.567	8.564	8.561
住宅資金貯蓄稅額(I <sub>4</sub> )	2.033	2.114	2.112	2.110
證券貯蓄稅額(I <sub>5</sub> )	0.342	0.338	0.337	0.336
國外勤勞所得稅額(I <sub>6</sub> )	2.537	2.987	2.985	2.990
美國軍勤勞稅額(I <sub>7</sub> )	0.029	0.039	0.038	0.037
우리社主稅額(I <sub>8</sub> )	7.649	8.182	8.182	8.181
納稅組合稅額(I <sub>9</sub> )	0.285	0.330	0.329	0.328
稅收(J=H-I)	324.004	349.143	349.143	349.146

註：總給與의 경우 1994年과 1995年 모두 10,000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다른 項目에 대한 相對的인 比重을 비교해 보기 위해 念의 편의상 설정한 것인 만큼 실제의 總給與 絕對規模는 서로 다름에 유의하기 바람.

(課稅所得의 4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勤勞所得控除는 總給與의 3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課稅所得으로부터 이상의 必要經費의 性格을 지니는 控除項目을 차감한 勤勞所得金額은 總給與의 약 절반 정도인 50.7%를 차지하고 있다. 基礎控除와 配偶者控除, 扶養家族控除의 합은 總給與의 약 1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타의 障礙者控除, 敬老優待控除 등의 人的控除와 寄附金特別控除, 個人年金貯蓄控除 등을 포함한 각종 所得控除의 합은 總給與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하며 勤勞所得稅에 대한 總課稅標準이 산출되는바 이는 總給與의 39.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여기에 所得稅率을 적용하여 산출한 算出稅額은 416.414로 總給與의 4.2%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가운데 外國納付稅額控除와 稅額控除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勤勞所得控除 등 각종의 稅額控除 92.410을 차감하면 최종적인 결정세수 약 324가 산출된다. ▣

1995년의 경우에는 總給與를 1만으로 보았을 때 勤勞所得稅는 349.148 또는 349.146으로 總平均實效稅率이 3.49%에 이른다. 非課稅所得과 課稅所得, 勤勞所得控除를 포함한 必要經費性 控除, 勤勞所得金額, 基礎控除를 제외한 나머지 所得控除 등에 대한 總給與對比 比重은 1994년과 거의 동일하다. 반면에 基礎控除의 비중은 1994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sup>4)</sup>. 이에 따라 勤勞所得稅 課稅標準과 算出稅額 그리고 勤勞所得稅額控除의 比重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며 기타의 稅額控除의 경우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勤勞所得稅 稅收(決定稅額)의 比重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5년의 勤勞所得稅 實效稅率은 前年(1994年)에 비

4) 基礎控除의 比重 減少는 絶對規模의 減少를 의미하지는 않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해 다소 증가(약 0.25%p 정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총체적인 임금상승을 들 수 있다. 所得稅制 측면에서는 第II章 第2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4년에 비해 1995년의 공제 수준이 확대되었는바, 동일한 임금을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공제 수준의 확대로 인해 세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稅制改編으로 인한 實效稅率 變化效果는 오히려 陰(-)의 값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전년에 비해 總平均實效稅率이 상승한 것은 稅制變化에 따른 稅負擔 緩和 效果보다는, 전반적인 賃金上昇에 따른 課稅所得의 增大로 인한 勤勞所得稅 負擔의 增加 效果가 더 크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것에 대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勤勞所得者의 인적구성을 나타내는 納稅者의 總數가 增加하였을 뿐더러 전반적인 賃金水準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給與區間別 納稅者 分布가 크게 上向調整되었기 때문에 높은 所得稅 限界稅率이 적용되는 課標區間에 속하는 納稅者의 比率이 크게 增加한 것을 實效稅率 上昇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表 IV-2>를 보면 1994년에 비해 1995년에 實效稅率이 커진 주요 원인으로 課標의 增大와 所得稅率 개편에 따른 算出稅額 變化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課標比重 增加와 관련해서는 必要經費를 포함하여, 基礎控除를 제외한 所得控除의 比重이 전년과 비슷한 반면 基礎控除의 比重이 下落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1995년의 總給與가 1994년에 비해 약 30% 정도 증가하였으나 勤勞所得稅 納稅者 總數의 증가율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바, 納稅者의 總數 增加로 인해 基礎控除의 絕對總額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總給與에 대비한 基礎控除의 比重은 오히려 크게 下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각종 공제수준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勤勞所得稅 課標가 增加하게 된 것이 實效稅率 上昇의 主要要因이라고 하겠다.

## V. 勤勞所得稅 課稅體系 改編의 模擬實驗結果

本章에서는 最近의 勤勞所得稅 關聯 所得稅法 改正에 따른 稅收 效果를 검토하고 향후의 稅制改編에 따른 稅收效果를 예측해 본다. 이를 위해 먼저 최근 3년간의 所得稅法 改正效果를 추정함으로써 最近의 稅法改正이 稅收에 미친 影響에 대한 趨勢的 흐름을 파악하고, 이어서 向後의 所得稅制 改編에 따른 效果를 분석하기로 한다. 다만 制度改編에 따른 稅收效果를 추정해 봄에 있어서는, 勤勞所得 控除와 勤勞所得稅額控除 등을 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러 가지 稅法改正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假想的인 制度로 所得稅制를 개편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稅收效果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最近의 稅法改正 效果의 推定

本節에서는 1994년 이후의 稅法改正이 勤勞所得稅 稅收에 미친 影響을 稅收效果와 實效稅率의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먼저 이를 위해서는 比較의 基準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바, 比較年度에 예상되는 稅收推定值의 규모를, 基準年度에 예상되는 稅收推定值를 100으로 하였을 경우에 대한 相對比로 표현하기로 한다. 또한 特定年度에 대한 所得稅法의 改正이 勤勞所得稅 稅收에 미친 效果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基準年度와 比較年度를 설정한 후, 실제로 比較年度에 적용되었던 稅法을 比較年度의 勤勞所得과 納稅者의 總數 및 給與區間別 納稅者의 分布 등에 적용하여 추정한 比較年度의 稅收推定值와, 基準年度의 稅法을 적용하여 추정한 比較

年度の 假想的인 稅收推定値를 상호 비교해 봄으로써 稅法改正에 따른 稅收效果를 추정해 본다. 다만 基準年度와 比較年度 사이에 있었던 稅法改正 效果를 비교함에 있어서는, 논의의 편의상 基準年度の 稅法을 적용하여 추정한 比較年度の 稅收推定値와, 比較年度の 稅法을 적용하여 추정한 比較年度の 稅收推定値의 相對比를 추정함으로써 두 가지 稅收의 相對的인 差異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가. 最近 3年間的 勤勞所得稅 稅法改正 效果의 推定

#### (1) 1994年 稅收推定値 基準 稅法改正 效果

本節에서는 1994~1996년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를 추정하여 同 期間 동안에 있었던 所得稅法의 改正效果(稅收效果)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1994~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稅收를 1994年 및 1995年, 1996年の 所得稅法에 각각 적용하여 稅收를 추정해 본다. 다시 말해, 1994년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의 경우에는 1994年 所得稅法을 적용하여 稅收를 推定하여 그 값을 100으로 환산한다. 1995년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의 경우에는 1994年 所得稅法과 1995年 所得稅法의 두 가지를 각각 적용한 경우에 예상되는 稅收를 추정하는바 결과치는 1994年 歸屬分 稅收推定値에 대한 比率로 표현한다. 그리고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의 경우에는 1994년과 1995年 所得稅法 및 1996年 初期 所得稅法과 1996年 8月 臨時國會를 통과한 改正所得稅法의 네 가지 경우에 대해 稅收를 추정하고 결과치는 역시 1994年 稅收에 대한 相對比로 표현한다.

다만 이상과 같이 세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1995년 이후의 期間에 대한 勤勞所得稅 納稅者의 總數와 給與階級別 納稅者의 分布를 추정하는 것이 필요한바, 第IV章에서 하였던 바와 같이 最小, 中間, 最大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세수를 추정한다. 또한 각 該當年度에

대한 稅收는, 1994年의 所得稅法에 기초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算出한 1994年 勤勞所得稅 推定値를 100으로 보았을 경우에 대한 相對比率로 표현하기로 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1995년의 勤勞所得稅의 稅率體系 및 控除體系 改編(第II章 第2節 참조)에 따른 1995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에 미친 效果를 분석한다(<表 V-1> 참조).

먼저 分析對象年度의 所得稅法에 관계없이 1994年 所得稅法을 적용한 경우에 대한 各 該當年度 歸屬分 勤勞所得稅 추정결과를 살펴보자. 1994年 歸屬分 稅收를 100으로 하였을 때 1995年 歸屬分 稅收는 1994년에 비해 42.3%(最小), 46.2%(中間), 50.1%(最大)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非課稅所得까지 포함한 總給與에 대비한 1995年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實效稅率은 3.8%로 1994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의 경우에는 總稅收가 1994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에 이르는 98.7%(最小), 113.9%(中間), 129.1%(最大)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實效稅率도 4.4%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勤勞所得稅 納稅者(免稅者 包含) 1人當 勤勞所得稅 負擔額은 1994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勤勞所得者의 總數에 관계없이 1995년의 경우에는 36.0%, 1996년의 경우에는 81.5%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勤勞所得稅 稅收의 增加率에 비해 納稅者 1人當 稅負擔額의 增加率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勤勞所得稅 總納稅者의 數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賃金水準이 上昇하게 되면 所得稅의 稅率體系가 누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賃金上昇率보다 稅負擔額의 增加率이 더 커지게 된다. 따라서 1995년과 1996년의 賃金上昇率이 經常國民總生産 增加率을 상회하는 정도로 높게 나타났는바, 이러한 것이 勤勞所得稅의 累進稅率體系로 인해 稅負擔額의 增加率이 매우 크게 나타난 근본 원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1994년 이후에 세법

<表 V-1> 1994年 稅收推定值 對比 稅收效果  
(1994年 稅收推定值 = 100)

(單位：%)

歸屬年度	稅法年度	最 小		中 間		最 大	
		總 計	1人平均	總 計	1人平均	總 計	1人平均
1994	1994	100(3.240)					
1995	1994	142.327 (3.800)	136.040 (3.800)	146.167 (3.799)	136.039 (3.799)	150.009 (3.800)	136.040 (3.800)
1996		198.666 (4.370)	181.505 (4.370)	213.906 (4.370)	181.503 (4.370)	229.146 (4.370)	181.502 (4.370)
1995	1995	130.788 (3.491)	125.010 (3.491)	134.316 (3.491)	125.009 (3.491)	137.846 (3.491)	125.010 (3.491)
1996		183.170 (4.029)	167.346 (4.029)	197.221 (4.029)	167.344 (4.029)	211.271 (4.029)	167.344 (4.029)
	1996*	162.978 (3.585)	148.899 (3.585)	175.480 (3.585)	148.898 (3.585)	187.981 (3.585)	148.897 (3.585)
	1996**	141.320 (3.108)	129.111 (3.108)	152.158 (3.108)	129.109 (3.108)	162.999 (3.108)	129.108 (3.108)
1995	1994	<100>					
	1995	<91.892>					

- 註：1. \*와 \*\*는 각각 1996年 初와 1996年 8月 臨時國會 通過 稅法基準임.  
 2. ( ) 안은 總給與 對比 實效稅率임.  
 3. < > 안은 1995年의 稅收를 1994年 稅法과 1995年 稅法の 두 가지  
 를 適用하여 추정한 것의 相對比를 나타냄. 다만 比較의 基準을 설정  
 하기 위해 1994年 稅法을 適用하여 추정한 1995年 歸屬分 稅收를  
 100으로 보았을 때의 相對比를 나타내도록 하였음.

개정이 없었다는 매우 가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추정한 것인 만큼, 勤勞所得稅 課稅體系가 전반적으로 개편된 1995년 이후의 勤勞所得稅 總稅收 및 1人當 稅負擔額은 이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分析對象年度의 所得稅法을 적용한 경우에 대한 各 該當

年度 歸屬分 勤勞所得稅 추정결과에 대해 살펴보자. 1994년 稅收을 100으로 보았을 때, 실제로 1995년 歸屬分 勤勞所得에 적용되었던 1995년 歸屬 所得稅法을 적용하여 1995년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을 추정하면 130.788~137.846으로 나타나 1994년에 비해 약 30.7%(最小), 34.3%(中間), 37.8%(最大) 정도 稅收가 增加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實效稅率은 3.5% 정도로 추정되어 1994년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경우보다는 다소 增加하였지만 1994년 세법이 1995년 歸屬分 勤勞所得에도 적용되는 가상적인 狀況下에서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人當 稅負擔額은 總稅收의 增加率보다 다소 적은 2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總稅收, 實效稅率, 1人當 稅負擔額 측면에서 볼 때 1994년 稅法보다는 1995년 稅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세 가지 값들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1995년의 所得稅法은 1994년 稅法에 비해 상당히 큰 稅制 減免效果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數値는 <表 V-1>의 맨 아랫줄에 나타나 있는바, 1995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해 1994년의 稅法을 적용하는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稅收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95년 歸屬分 勤勞所得에 대해 1995년의 稅法을 적용한 경우의 稅收은 91.892로 나타났다. 이는 곧 1995년의 所得稅法 改正에 따라 약 8.1% 정도의 稅收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1995년의 勤勞所得稅 納稅者 總數와 給與區間別 納稅者의 分布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95년의 稅法改正效果는 약 -8.1%라고 할 수 있다. 1995년의 稅法改正의 주요 내용은 勤勞所得控除 등 각종의 所得控除를 대폭 확대하고 稅率體系를 단순화하였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효과를 분리하여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개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勤勞所得者의 稅負擔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 所得稅法 및 1996년 初期 稅法과 8月の 改正稅法을 각각 적용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1996년 歸屬分 稅收에 대한 추정결과

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95년의 세법을 적용하는 가상적인 狀況下에서는, 1994年 歸屬分 稅收推定值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83~2.11배 정도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假想的인) 實效稅率은 4.03%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6年 初期 稅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總稅收가 상당히 축소되어 1994年 稅收推定值의 약 1.63~1.88배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實效稅率도 앞의 경우에 비해 상당히 낮은 3.59%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1996年 初期 稅法에서도 1995年 稅法에 비해 여러 가지의 稅制減免效果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추가하여 1996년 8월에 小數 家口에 대한 勤勞所得稅額 控除를 확대하는 내용의 制度 改編을 골자로 하는 1996年 改正 所得稅法을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에 적용하여 稅收를 추정하게 되면 相對比는 1996年 初期 稅法下에서보다 더욱 감소하여 1994年 稅收의 약 1.41~1.63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勤勞所得稅의 實效稅率은 3.11%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러한 수준은 1994年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實效稅率 3.24%보다 다소 낮다. 이와 같이 勤勞所得稅 負擔은 1994년과 1996년 사이에 2년간의 時差를 두고 상당히 크게 축소되었는바, 실질적인 稅制減免效果가 상당히 큼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의 絶代規模는 勤勞所得稅 納稅者의 總數와 給與區間別 納稅者의 分布가 변화함으로써 전년에 비해 增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勤勞所得에 適用되는 所得稅法이 改正되었는바 이러한 개편은 勤勞所得稅의 實效稅率을 대폭 下落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1996년에도 전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勤勞所得稅가 감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實效稅率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總稅收 規模가 증가하는 것은, 賃金水準이 인상되고

勤勞所得者の 總數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勤勞所得稅 稅收의 增加分이 實效稅率 하락에 따른 稅收 減少分을 초과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996년의 稅法改正效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의 (2)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 (2) 1995年 稅收推定值 基準 稅法改正效果

여기에서는 앞의 (1)에서와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1995年 所得稅法을 기준으로 추정된 1995年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稅收推定值와, 1995年 및 1996年 稅法(初期 및 8월 臨時國會 通過 改正稅法)을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에 적용하여 추정된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를 분석한다. 各 年度에 대한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稅收推定值는, 1995年 所得稅法을 적용하여 추정된 1995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推定值 가운데 中間에 대한 推定值를 100으로 환산한 값을 基準으로 이에 대한 相對比를 추정하여 비교한다.

먼저 1995年 所得稅法을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에 적용하여 추정한 1996年 歸屬分 稅收推定值는 136.373(最小), 146.834(中間), 157.294(最大)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水準은 1995年 稅收推定值(中間)에 비해 약 36.4~57.3% 정도 稅收가 增加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기본적으로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勤勞者들의 賃金水準이 상당히 크게 引上되었기 때문이며 所得稅率體系 또한 累進構造로 되어 있기 때문에 稅收의 增加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라 勤勞所得稅 實效稅率은 4.029%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준은 1995年 稅法에 대한 1995年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實效稅率 3.491%보다 상당히 큼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에 1996年 初期 所得稅法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勤勞所得稅 稅收의 相對比가 121.340(最小), 130.647(中間), 139.955(最大) 정도일 것으로 추정되었는바, 1995年 稅法

을 적용하였을 경우보다 前年 對比 稅收增加率이 상당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實效稅率이 3.585%로서 1995년에 비해 약간 上昇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에 추가하여 1996년 8월에 개정된 改正 所得稅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稅收가 105.215(最小), 113.284(中間), 121.355(最大)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實效稅率도 3.108%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1996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勤勞所得稅 負擔을 경감시켜 주는 것을 골자로 所得稅法이 改正<sup>1)</sup>되었는바 이에 따른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稅收는 1995年 稅收推定值에 비해 약 13.3%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勤勞所得稅 納稅者 總數의 增加 및 所得稅率의 累進體系에도 불구하고 前年 對比 稅收增加率이 最近 수년간의 增加率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總給與에 대비한 勤勞所得稅의 實效稅率이 3.1%로 매우 낮아진 것으로부터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996년 歸屬分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法이 두 차례 개편됨에 따라 예상되는 1996년 歸屬分 勤勞所得稅에 대한 稅收減少效果는 <表 V-2>의 맨 아랫줄에 나타난 바와 같다. 1995年 所得稅法으로부터 勤勞所得控除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개편된 1996年初期 所得稅法으로 稅法이 개편됨에 따라 勤勞所得稅는 약 11.0% 稅收가 減少하는 效果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여기서 1996年 8月의 改正 所得稅法으로 다시 한번 稅法이 개정됨에 따라 稅收는 13.3% 정도 추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 사실상 1996年 初期 所得稅法은 1994년 말에 개정되었으나 시행시기만 1996년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表 V-2> 1995年 稅收推定值 對比 稅收效果  
(1995年 稅收推定值[中間]=100)

(單位：%)

歸屬年度	稅法年度	最 小		中 間		最 大	
		總 計	1人平均	總 計	1人平均	總 計	1人平均
1995	1995	97.374 (3.491)	100 (3.491)	100 (3.491)	100 (3.491)	102.628 (3.491)	100 (3.491)
1996	1995	136.373 (4.029)	133.867 (4.029)	146.834 (4.029)	133.866 (4.029)	157.294 (4.029)	133.865 (4.029)
	1996**	121.340 (3.585)	119.111 (3.585)	130.647 (3.585)	119.110 (3.585)	139.955 (3.585)	119.109 (3.585)
	1996*	105.215 (3.108)	103.281 (3.108)	113.284 (3.108)	103.280 (3.108)	121.355 (3.108)	103.279 (3.108)
	1995	<100>					
	1996*	<88.977>					
	1996**	<77.152>					
1996	1996*	[100]					
	1996**	<86.710>					

註：1. \*와 \*\*는 각각 1996年 初와 1996年 8月 臨時國會通過 稅法基準임.

2. ( ) 안은 總給與 對比 實效稅率임.

3. < > 안은 1995年 稅法適用 1996年 歸屬分 稅收推定值(=100) 對比 比率임.

4. [ ] 안은 1996年 初期 稅法適用 1996年 歸屬分 稅收推定值(=100) 對比 比率임.

이상의 논의에서 稅收效果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勤勞所得稅 納稅者(또는 年末精算 申告者)의 總數 또는 給與區間別 納稅者의 分布 變化에 따른 稅收效果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所得稅法이 개정됨에 따라 예상되는 稅收效果를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勤勞所得者의 總數와 分布 變化가 稅收에 미친 영향을 배제하고, 1995年 所得稅法으로부터 1996年 8月의 改正 所得稅法에 이르기까지 두 차례에 걸친 稅法改正의 結果로서 예상되는 勤勞所得稅 稅收에 대한 순수한

稅法改正效果는 약 22.8% 정도의 減少效果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나. 1996~1997年의 勤勞所得稅 稅法改正 效果의 推定

本項에서는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推定值를 기준으로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稅에 대하여 1996年 初期 所得稅法 및 8월 臨時國會 通過 改正稅法, 1997年 稅法改正案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1996년과 1997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를 추정해 본다.

<表 V-3>에서는 1996年 勤勞所得者 分布의 中間에 대하여 1996年 初期 稅法을 적용하여 추정한 1996年 歸屬分 稅收를 100으로 하였을 경우에 對比해, 1996年 8月의 改正 所得稅法과 1997年 改正稅法을 적용하여 추정한 1996~1997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推定值의 相對比를 추정해 본다. 그리고 <表 V-4>에서는 1996年 8月의 改正 所得稅法을 기준으로 하여 <表 V-3>과 같은 방법으로 1996~1997年 歸屬分 勤勞所得稅의 稅收를 추정하여 이에 대한 稅收增加率 및 稅法改正에 따라 예상되는 稅收減少 效果를 비교해 본다.

먼저 1996年 初期 所得稅法을 1996年 勤勞所得에 적용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稅收推定值를 100(中間 基準)으로 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1996年 8月의 改正稅法을 적용한 경우에 예상되는 稅收는 80.534(最小), 86.710(中間), 92.888(最大)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른 勤勞所得稅의 實效稅率은 앞항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1996年 初期 所得稅法에서 3.6%로 추정된 데 비해 1996年 8月 改正 所得稅法下에서는 3.1%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改正稅法에 의한 總稅收 및 實效稅率은 初期 稅法의 경우보다 두 가지 모두 낮게 나타났다. 1997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推定值의 경우에는, 1996年 初期 稅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125.710(最小), 145.797(中間), 165.868(最大)로 추정되었으며, 이 때의 實效稅率은 4.0%로 추정

<表 V-3> 1996年 稅收推定值 對比 稅收效果  
(1996年 初期 稅法 稅收推定值[中間]=100)

(單位：%)

歸屬年度	稅法年度	最 小		中 間		最 大	
		總計	1人平均	總計	1人平均	總計	1人平均
1996	1996*	92.876 (3.585)	100 (3.585)	100 (3.585)	100 (3.585)	107.124 (3.585)	100 (3.585)
	1996**	80.534 (3.108)	86.711 (3.108)	86.710 (3.108)	86.710 (3.108)	92.888 (3.108)	86.709 (3.108)
1997	1996*	125.710 (4.013)	129.375 (4.013)	145.797 (4.012)	129.374 (4.012)	165.886 (4.012)	129.374 (4.012)
	1997	94.515 (3.017)	97.270 (3.017)	109.617 (3.017)	97.269 (3.017)	124.720 (3.017)	97.269 (3.017)
1996	1996*	<100>					
	1996**	<86.710>					
1997	1996*	[100]					
	1997	<75.184>					

- 註：1. \*와 \*\*는 각각 1996年 初期와 1996年 8月 臨時國會通過 稅法基準임.  
 2. ( ) 안은 總給與 對比 實效稅率임.  
 3. < > 안은 1996年 初期 稅法適用 1996年 歸屬分 稅收推定值(=100) 對比 比率임.  
 4. [ ] 안은 1996年 初期 稅法適用 1997年 歸屬分 稅收推定值(=100) 對比 比率임.

되었다. 그리고 1997年の 改正稅法을 적용하여 1997年 歸屬分 稅收推定值는 94.515(最小), 109.617(中間), 124.720(最大)로 추정되었고, 實效稅率은 3.0%로 추정되었다(<表 V-3> 참조).

1996年 8月的 改正 所得稅法은 종전의 所得稅法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보다 總稅收가 13.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V-4> 1996年 稅收推定值 對比 稅收效果  
(1996年 8月 稅法 稅收推定值[中間]=100)

(單位：%)

歸屬年度	稅法年度	最 小		中 間		最 大	
		總 計	1人平均	總 計	1人平均	總 計	1人平均
1996		92.877 (3.108)	100 (3.108)	100 (3.108)	100 (3.108)	107.125 (3.108)	100 (3.108)
	1996**	129.064 (3.572)	131.794 (3.572)	149.689 (3.572)	131.793 (3.572)	170.313 (3.572)	131.793 (3.572)
1997	1997	109.002 (3.017)	112.179 (3.017)	126.419 (3.017)	112.178 (3.017)	143.836 (3.017)	112.178 (3.017)
1997	1996**	<100>					
	1997	<84.455>					

- 註：1. \*\*는 1996年 8月 臨時國會通過 稅法基準임.  
 2. ( ) 안은 總給與 對比 實效稅率임.  
 3. < > 안은 1996年 8月 臨時國會通過 稅法適用 1996年 歸屬分 稅收推定值(=100) 對比 比率임.

#### 다. 最近의 勤勞所得稅 稅法改正效果에 대한 綜合

##### (1) 所得控除와 稅額控除

앞의 가項과 나項에서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1994년 이후 1997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상당한 정도의 稅收를 輕減시킴으로써 勤勞所得者의 實效稅負擔率을 대폭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方向에서 所得稅法이 改正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듯이 勤勞所得이나 기타의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假定下에서, 所得控除를 확대하는 것은 免稅點을 上向調整하게 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免稅者의 比率을 높여주고, 課稅者에 대한 勤勞所得稅 課稅標準을 전반적으로 引下해 주는 效果가 있기 때문에 實效稅率을 下落시키게 된다. 稅額控除, 특히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를 擴大하거나 稅額控除率을 上向調整하는 것은, 일반

적으로 勤勞所得이 免稅點을 超過하여 최소한 1원 이상의 勤勞所得稅를 부담하는 勤勞所得稅 課稅者 전반에 걸쳐 勤勞所得稅의 稅負擔을 輕減시켜 줌으로써 實效稅率을 낮추어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만 稅額控除率을 확대해 주는 後者의 경우에는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勤勞所得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最高所得層에 속하는 勤勞所得者에 대해서는 控除上限으로 인해 추가적인 稅額減免의 惠澤이 없음은 물론이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勤勞所得稅의 垂直的 衡平性을 제고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나 상대적인 給與區間別 效果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 즉 前者의 경우에는 免稅者의 比率을 擴大하는 效果와 함께 일부 課稅者의 경우 所得稅 限界稅率이 引下되는 效果가 있는 등 전반적으로 課稅의 축소를 통해 實效稅率이 하락하게 된다. 반면에 後者의 경우에는 免稅者의 比率이나 勤勞所得稅 課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勤勞所得稅 算出稅額이 일정 수준 이하인 勤勞所得者의 경우에 국한하여 稅負擔 輕減惠澤이 주어짐에 따라 實效稅率이 낮아지게 된다. 특히 勤勞所得稅 限界課稅者는 前者의 경우 免稅者로 稅負擔이 零이 되지만 後者의 경우에는 決定稅額이 종전에 비해 일정 비율만큼 감소할 뿐 여전히 課稅者의 範疇에 남는다는 점에서 兩者間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포함하여 所得稅 전반에 걸친 稅負擔의 衡平性을 고려한다면 어느 것이 다른 것에 비해 더 나은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양자간의 우열을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所得控除 또는 稅額控除 水準의 擴大 幅이 상대적으로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다.

이상의 논의에서 배제된 것은 勤勞所得稅 免稅者에 대한 稅負擔이다. 우리나라의 現行 所得稅制는 負의 所得稅(negative income

tax) 制度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免稅者의 경우에는 勤勞所得控除와 勤勞所得稅額控除 가운데 어떠한 것을 上向調整하더라도 勤勞所得稅 측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없다. 그러므로 所得控除나 稅額控除 등의 확대는 所得稅 納稅義務者 전반에 걸친 輕減惠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의 課稅者에게만 해당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所得控除와 稅額控除의 擴大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稅收效果를 분리하여 추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를 勤勞所得控除와 勤勞所得稅額控除의 확대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勤勞所得控除가 확대되었을 경우에 勤勞所得稅額控除가 확대된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稅收效果가 달라질 뿐더러, 勤勞所得稅額控除의 경우에도 勤勞所得控除가 확대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稅收效果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어느 것을 기준점으로 하느냐에 따라 각각에 대한 稅收效果는 달라지게 된다.

## (2) 1994~1997年 勤勞所得稅制 改編의 흐름

1994~1997년 사이에 있었던 勤勞所得稅와 관련한 所得稅法 改正의 주요 흐름은 所得稅制의 單純化와 所得控除 水準의 擴大, 勤勞所得稅額控除의 擴大 등이다. 1995년에는 稅制의 單純化 측면에서 稅率構造가 대폭 개편되어 10%, 20%, 30%, 40%의 네 가지로 단순화되는 과정에서 최저세율이 5%에서 10%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勤勞所得控除 水準이 확대되었다. 1994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전반적인 勤勞所得者들에 대한 賃金水準이 크게 인상됨에 따라 이러한 것이 所得稅의 累進稅率體系와 상승작용을 일으켜 勤勞所得稅 實效稅率이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여건

이 갖추어졌으나, 1995년에 접어들면서 勤勞所得控除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임금수준의 전반적인 인상에 따른 實效稅率의 增加要因이 크게 완화되었는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實效稅率의 增加率이 상당히 완화되어 1994년의 3.2%에 비해 3.5%로 다소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게 되었다. 이후 1996년에도 전반적인 賃金水準이 크게 상승하였는바 勤勞所得稅 實效稅率이 크게 상승할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1994년 말의 세법개정에 따라 1996년부터 적용되기로 예정되었던 1996年の 初期 所得稅法과 1996年 8月の 臨時國會를 통과한 改正 所得稅法 등 두 차례에 걸친 稅法改正으로 인해 稅負擔 輕減效果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6년 8월의 改正 稅法에 근거할 경우에는 1994년의 3.2%에 비해 實效稅率이 더욱 낮아져 3.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1997년에도 이어져 勤勞所得稅 實效稅率이 약 3.0% 정도로 下落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상의 稅法改正에 따르는 所得稅 負擔의 變化推移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인 賃金水準의 上昇은 所得稅의 累進稅率體系로 인해 實效稅率을 증대시킴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의 勤勞所得稅 實效稅率은 1995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것을 보면, 所得控除 또는 稅額控除 등의 擴大比率는 賃金上昇率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왜냐하면 所得控除 또는 稅額控除의 擴大水準이 賃金上昇率를 상회할 수 있는 정도로 확대되는 경우라면,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所得稅의 累進稅率體系로 인해 實效稅率이 다소나마 상승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수년간의 勤勞所得稅 改編에 따른 稅負擔 效果를 요약한다면, 총체적인 勤勞所得稅 稅收는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지만 1人當 稅負擔의 실질가치는 대체로 일정 수준에 머무는 등 상당히 큰 규모의 勤勞所得稅 負擔 輕減

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2. 勤勞所得稅 課稅體系 改編의 效果 推定

本節에서는 勤勞所得稅의 稅法改正 效果를 추정해 보기 위해 所得控除 및 稅額控除에 대한 한도 또는 比率 調整을 골자로 하는 여러 가지 代案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稅收效果를 추정해 본다. 그럼으로써 假想的인 稅法改正에 따른 稅收效果를 비교하여 所得控除 또는 稅額控除의 변화에 따른 稅收變化의 彈力性을 추정해 본다.

### 가. 시나리오

本節에서는 勤勞所得控除 또는 勤勞所得稅額控除를 조정함에 따른 稅收效果를 추정하기 위해 각각에 대한 假想的인 改編案을 설정하기로 한다. 다만 논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改編案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1996年 8月の 改正 所得稅法 또는 1997년 改正 所得稅法의 주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勤勞所得控除나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또는 勤勞所得稅額控除率 등을 조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1997年 勤勞所得稅 納稅者의 總數와 分布를 最小, 中間, 最大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 1997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를 추정하여 각각에 대한 稅收效果를 추정해 본다. 稅收效果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1996年 8月 改正 所得稅法 또는 1997年 所得稅法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1997年 歸屬分 稅收에 대한 相對比率의 형태로 표현하기로 한다.

本 研究에서는 勤勞所得控除의 한도를 調整하였을 경우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와,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및 稅額控除率을 조정하였을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각각 세 가지와 네 가지를 설정하는 등 稅收效果의 比較研究를 위해 모두 열 가지(A~J)의 시나

리오를 설정한다. 먼저 勤勞所得控除 改編에 따른 稅收效果를 추정하기 위해 現行의 勤勞所得控除 水準의 下限과 上限을 각각 10만원씩 인상하는 방안(勤勞所得控除 限度 400~800만원 → 410~810만원) 그리고 50만원 또는 100만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설정하였다(A, B, C). 다음으로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調整에 따른 稅收效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勤勞所得稅額控除率은 중전(1996年 8月 改正稅法 基準)과 동일하게 45%와 20%로 유지하되 稅額控除의 限度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 방안과, 70만원 또는 8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설정하였다(D, E, F). 여기에 추가하여 勤勞所得稅額控除率을 1997年 改正稅法에서 개편한 것과 마찬가지로 45%와 20%를 45%와 30%로 조정하는 방안을 설정하면서 控除限度에 변화가 없는 경우와 1997年의 改正稅法과 같이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方案 및 이를 70만원 또는 8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설정하였다(G, H, I, J)(〈表 V-5〉 참조).

#### 나. 稅收效果

〈表 V-4〉에서 보았듯이 1996年 8月的 改正 所得稅法을 적용하여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稅收推定值의 中間값을 100으로 환산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1996年 8月 改正 所得稅法을 적용하여 추정한 1997年 歸屬分 稅收는 129.064(最小), 149.689(中間), 170.313(最大) 정도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7年 改正 所得稅法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1997年 歸屬分 稅收는 109.002(最小), 126.419(中間), 143.836(最大)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1997年 勤勞所得稅와 관련한 主要 稅法改正 내용은 전술하였듯이, 勤勞所得控除의 下限과 上限을 각각 100만원씩 上向調整하고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를 60만원으로 引上하면서 算出稅額 50만원 超過分에 대한 稅額控除率도 20%에서 30%로 上向調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所得稅制의 改編에 따라 1997年 歸屬

<表 V-5> 稅法改正 效果 推定을 위한 시나리오

(單位: %)

	稅法基準年度	勤勞所得控除限度	勤勞所得稅額控除	
			限 度	控 除 率
A	1996年	400~800→410~810	從前과 同一	從前과 同一
B		400~800→450~850	從前과 同一	從前과 同一
C		400~800→500~900	從前과 同一	從前과 同一
D	8月	從前과 同一	50→60	從前과 同一
E		從前과 同一	50→70	從前과 同一
F		從前과 同一	50→80	從前과 同一
G	改正稅法	從前과 同一	從前과 同一	45, 20→45, 30
H		從前과 同一	50→60	45, 20→45, 30
I		從前과 同一	50→70	45, 20→45, 30
J		從前과 同一	50→80	45, 20→45, 30

分 稅收는 평균적으로 15.5% 정도 減少하게 되었다.

本項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勤勞所得控除의 한도를 조정하는 方案(A, B, C)과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를 조정하는 方案(D, E, F) 및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및 稅額控除率을 함께 上向調整하는 方案(G, H, I)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稅收效果를 살펴보도록 한다<sup>2)</sup>.

(1) 勤勞所得控除 限度 擴大

먼저 勤勞所得控除의 限度 擴大에 대한 稅收效果를 살펴보자. 논의의 편의상 아래에서는 모두 稅收推定值에 대한 中間값만을 비교

2) 1997年 改正 所得稅法에 대한 稅收效果를 勤勞所得控除와 勤勞所得稅額控除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本項에서의 분석은 각각의 개정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稅收效果를 추정함으로써 이러한 개편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예상되는 稅收效果를 간접적으로 짐작해 본다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도록 한다. 勤勞所得控除의 下限과 上限을 각각 10만원씩 上向調整하는 경우(A)에는 <表 V-6>에서 보듯이 1996年 8月 改正稅法에 의한 稅收推定值 149.689보다 약간 작은 147.923으로 약 1.18%의 稅收減少效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勤勞所得控除 水準을 A보다 크게 확대한 B와 C의 경우 각각 稅收推定值가 141.017과 132.739로 1996年 8月 改正稅法下에서의 稅收推定值보다 稅收가 각각 5.79% 및 11.32%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勤勞所得控除額의 限度 引上의 絕對規模는 A, B, C 각각 10만원, 50만원, 100만원씩으로서 B와 C는 A에 비해 공제인상폭이 각각 5배와 10배이고, 이에 따른 稅收減少率은 대체로 比例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B의 경우에는 控除 限度 引上幅이 A에 비해 다섯 배이고, 稅收減少率은 5.79%로 後者(1.18%)의 약 5배 정도, 兩者間의 稅收減少率 差異의 絕對值는 4.61%p로 나타나고 있다. C의 경우에는 A에 비해 引上幅이 10배이고, 稅收減少率은 약 9.6배에 이르며, A와의 稅收減少率 差異의 絕對值는 10.14%p, B와의 稅收減少率 差異의 絕對值는 4.53%p인 것으로 나타났다.

勤勞所得控除의 限度를 上向調整하는 것은 곧 免稅點의 上昇을 의미하는바, 이에 따라 稅收減少效果가 나타난다. 이는 대부분의 課稅者에 대한 勤勞所得稅 課稅標準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더러 높은 限界稅率을 적용받던 납세자 가운데 일부가 낮은 稅率區間의 稅率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稅收가 累進的(또는 遞增的)으로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所得稅가 累進稅率體系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勤勞所得控除 限度를 引上함에 따른 稅收減少效果가 遞增的으로 감소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比例的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勤勞所得控除의 限度를 더욱 크게 引上할수록 所得控除惠澤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課稅者의 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所得稅 累進稅率體系로 인한 課稅 下落時의 遞增的인 稅收減少效果와 勤勞所得控除 限度 擴大에 따른 免稅者 數의

增加에 따른 遞減的인 稅收減少效果가 대체로 상쇄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稅收가 比例的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勤勞所得控除의 限度를 C보다 더 높게 조정하게 되는 경우에도 稅收減少率은 控除 限度의 引上率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勤勞所得控除 限度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대폭 上向調整되는 경우에는 稅收가 遞減的으로 감소하게 될 것임은 물론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1996年 8月の 改正 所得稅法이 1997年의 改正 所得稅法으로 개편됨에 있어 勤勞所得控除의 限度 擴大에 따른 稅收減少效果는 C의 예를 볼 때 약 11.32%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 (2)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擴大

다음은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擴大가 稅收에 미치는 效果를 추정해 보자.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上向調整하는 경우(D)에는 稅收가 1996年 8月の 改正 稅法에 근거한 1997年 歸屬分 稅收推定值 149.689(<表 V-6> 基準)보다 소폭 감소한 146.97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를 종전보다 10만원 인상함에 따라 예상되는 稅收減少率은 1.81%인 것으로 추정된다. 勤勞所得稅額控除의 한도를 70만원(E)과 80만원(F)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稅收가 각각 145.297과 144.324로 추정되었는바 이에 따른 1996年 8月 改正 所得稅法에 대한 稅收推定值 對比 稅收減少率은 각각 2.93%와 3.58%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와 F에 대한 勤勞所得稅額控除의 引上幅은 각각 20만원과 30만원으로 D의 10만원에 비해 稅額控除의 限度가 각각 2배 및 3배의 수준을 보이지만, 稅收減少率은 C와 D의 경우에는 稅額控除 限度의 引上幅에 대한 增加率보다 낮은 水準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에 따라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를 10만원씩 추가로 확대하는 경우에 추가적인 稅收減少率은 각각 1.81%p, 1.12%p, 0.65%p 遞減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勤勞所得控除의 경우에는 所得控除限度가 擴大됨에 따라 稅收가 대체로 比例的으로 감소하였는 데 반해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擴大에 따른 稅收는 遞減的으로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같이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의 幅을 확대할수록 稅收減少率이 遞減하는 원인은, 稅額控除의 限度 擴大에 따라 稅額控除의 惠澤을 누리게 되는 限界便益者들이 대부분 勤勞所得稅 算出稅額이 일정 수준을 超過하는 中·高所得層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總人員數는 算出稅額이 增加할수록 대체로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勤勞所得稅 課稅者의 대부분은 勤勞所得稅額控除額이 限度에 未達하기 때문에 稅額控除의 限度를 擴大하더라도 이들의 稅負擔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반면에 1996年 8月 改正 稅法을 기준으로 할 때, 勤勞所得稅 算出稅額(T)이 187만 5천원 이상인 勤勞所得者의 경우에는 勤勞所得稅額控除額이

勤勞所得稅額控除額

$$\begin{aligned}
 &= \min\{50\text{만원}, 50\text{만원} \times 0.45 + (T - 50\text{만원}) \times 0.2\} \\
 &= \min\{50\text{만원}, 22\text{만 } 5\text{천원} + (T - 187\text{만 } 5\text{천원} + 137\text{만 } 5\text{천원}) \\
 &\quad \times 0.2\} \\
 &= \min\{50\text{만원}, 22\text{만 } 5\text{천원} + (T - 187\text{만 } 5\text{천원}) \times 0.2 + 137\text{만 } 5 \\
 &\quad \text{천원} \times 0.2\} \\
 &= \min\{50\text{만원}, 50\text{만원} + (T - 187\text{만 } 5\text{천원}) \times 0.2\} \\
 &= 50\text{만원}
 \end{aligned}$$

이 되므로 T가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勤勞所得稅額控除額은 稅額

控除의 上限인 50만원이 된다. 이때 稅額控除의 限度를 60만원으로 擴大하게 되면 算出稅額이 187만 5천원~237만 5천원인 課稅者의 경우에는 算出稅額 187만 5천원 超過分의 20%를 全額 稅額控除받을 수 있다. 그리고 算出稅額이 그 이상인 課稅者의 경우에는 10만원만을 추가로 稅額控除받을 수 있다. 여기서 稅額控除 限度를 70만원 또는 80만원으로 擴大하게 되면, 算出稅額이 237만 5천원~287만 5천원 또는 287만 5천원~337만 5천원인 課稅者의 경우에는 算出稅額 237만 5천원 또는 287만 5천원 超過分의 20%를 全額 稅額控除받을 수 있으며, 算出稅額이 그 이상인 課稅者의 경우에는 10만원 또는 20만원만을 추가로 稅額控除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勤勞所得者의 納稅者 분포를 보면 勤勞所得稅 算出稅額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算出稅額이 증가할수록 納稅者의 數가 대체로 감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勤勞所得稅 算出稅額이 187만 5천원, 237만 5천원, 287만 5천원 또는 337만 5천원을 초과하는 課稅者의 數는 점차 감소하게 된다. 그러므로 勤勞所得稅額控除의 경우에는 稅額控除의 限度를 확대할 경우 추가적으로 稅金輕減惠澤을 누리게 되는 課稅者의 數가 감소함에 따라 稅收減少率이 遞減하게 되는 것이다.

勤勞所得控除의 限度나 勤勞所得稅額控除의 稅額控除率 등과 같은 다른 요인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上向調整하는 것에 따른 稅收減少效果는 약 1.81%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및 稅額控除率 擴大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와 稅額控除率을 함께 확대하였을 경우 稅收에 미치는 效果는 다음과 같다.

먼저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간 50만원으로 하고 算出稅額 50만원 超過分에 대한 稅額控除率만 20%에서

30%로 인상한 경우(G)에는 1996年 8月 改正 所得稅法에 의한 稅收 149.689(<表 V-6> 基準)보다 다소 감소한 146.837로 나타나 약 1.91% 정도의 稅收減少效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추가하여 稅額控除의 限度를 60만원으로 上向調整하였을 경우(H)에는 稅收가 142.572로 나타나 1996年 8月 改正 所得稅法을 적용한 경우보다 약 4.75% 정도의 稅收減少效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의 경우에는 稅額控除率 調整에 따라 1.91%의 稅收가 감소하고 稅額控除의 限度를 60만원으로 10만원 上向調整하면 약 2.84%p의 稅收가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稅額控除率을 上向調整하고 稅額控除 限度도 70만원(I) 또는 80만원(J)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稅收가 각각 139.339, 135.926으로 나타나 稅收減少率은 각각 6.91%와 8.53%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算出稅額 50만원 超過分에 대한 稅額控除率을 30%로 上向調整한 이후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를 10만원씩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追加的인 稅收減少率은 각각 2.84%p, 2.16%p, 1.62%p로서 점차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勤勞所得稅 算出稅額 50만원 超過分에 대해 적용되는 勤勞所得稅額控除의 比率을 30%로 조정하는 경우에도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를 추가적으로 上向調整하게 되면 稅收減少率은 (2)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遞減的으로 減少한다고 할 수 있다. 이의 원인은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勤勞所得稅 算出稅額이 높은 給與區間으로 올라갈수록 課稅者의 數가 감소하는바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를 인상하더라도 稅額控除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課稅者의 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기 때문이다.

勤勞所得控除의 限度 調整에 따른 稅額控除率을 무시하고 순수하게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上向調整하고, 算出稅額 50만원 超過分에 대한 稅額控除率도 30%로 인상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稅收減少效果는 약 4.75%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를 上向調整함에 따른 稅收效果를 제외하고 算出稅額 50만원 超過分에 대한 순수한 勤勞所得稅 稅額控除率 引上에 따른 효과는 1.91%라고 할 수 있다.

#### 다. 所得控除와 稅額控除의 比較

1996年 8月 改正 所得稅法으로부터 1997年 改正 所得稅法으로 이행함에 따른 總稅收減少效果는 <表 V-8>에서 보듯이 15.54%이다. 이는 크게 勤勞所得控除의 限度 調整에 따른 稅收減少效果와,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및 稅額控除率 調整에 따른 稅收減少效果로 구분할 수 있다.

앞의 나項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15.54% 가운데 勤勞所得控除의 限度 調整에 의한 稅收減少效果는 11.32%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및 稅額控除率 調整에 의한 稅收減少效果는 4.7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가지 稅收減少效果를 단순히 합산하는 경우에는 勤勞所得控除의 限度 調整과,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및 稅額控除率 調整에 따른 總稅收減少效果는 16.07%로서 15.54%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勤勞所得控除의 限度 調整과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및 稅額控除率 調整에 의한 稅收減少效果를 각각 분리하여 추정한 것을 단순히 합산한 데서 발생하는 오차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勤勞所得控除의 限度를 확대하면 免稅點의 상승과 함께 전반적인 勤勞所得稅 課標가 감소하기 때문에 勤勞所得稅 算出稅額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곧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및 稅額控除率을 調整하게 될 경우 勤勞所得稅額控除에 의한 稅收減少效果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도 설명하였기 때문에 부연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위의 결과는 總稅收減少效果 15.54% 가운데 勤勞所得控除 調整에 의한 稅收減少效果와 勤勞所得稅額控除 調整에 의한 稅收減

<表 V-6> 1996年 8月 稅法 稅收推定值 對比 1997年の 稅收(1996年 稅收推定值[中間]=100)

(單位：%)

歸屬年度	稅法年度	最 小		中 間		最 大	
		總 計	1人平均	總 計	1人平均	總 計	1人平均
1996	1996**	92.877 (3.108)	100 (3.108)	100 (3.108)	100 (3.108)	107.125 (3.108)	100 (3.108)
	1996**	129.064 (3.572)	131.794 (3.572)	149.689 (3.572)	131.793 (3.572)	170.313 (3.572)	131.793 (3.572)
1997	1997	109.002 (3.017)	112.179 (3.017)	126.419 (3.017)	112.178 (3.017)	143.836 (3.017)	112.178 (3.017)
	1996** + A	127.543 (3.530)	131.261 (3.530)	147.923 (3.530)	131.260 (3.530)	168.304 (3.530)	131.260 (3.530)
	1996** + B	121.589 (3.365)	125.134 (3.365)	141.017 (3.365)	125.132 (3.365)	160.448 (3.365)	125.132 (3.365)
	1996** + C	114.451 (3.168)	117.787 (3.168)	132.739 (3.168)	117.786 (3.168)	151.028 (3.168)	117.786 (3.168)
	1996** + D	126.728 (3.507)	130.423 (3.507)	146.978 (3.507)	130.422 (3.507)	167.230 (3.507)	130.422 (3.507)
	1996** + E	125.279 (3.467)	128.932 (3.467)	145.297 (3.467)	128.930 (3.467)	165.317 (3.467)	128.930 (3.467)
	1996** + F	124.439 (3.444)	128.067 (3.444)	144.324 (3.444)	128.066 (3.444)	164.208 (3.444)	128.066 (3.444)
	1996** + G	126.607 (3.504)	130.297 (3.504)	146.837 (3.504)	130.296 (3.504)	167.068 (3.504)	130.296 (3.504)
	1996** + H	122.930 (3.402)	126.513 (3.402)	142.572 (3.402)	126.512 (3.402)	162.217 (3.402)	126.512 (3.402)
	1996** + I	120.142 (3.325)	123.645 (3.325)	139.339 (3.325)	123.643 (3.325)	158.538 (3.325)	123.643 (3.325)
	1996** + J	118.061 (3.268)	121.503 (3.268)	136.926 (3.268)	121.502 (3.268)	155.792 (3.268)	121.502 (3.268)

註：1. \*\*는 1996年 8月 臨時國會通過 稅法基準임.

2. A : 勤勞所得控除 限度 400~800 → 410~810만원

B : 勤勞所得控除 限度 400~800 → 450~850만원

C : 勤勞所得控除 限度 400~800 → 500~900만원

D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60만원

E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70만원

F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80만원

G : 勤勞所得稅額控除 控除率 45, 20% → 45, 30%

H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60만원 + 控除率 45, 20% → 45, 30%

I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70만원 + 控除率 45, 20% → 45, 30%

J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80만원 + 控除率 45, 20% → 45, 30%

3. ( ) 안은 總給與 對比 實效稅率임.

<表 V-7> 1997年 稅收推定值 對比 1997年の 稅收  
(1997年 稅收推定值[中間]=100)

(單位：%)

歸屬年度	稅法年度	最 小		中 間		最 大	
		總 計	1人平均	總 計	1人平均	總 計	1人平均
1997	1996**	102.092	117.487	118.408	117.486	134.721	117.486
	1997	86.223	100	100	100	113.777	100
	1996**+A	100.889	117.012	117.010	117.011	133.132	117.011
	1996**+B	96.180	111.549	111.547	111.548	126.918	111.548
	1996**+C	90.533	105.000	104.999	104.999	119.467	104.999
	1996**+D	100.245	116.265	116.263	116.264	132.283	116.264
	1996**+E	99.098	114.935	114.933	114.934	130.769	114.934
	1996**+F	98.434	114.164	114.163	114.163	129.892	114.163
	1996**+G	100.148	116.152	116.151	116.151	132.154	116.151
	1996**+H	97.240	112.779	112.778	112.778	128.317	112.778
	1996**+I	95.035	110.222	110.220	110.221	125.407	110.221
	1996**+J	93.389	108.313	108.311	108.312	123.235	108.312

註：1. \*\*는 1996年 8月 臨時國會通過 稅法基準임.

2. A : 勤勞所得控除 限度 400~800 → 410~810만원
- B : 勤勞所得控除 限度 400~800 → 450~850만원
- C : 勤勞所得控除 限度 400~800 → 500~900만원
- D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60만원
- E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70만원
- F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80만원
- G : 勤勞所得稅額控除 控除率 45, 20% → 45, 30%
- H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60만원 + 控除率 45, 20% → 45, 30%
- I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70만원 + 控除率 45, 20% → 45, 30%
- J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80만원 + 控除率 45, 20% → 45, 30%

3. 總給與 對比 實效稅率은 <表 V-6> 참조.

<表 V-8> 1997年 稅收推定值 對比 1997年 稅收  
(1997年 稅收推定值 = 100)

(單位：%)

歸屬年度	稅法年度	稅收 基準年度	
		1997 稅收 = 100	1996** 稅收 = 100
1997	1996**	118.406	100
	1997	100	84.455
	1996**+A	117.011	98.821
	1996**+B	111.548	94.207
	1996**+C	104.999	88.676
	1996**+D	116.264	98.189
	1996**+E	114.934	97.066
	1996**+F	114.163	96.416
	1996**+G	116.151	98.095
	1996**+H	112.778	95.246
	1996**+I	110.221	93.086
	1996**+J	108.312	91.474

註：1. \*\*는 1996年 8月 臨時國會通過 稅法基準임.

2. A : 勤勞所得控除 限度 400~800 → 410~810만원
- B : 勤勞所得控除 限度 400~800 → 450~850만원
- C : 勤勞所得控除 限度 400~800 → 500~900만원
- D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60만원
- E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70만원
- F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80만원
- G : 勤勞所得稅額控除 控除率 45, 20% → 45, 30%
- H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60만원 + 控除率 45, 20% → 45, 30%
- I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70만원 + 控除率 45, 20% → 45, 30%
- J : 勤勞所得稅額控除 限度 50 → 80만원 + 控除率 45, 20% → 45, 30%

3. ( ) 안은 總給與 對比 實效稅率임.

少效果에 대한 相對的인 比重을 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勤勞所得控除와 勤勞所得稅額控除가 稅收에 미친 影響의 比重을 말한다면, 각각에 대한 直接的인 比較는 어렵지만, 1997年 改正稅法에 따른 稅收減少效果를 논함에 있어서는 대체로 勤勞所得控除 調整에 의한 稅收減少 部分이 勤勞所得稅額控除 調整에 의한 稅收減少 部分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前者의 경우 대부분의 課稅者가 稅金輕減의 惠澤을 누리는 데 반해, 後者の 경우에는 一部の 課稅者만이 稅金輕減의 惠澤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VI. 分析 및 模型의 限界點과 改善方向

本章에서는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프로그램 開發 및 各種 稅法改正에 따른 稅收效果를 추정함에 있어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分析의 限界點과 이에 대한 改善方向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第1節에서는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申告資料 자체에서 기인하는 分析의 限界點에 대해 살펴본다. 第2節에서는 稅收推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標本抽出 및 勤勞所得稅 納稅義務者에 대한 分布 推定에 따른 誤差의 可能性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第3節에서는 각각의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의 研究에서 보완하여야 할 課題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가피한 分析의 限界點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한다.

### 1. 分析資料의 特性에 의한 分析의 限界

本節에서는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해 이용하는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資料 자체가 가지는 特性으로 인해 야기되는 分析의 限界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 가. 資料 特性에 의한 分析의 限界 I : 費用控除의 控除項目을 中心으로

第Ⅲ章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申告書의 基本 構成 項目은 總給與와 非課稅 및 課稅所得, 配偶者 有無 및 扶養家族의 數, 障礙者 또는 老人의 數, 婦女子世帶主 與否, 保險料, 醫療費, 教育費, 寄附金 등과 같은 各種 費用控除의 성격을 지닌 控

除項目, 住宅마련貯蓄과 個人年金貯蓄 등의 拂入額의 一定 比率에 대한 所得控除, 勤勞所得稅額控除를 포함한 各種의 稅額控除項目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 項目은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申告書式의 작성과정에서 上限이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納稅者가 지출한 金額이 法定 上限을 초과할 때 실제의 支出額보다 작은 上限이 보고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항목에 대한 所得控除의 上限이 확대되는 경우의 稅收效果를 추정하고자 할 때는 該當 項目에 대한 실제의 支出額을 추정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주어질 자료를 가지고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것도 設問調査 등의 방법을 통해 보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시될 수 있으며, 또한 調査資料의 信憑性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給與區間別로 被調査對象者를 분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의 문제가 제기되는바 사실상 이러한 작업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한 假定에 입각하여 法定 上限을 초과하는 支出額에 대한 分布를 추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情報가 부족한 상황에서 誤差의 여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研究의 目的이 勤勞所得控除나 勤勞所得稅額控除, 稅率體系, 各種 人的控除 등과 관련한 制度의 改編에 대한 稅收效果를 추정하는 경우라면 위에 나타나는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納稅 및 徵稅와 관련한 諸般 環境이 변하게 되면 法定 上限이 규정되어 있는 所得控除가 허용되는 支出項目에 대한 分布 把握이 성공적인 稅收效果 推定을 위해 필수적인 만큼 이상의 문제는 勤勞所得稅 稅收推計에 있어 현실적인 障礙要因이 된다.

이상과 같은 문제는 대부분 醫療費控除, 保險料控除, 일부의 教育費控除, 寄附金特別控除 등과 같은 特別控除 項目의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이 외에도 長期住宅마련貯蓄이나 個人年金貯蓄 拂入額

에 대한 控除 등의 경우에도 많이 나타난다<sup>1)</sup>. 이에 대해서는 다음 項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나. 資料 特性에 의한 分析의 限界 II : 分布變化 關聯 控除項目을 中心으로

가項에서도 언급하였듯이 長期住宅마련貯蓄이나 個人年金貯蓄 등에 대한 所得控除는, 勤勞所得者의 總數 및 給與區間別 分布 變化와 別개로 變化가 매우 극심한 項目이다. 즉 財形貯蓄의 경우에는 1994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限時的으로 所得控除을 허용해 주고 있는바 1995년 이후 所得控除의 對象이 되는 財形貯蓄 加入者數가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所得控除의 規模는 勤勞所得者의 總數가 증가하는 것과 반대로 減少하고 있다. 따라서 1995년 이후의 勤勞所得稅 稅收를 예측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效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것 역시 個別 納稅者의 대한 情報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分析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다.

이와 반대로 個人年金貯蓄의 경우에는 새로이 신설된 所得控除 項目일 뿐더러 個人年金貯蓄 加入者의 數가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1994年の 資料뿐만 아니라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所得控除 規模의 增加效果를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個人年金 總貯蓄殘高와 加入者(計座) 數 등을 바탕으로 일정 假定下에 該當 項目에 대한 資料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우회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假定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인 만큼 稅收效果에 대한 精確한 推定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1) 財形貯蓄 拂入額에 대한 所得控除는 현재 폐지된 상태이나 1994년 이전에 가입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계속 所得控除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은 所得控除 項目이나 稅額控除 項目이 신설될 때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 다. 資料 特性에 의한 分析의 限界 III : 年末精算 申告 漏落· 重複 問題

本 研究에서는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申告資料에 대한 標本 資料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年末精算 申告資料는 母集團 自體에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당히 큰 誤差 要因을 가지고 있다. 즉 納稅者가 失手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年末精算 申告를 하지 않아 資料가 漏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本 研究의 稅收推計에 대한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當該年度에 두 개 이상의 직장을 가졌거나 또는 여러 번에 걸쳐 移職한 勤勞所得者의 경우에는 年末精算 申告書가 複數로 존재하게 되는바 重複 申告書에 대한 分類 除去過程에서도 상당히 큰 誤差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은 第IV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勤勞所得稅 稅收推定 結果에 상당히 큰 誤差를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에 있어 이상과 같은 母集團 特性으로 인해 稅收推定 誤差가 발생할 수도 있다.

## 2. 稅收推計 프로그램 關聯 問題點

本節에서는 本 研究에서 개발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問題點과 分析의 限界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아래와 같이 각각에 대한 問題點을 짚어 본다.

## 가. 標本 抽出方法의 差異에 따른 分析結果의 誤差 可能性

### (1) 標本 區間 分類 基準 差異에 따른 分析結果의 誤差 可能性

母集團으로부터 標本을 추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本 研究의 研究對象인 勤勞所得稅 年末精算 資料에 입각한 研究와 관련해서는, 標本을 구성함에 있어 非課稅所得과 課稅所得을 합산한 總給與를 기준으로 給與區間을 구분하고 各 給與區間別로 標本을 無作爲抽出하는 層化無作爲抽出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區間의 분류에 있어 總給與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이외에도 課稅所得, 勤勞所得金額 또는 課稅標準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 등 연구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本 研究에서는 稅法이 개정됨에 따라 非課稅所得과 課稅所得의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는바 그와 같은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標本을 再構成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本 研究에서 채택한 總給與를 기준으로 한 標本 區間의 分類 方法이, 總給與 이외의 기준을 사용하여 標本 區間을 분류하는 경우에 비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後者의 경우에는 非課稅所得 및 課稅所得의 範圍가 조정됨에 따라 標本을 再構成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바 이는 標本 抽出 過程에서 현실적인 제약점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방안이 되기 어려울 뿐더러 時間的·金錢的 측면에서도 費用效率의 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總給與를 기준으로 標本 區間을 분류하게 되면, 비록 總給與 水準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給與의 種類에 따라 非課稅所得의 比重이 매우 높은 資料와 比重이 매우 낮은 資料가 同一 區間內에 함께 분류됨에 따라 서로 이질적인 자료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자료로 간주되어 誤差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研究의 目的이 課稅所得이나 課稅標準 區間別로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분석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本 研究에서와 같이 總給與를 기준으로 資料 區間을 분석한 경우에는 研究目的에 맞추어 分析結果를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標本 區間을 어떠한 基準으로 구분하였는가에 따라 研究의 分析範圍가 상이해질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本 研究에서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보다는, 일차적인 稅收推計와 稅法改正에 따른 稅收效果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만큼 總給與를 기준으로 標本 區間을 구분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 (2) 層化無作爲抽出法에 따른 誤差의 可能性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本 研究에서는 總給與를 기준으로 일정 구간을 구분하고, 同一 區間內에서는 總給與 水準에 관계없이 無作爲抽出하는 方法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은 同一 區間內의 納稅者 數가 상당히 많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만약 納稅者의 數가 많지 않다면 無作爲抽出法으로 標本을 抽出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偏倚(bias)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本 研究에서는 總給與 水準이 높은 區間으로 이행할수록 各 給與區間에 속한 納稅者의 數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給與水準이 높은 區間으로 이행함에 따라 標本抽出率을 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方法을 이용하여 標本抽出에 따른 誤差의 可能性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標本抽出 過程에서 야기될 수 있는 誤差의 可能性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 나. 勤勞所得稅 納稅者 分布 推定과 關聯한 分析의 限界

本 研究에서는 1994년 자료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1995년 이후의 年度에 대한 勤勞所得稅 稅收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分析對象 年度에 대한 納稅者 總數와 給與區間別 納稅者 分布를 추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本研究에서는 1991~1994년의 勤勞所得稅 總納稅者의 數와 區間別 分布를 바탕으로 分布를 複數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納稅者 總數와 分布를 추정하는 것은 실제의 경우와 상당한 정도의 오차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개별납세자에 대한 稅收推計 프로그램이 아무리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總稅收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오차를 나타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方法 이외의 다른 方法으로 納稅者의 總數와 分布를 추정하더라도 誤差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本研究에서 이용한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分布를 추정하여 분석하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3. 改善方向

第1節과 第2節에서 논의한 分析의 限界點에 대해서는 일부의 경우 誤差의 發生 可能性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건상 불가피하게 誤差를 수용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다.

먼저 前者와 관련해서는, 法定 上限이 주어진 費用控除的 控除項目에 대한 上限 引상에 따른 稅收效果를 추정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개선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年末精算 申告書에 上限을 초과한 金額까지 모두 기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의 支出額을 모두 기재하므로 資料分析 結果의 信憑性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즉 이를 위해서는 申告書式의 內容과 項目의 數를 調整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야기되며, 특히 電算入力時에는 入力 資料의 數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管理費用이 증대된다는 短點이 지적될 수 있다. 이 외에도 上限을 초

과하는 부분까지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上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證憑資料를 제출하여 신고해도 추가적인 稅金輕減의 惠澤이 없으므로 모든 支出額을 全額 기재할 유인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制約要因이 된다. 둘째는 法定 上限이 기재되어 있는 納稅者를 대상으로 현재의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假定을 수립하여 上限을 초과하는 支出額에 대한 分布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보다 나은 代案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 있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에 대한 分布 推定值가 얼마나 信憑性을 가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財形貯蓄이나 個人年金貯蓄 控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分布의 變化가 매우 극심한 경우에 대해서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의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한 방법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改善方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母集團 資料가 가지는 特性 가운데 年末精算 申告의 漏落 또는 重複 問題와 관련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에 의한 稅收效果를 趨勢的으로 파악하여 平均的인 誤差를 逆算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것 또한 현실적으로 보다 나은 代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기타 標本區間 分類基準 差異 또는 層化無作爲抽出法에 따른 誤差 및 勤勞所得稅 納稅者 分布 推定方法의 差異에 따른 誤差 發生 可能性의 問題는, 研究의 目的이나 파악하고자 하는 分析結果의 種類에 따라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요인에 의한 誤差는 分析의 限界라기보다는 分析 目的의 상이성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VII. 要約 및 結論

特定 稅目에 대한 稅收은, 주어진 稅法體系內에서 課稅對象과 관련된 經濟活動의 結果로서 결정되는 課稅標準에 法定稅率을 적용하여 산출한 決定稅額에 대한 稅金의 賦課·徵收가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주어진 稅法體系 또는 課稅對象과 관련된 經濟活動의 結果, 納稅者의 總數 및 分布, 기타 예측하기 어려운 不確實性 등의 여건이 변화하게 되면 該當 稅目에 대한 稅收은 변하게 된다.

本 研究은 勤勞所得稅에 대하여 稅收推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에 부수적으로 稅法改正이나 納稅者의 分布 등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한 稅收效果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勤勞所得稅 課稅體系는 總給與로부터 非課稅所得을 차감하여 課稅所得을 산출하고, 勤勞所得控除와 각종의 人的控除 및 費用控除의 성격을 가진 特別控除와 일부의 貯蓄 拂入額에 대한 所得控除를 차감하여 課稅標準을 산출하며, 여기에 法定 稅率을 적용하여 算出稅額을 계산한 뒤, 勤勞所得稅額控除 등을 포함하여 각종 稅額控除 項目을 차감함으로써 최종적인 決定稅額을 산출한다. 勤勞所得稅는 대부분 매월 給與 支給時에 일정 부분을 源泉徵收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세금의 납부는 年末精算에 따라 계산된 決定稅額과 源泉徵收한 勤勞所得稅間의 差異를 계산하여 殘餘分 納付 또는 超過徵收分 還給 등의 방법으로 징수된다.

우리나라의 勤勞所得控除와 人的控除 및 特別控除 등의 所得控除는 賃金水準의 上昇 및 인플레이션, 여타 種類의 所得에 대한 稅負

擔의 衡平性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限度나 基準金額이 上向調整되어 왔다. 勤勞所得稅의 稅率은 기본적으로 超過累進稅率體系를 가지고 있는바 그러한 기본 구조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課標區間이나 稅率의 數, 最高稅率 및 最低稅率 水準 등은 상당히 변화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稅制의 單純化 및 衡平性 提高 차원에서 稅率階級の 數가 네 단계로 축소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勤勞所得稅額控除의 경우에도 算出稅額의 일정 비율만큼을 공제해 주는 방식에는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稅額控除의 限度 設定 및 調整과 稅額控除率 등은 수차에 걸쳐 조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勤勞所得稅 稅收는 최근 들어 매우 높은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전반적인 賃金水準의 대폭적인 인상에 있지만 所得稅 體系 자체가 累進稅率構造로 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趨勢에 一助를 한 것으로 사료된다.

本 研究에서 개발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한 프로그램은 개별 납세자에 대한 勤勞所得稅 決定稅額 算出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를 給與區間別로 합산하여 평균하는 방법으로 給與區間別 平均 稅負擔을 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勤勞所得稅의 總稅收는 각 給與區間別 納稅者의 比重과 總 納稅人員數를 逆算하는 방법을 통해 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本 研究에서 개발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稅收效果를 요약하면, 최근의 所得稅制 개편은 一般 大衆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勤勞所得者들의 稅負擔을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전반적으로 賃金水準이 크게 상승하면서 課標가 크게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높은 所得稅 限界稅率을 적용받는 課標의 比重이 增大됨에 따라 總稅收뿐만 아니라 總給與에 對比한 實效稅率 역시 크게 상승하였으나, 수차에 걸친 勤勞所得控除의 限度 擴大와 각종 控除水準이 上向調整되면서 實效稅率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7년에 예정된 改正 所得稅法에서는 勤勞所得控除의 限度를 확대하고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및 稅額控除率 또한 上向調整하는 것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이 稅收에 미치는 效果를 구분하여 추정해 본 결과 勤勞所得稅 稅收減少效果 가운데 勤勞所得控除의 限度 擴大에 의한 것이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및 稅額控除率 調整에 의한 것은 나머지 3분의 1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勤勞所得控除의 限度 上向調整에 따른 限界稅收效果는 控除 水準의 引上幅에 큰 차이 없이 대체로 比例的으로 稅收가 減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및 稅額控除率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限界稅收效果가 遞減的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免稅點 水準 및 免稅者 比率의 變化에 따른 各 限界稅率 適用 課標 區間內의 課標變化, 勤勞所得稅 課稅者들의 算出稅額의 分布 差異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本 研究에서는 分析資料 自體가 지니는 特性和 勤勞所得稅 納稅者의 總數 및 給與區間別 納稅者의 分布 등에 대한 推定過程, 그리고 各種 控除制度의 新設과 該當 項目에 대한 급격한 分布 變化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分析結果에 다소간의 誤差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誤差發生 原因 가운데 일부의 경우에는 分析方法이나 推定方法을 개선함으로써 分析結果의 信賴性을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母集團 資料 자체가 가지고 있는 特殊性 때문에 分析結果의 誤差를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研究方法의 開發과 分析資料의 調查項目이나 報告形式 등에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의 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장기간에 걸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本 研究는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해 年末精算 資料라는 微視 資料를 이용한 최초의 연구라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또한 巨

視資料를 이용한 稅收推計의 研究에서 사실상 분석이 불가능하였던 稅法改正 效果 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정확성이 우수한 稅收推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다만 本 研究도 微視資料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다른 研究에서와 마찬가지로 納稅者 分布 變化 및 所得 特性의 變化 등의 時間的 趨勢變化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다소의 問題點이 있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 參考文獻

- 羅城麟, 『韓國의 租稅－社會扶助 模型 I』, 政策研究資料 91-41, 韓國開發研究院, 1991.
- 羅城麟·玄鎮權, 「韓國의 租稅－社會扶助 模型 2: 母集團化 適用을 통한 租稅－社會扶助의 所得分配 效果」, 『財政論集』, 第7集, 韓國財政學會, 1993.
- \_\_\_\_\_, 『租稅 및 社會扶助政策의 效果分析』, 研究報告書 93-09, 韓國租稅研究院, 1993.
- 盧基星·柳一鎬·尹建永·李鎮淳, 『稅收推計 模型開發에 관한 研究』, 韓國開發研究院, 1990.
- 成明宰, 『稅收推計模型과 稅收展望 - IFGLS 方法을 이용한 SUR 模型을 중심으로』, 研究報告書 95-05, 韓國租稅研究院, 1995.
- 成明宰·玄鎮權, 『稅收展望과 稅收推計의 改善方向』, 研究報告書 94-04, 韓國租稅研究院, 1994.
-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各 號.
- 韓國開發研究院, 『財政統計資料集』, 1995.

## <附錄>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微視模型 프로그램

本節에서는 勤勞所得稅 稅收推計를 위한 模型으로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다만 프로그램 전부를 소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本 研究에서는 프로그램의 核心에 해당하는 [圖 III-1]에 제시한 흐름도에 기초한 個別納稅者에 대한 勤勞所得稅 決定稅額 算出을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아래의 프로그램은 1996년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한 所得稅法을 기초로 작성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한 統計프로그램은 PC用 GAUSS이다. 단, 紙面 관계상 프로그램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였다.

※ 個別納稅者에 대한 1996年 歸屬分 勤勞所得稅 決定稅額 算出 프로그램

/ \* 勤勞所得稅의 稅率 및 控除制度 關聯 基礎資料 \* /

aa1=4000000;	@ 근로소득공제 하한 @
ab1=8000000;	@ 근로소득공제 상한 @
a2=1000000;	@ 1인당 기본공제액 @
a3=500000;	@ 1인당 추가공제액 @
aa41=600000;	@ 표준공제 @
a5=720000;	@ 개인연금 저축 공제 상한 @
a6=720000;	@ 특별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 상한 @

```

t1=0.10;           @ 최저세율 @
t2=0.20;           @ 두번째 과표구간 세율 @
t3=0.30;           @ 세번째 과표구간 세율 @
t4=0.40;           @ 최고세율 @
tt1=10000000;      @ 최저 과표구간 상한 @
tt2=40000000;      @ 두번째 과표구간 상한 @
tt3=80000000;      @ 세번째 과표구간 상한 @
ttt1=1000000;      @ 두번째 과표구간 적용시 이
                    전 구간까지의 산출세액 @
ttt2=7000000;      @ 세번째 과표구간 적용시 이
                    전 구간까지의 산출세액 @
ttt3=19000000;     @ 최고 과표구간 적용시 이전
                    구간까지의 산출세액 @
segong=500000;     @ 근로소득세액공제 상한 @

```

/\* 출력자료의 종류 I (표본 계급별 변수) \*/

```

gongje1=zeros(102,1); @ 근로소득공제 @
gongje2=zeros(102,1); @ 기본공제 @
gongje21=zeros(102,1); @ 본인공제 @
gongje22=zeros(102,1); @ 배우자공제 @
gongje23=zeros(102,1); @ 부양가족 공제 @
gongje3=zeros(102,1); @ 추가공제 @
gongje31=zeros(102,1); @ 장애자공제 @
gongje32=zeros(102,1); @ 경로우대공제 @
gongje33=zeros(102,1); @ 부녀자공제 @
gongje4=zeros(102,1); @ 특별공제 @
gongje41=zeros(102,1); @ 보험료공제 @

```

<code>gongje42=zeros(102,1);</code>	@ 의료비공제 @
<code>gongje43=zeros(102,1);</code>	@ 교육비공제 @
<code>gongje44=zeros(102,1);</code>	@ 주택마련저축공제 @
<code>gongje45=zeros(102,1);</code>	@ 기부금특별공제 @
<code>gongje46=zeros(102,1);</code>	@ 표준공제 @
<code>gongje5=zeros(102,1);</code>	@ 개인연금저축공제 @
<code>gongje6=zeros(102,1);</code>	@ 공제 계 = 기본공제 + 추가공 제 + 특별공제 + 연금공제 @
<code>gross =zeros(102,1);</code>	@ 총급여 @
<code>gwase =zeros(102,1);</code>	@ 과세소득 @
<code>bigwase =zeros(102,1);</code>	@ 비과세소득 @
<code>gsodeuk =zeros(102,1);</code>	@ 근로소득금액 @
<code>tbase=zeros(102,1);</code>	@ 과세표준 @
<code>sanchult=zeros(102,1);</code>	@ 산출세액 @
<code>seaek1=zeros(102,1);</code>	@ 외국납부세액공제 @
<code>seaek2=zeros(102,1);</code>	@ 근로소득세액공제 @
<code>seaek3=zeros(102,1);</code>	@ 재형저축세액공제 @
<code>seaek4=zeros(102,1);</code>	@ 납세조합세액공제 @
<code>sumtax=zeros(102,1);</code>	@ 결정세액(또는 근로소득세 세수) @

`/* 출력자료의 종류 II (표본의 급여계급내 변수) */`

<code>x3637=x36+x37;</code>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수 @
<code>x36370=zeros(rows(x36),1);</code>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수 = 0(독신가구) @

$x36371 = x36370;$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수 = 1 @
$x36372 = x36370;$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수 = 2 @
$x36373 = x36370;$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수 = 3 이상 @
$xso = x03 + x04 + x07;$	@ 과세소득 @
$g1 = \text{zeros}(\text{rows}(xso), 1);$	@ 근로소득공제 @
$g21 = \text{ones}(\text{rows}(xso), 1) * a2;$	@ 본인공제 @
$g22 = \text{ones}(\text{rows}(xso), 1) * x36 * a2;$	@ 배우자 공제 @
$g23 = \text{ones}(\text{rows}(xso), 1) * x37 * a2;$	@ 부양가족 공제 @
$g2 = g21 + g22 + g23;$	@ 기본공제 @
$g31 = \text{ones}(\text{rows}(xso), 1) * x38 * a3;$	@ 장애자 @
$g32 = \text{ones}(\text{rows}(xso), 1) * x39 * a3;$	@ 경로우대 @
$g33 = \text{ones}(\text{rows}(xso), 1) * x40 * a3;$	@ 부녀자 @
$g3 = g31 + g32 + g33;$	@ 추가 공제 @
$g41 = x12;$	@ 보험료 @
$g42 = x13;$	@ 의료비 @
$g43 = x14;$	@ 교육비 @
$g44 = \text{minc}((x43 * 0.4) \sim (\text{ones}(\text{rows}(xso), 1) * a6))';$	@ 장기주택마련 저축공제 @
$g45 = x20;$	@ 기부금특별공제 @
$g46 = aa41 * \text{ones}(\text{rows}(g45), 1);$	@ 표준공제 - 특별공제 하한 @
$g4 = \text{maxc}((g41 + g42 + g43 + g44 + g45) \sim (g46))';$	@ 특별공제 @

```

g5=minc( ( (x18*0.4)~(ones(rows(xso),1)*a5) )');
g6=g2+g3+g4+g5;
tb=zeros(rows(xso),1);
st=zeros(rows(xso),1);
se1=x23;
se2=zeros(rows(xso),1);
se3=x25*jae;
se4=x31;
tax=zeros(rows(xso),1);

```

@ 개인연금 저축공제 @  
 @ 공제 계 = 기본 + 추가  
 + 특별 + 개인연금 @  
 @ 과세표준 @  
 @ 산출세액 @  
 @ 외국납부세액 공제 @  
 @ 근로소득 세액공제 @  
 @ 재형저축 세액공제 @  
 @ 납세조합 세액공제 @  
 @ 최종결정세액 @

※ 프로그램

/\* 납세자 표본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추정 프로그램 (loop) \*/

```

i=1; do until i>rows(xso);
if xso[i,.]<aa1; GOTO JUMP1;
else; GOTO JUMP2; endif;
JUMP1:

```

@ i: 일련번호, rows(xso):  
 급여계급 표본 수 @  
 @ 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  
 제 하한의 대소비교 @  
 @ if 과세소득<근로소득공  
 제, 프로그램 종료 @  
 @ 면세자에 대한 출력자료 @

```
g1[i,.]=xso[i,.];
g2[i,.]=0;
g21[i,.]=0;
g22[i,.]=0;
g23[i,.]=0;
g3[i,.]=0;
g31[i,.]=0;
g32[i,.]=0;
g33[i,.]=0;
g4[i,.]=0;
g41[i,.]=0;
g42[i,.]=0;
g43[i,.]=0;
g44[i,.]=0;
g45[i,.]=0;
g46[i,.]=0;
g5[i,.]=0;
g6[i,.]=0;
tb[i,.]=0;
st[i,.]=0;
se1[i,.]=0;
se2[i,.]=0;
se3[i,.]=0;
se4[i,.]=0;
tax[i,.]=0;
```

```
GOTO JUMP3;
```

JUMP2: @ 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h41=g41[i,.]; @ 특별공제 산출 프로그램 @  
 h4142=h41+g42[i,.];  
 h4143=h4142+g43[i,.];  
 h4144=h4143+g44[i,.];  
 h4145=h4144+g45[i,.];

h50=1;

If h4145<aa41+0.1; GOTO HH0;  
 elseif h41>aa4; GOTO HH1;  
 elseif h4142>aa4; GOTO HH2;  
 elseif h4143>aa4; GOTO HH3;  
 elseif h4144>aa4; GOTO HH4;  
 elseif h4145>aa4; GOTO HH5;  
 else; GOTO JUMP21; endif;

HH0:

h50=0;  
 g4[i,]=aa41;  
 g41[i,]=0;  
 g42[i,]=0;  
 g43[i,]=0;  
 g44[i,]=0;  
 g45[i,]=0;  
 g46[i,]=aa41;  
 GOTO JUMP21;

HH1:

g41[i,.] = aa4;

g42[i,.] = 0;

g43[i,.] = 0;

g44[i,.] = 0;

g45[i,.] = 0;

g46[i,.] = 0;

GOTO JUMP21;

HH2:

g42[i,.] = aa4 - h41;

g43[i,.] = 0;

g44[i,.] = 0;

g45[i,.] = 0;

g46[i,.] = 0;

GOTO JUMP21;

HH3:

g43[i,.] = aa4 - h4142;

g44[i,.] = 0;

g45[i,.] = 0;

g46[i,.] = 0;

GOTO JUMP21;

HH4:

g44[i,.] = aa4 - h4143;

g45[i,.] = 0;

g46[i,.] = 0;

```
GOTO JUMP21;
```

```
HH5:
```

```
g45[i,.] = aa4 - h4144;
```

```
g46[i,.] = 0;
```

```
GOTO JUMP21;
```

```
JUMP21: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산출 프로그램 @
```

```
g1[i,.] = minc(ab1 | (aa1 + (xso[i,.] - aa1) * 0.3));
```

```
gsodk = xso[i,.] - g1[i,.];
```

```
h21 = g21[i,.];
```

```
h2122 = h21 + g22[i,.];
```

```
h2123 = h2122 + g23[i,.];
```

```
h2131 = h2123 + g31[i,.];
```

```
h2132 = h2131 + g32[i,.];
```

```
h2133 = h2132 + g33[i,.];
```

```
h2141 = h2133 + g41[i,.];
```

```
h2142 = h2141 + g42[i,.];
```

```
h2143 = h2142 + g43[i,.];
```

```
h2144 = h2143 + g44[i,.];
```

```
h2145 = h2144 + g45[i,.];
```

```
h21455 = h2145 + g5[i,.];
```

```
h214 = h2133 + g4[i,.];
```

h215=h2133+g4[i,.]+g5[i,.];

If h50<0.5; GOTO JUMP221;

    else;    GOTO JUMP222; endif;

JUMP221:

If h21>gsodk;          GOTO EXIT1;

    elseif h2122>gsodk; GOTO EXIT2;

    elseif h2123>gsodk; GOTO EXIT3;

    elseif h2131>gsodk; GOTO EXIT4;

    elseif h2132>gsodk; GOTO EXIT5;

    elseif h2133>gsodk; GOTO EXIT6;

    elseif h214>gsodk;  GOTO EXIT7;

    elseif h215>gsodk;  GOTO EXIT8;

    else;                GOTO JUMP23; endif;

EXIT1:

g21[i,.]=gsodk;

g22[i,.]=0;

g23[i,.]=0;

g31[i,.]=0;

g32[i,.]=0;

g33[i,.]=0;

g4[i,.]=0;

g41[i,.]=0;

g42[i,.]=0;

g43[i,.]=0;

```
g44[i,.] = 0;  
g45[i,.] = 0;  
g46[i,.] = 0;  
g5[i,.] = 0;  
tb[i,.] = 0;  
st[i,.] = 0;  
se1[i,.] = 0;  
se2[i,.] = 0;  
se3[i,.] = 0;  
se4[i,.] = 0;  
tax[i,.] = 0;  
GOTO JUMP23;
```

EXIT2:

```
g22[i,.] = gsodk - h21;  
g23[i,.] = 0;  
g31[i,.] = 0;  
g32[i,.] = 0;  
g33[i,.] = 0;  
g4[i,.] = 0;  
g41[i,.] = 0;  
g42[i,.] = 0;  
g43[i,.] = 0;  
g44[i,.] = 0;  
g45[i,.] = 0;  
g46[i,.] = 0;  
g5[i,.] = 0;  
tb[i,.] = 0;
```

```
st[i,]=0;  
se1[i,]=0;  
se2[i,]=0;  
se3[i,]=0;  
se4[i,]=0;  
tax[i,]=0;  
GOTO JUMP23;
```

```
EXIT3:
```

```
g23[i,]=gsodk-h2122;  
g31[i,]=0;  
g32[i,]=0;  
g33[i,]=0;  
g4[i,]=0;  
g41[i,]=0;  
g42[i,]=0;  
g43[i,]=0;  
g44[i,]=0;  
g45[i,]=0;  
g46[i,]=0;  
g5[i,]=0;  
tb[i,]=0;  
st[i,]=0;  
se1[i,]=0;  
se2[i,]=0;  
se3[i,]=0;  
se4[i,]=0;  
tax[i,]=0;
```

GOTO JUMP23;

EXIT4:

g31[i,.] = gsodk - h2123;

g32[i,.] = 0;

g33[i,.] = 0;

g4[i,.] = 0;

g41[i,.] = 0;

g42[i,.] = 0;

g43[i,.] = 0;

g44[i,.] = 0;

g45[i,.] = 0;

g46[i,.] = 0;

g5[i,.] = 0;

tb[i,.] = 0;

st[i,.] = 0;

se1[i,.] = 0;

se2[i,.] = 0;

se3[i,.] = 0;

se4[i,.] = 0;

tax[i,.] = 0;

GOTO JUMP23;

EXIT5:

g32[i,.] = gsodk - h2131;

g33[i,.] = 0;

g4[i,.] = 0;

g41[i,.] = 0;

```
g42[i,.]=0;
g43[i,.]=0;
g44[i,.]=0;
g45[i,.]=0;
g46[i,.]=0;
g5[i,.]=0;
tb[i,.]=0;
st[i,.]=0;
se1[i,.]=0;
se2[i,.]=0;
se3[i,.]=0;
se4[i,.]=0;
tax[i,.]=0;
GOTO JUMP23;
```

EXIT6:

```
g33[i,.]=gsodk-h2132;
g4[i,.]=0;
g41[i,.]=0;
g42[i,.]=0;
g43[i,.]=0;
g44[i,.]=0;
g45[i,.]=0;
g46[i,.]=0;
g5[i,.]=0;
tb[i,.]=0;
st[i,.]=0;
se1[i,.]=0;
```

```
se2[i,]=0;  
se3[i,]=0;  
se4[i,]=0;  
tax[i,]=0;  
GOTO JUMP23;
```

```
EXIT7:  
g4[i,]=minc((gsodk-h2133) | aa41);  
g41[i,]=0;  
g42[i,]=0;  
g43[i,]=0;  
g44[i,]=0;  
g45[i,]=0;  
g46[i,]=g4[i,];  
g5[i,]=0;  
tb[i,]=0;  
st[i,]=0;  
se1[i,]=0;  
se2[i,]=0;  
se3[i,]=0;  
se4[i,]=0;  
tax[i,]=0;  
GOTO JUMP23;
```

```
EXIT8:  
g5[i,]=gsodk-h2133-g4[i,];  
tb[i,]=0;  
st[i,]=0;
```

```
se1[i,.]=0;  
se2[i,.]=0;  
se3[i,.]=0;  
se4[i,.]=0;  
tax[i,.]=0;  
GOTO JUMP23;
```

```
JUMP222:
```

```
If h21>gsodk;          GOTO EEXIT1;  
  elseif h2122>gsodk; GOTO EEXIT2;  
  elseif h2123>gsodk; GOTO EEXIT3;  
  elseif h2131>gsodk; GOTO EEXIT4;  
  elseif h2132>gsodk; GOTO EEXIT5;  
  elseif h2133>gsodk; GOTO EEXIT6;  
  elseif h2141>gsodk; GOTO EEXIT7;  
  elseif h2142>gsodk; GOTO EEXIT8;  
  elseif h2143>gsodk; GOTO EEXIT9;  
  elseif h2144>gsodk; GOTO EEXIT10;  
  elseif h2145>gsodk; GOTO EEXIT11;  
  elseif h21455>gsodk; GOTO EEXIT12;  
  else;                GOTO JUMP23;
```

```
EEXIT1:
```

```
g21[i,.]=gsodk;  
g22[i,.]=0;  
g23[i,.]=0;
```

```
g31[i,.]=0;
g32[i,.]=0;
g33[i,.]=0;
g41[i,.]=0;
g42[i,.]=0;
g43[i,.]=0;
g44[i,.]=0;
g45[i,.]=0;
g46[i,.]=0;
g5[i,.]=0;
tb[i,.]=0;
st[i,.]=0;
se1[i,.]=0;
se2[i,.]=0;
se3[i,.]=0;
se4[i,.]=0;
tax[i,.]=0;
GOTO JUMP23;
```

EEXIT2:

```
g22[i,.]=gsodk-h21;
g23[i,.]=0;
g31[i,.]=0;
g32[i,.]=0;
g33[i,.]=0;
g41[i,.]=0;
g42[i,.]=0;
g43[i,.]=0;
```

```
g44[i,.]=0;
g45[i,.]=0;
g46[i,.]=0;
g5[i,.]=0;
tb[i,.]=0;
st[i,.]=0;
se1[i,.]=0;
se2[i,.]=0;
se3[i,.]=0;
se4[i,.]=0;
tax[i,.]=0;
GOTO JUMP23;
```

```
EEXIT3:
```

```
g23[i,.]=gsodk-h2122;
g31[i,.]=0;
g32[i,.]=0;
g33[i,.]=0;
g41[i,.]=0;
g42[i,.]=0;
g43[i,.]=0;
g44[i,.]=0;
g45[i,.]=0;
g46[i,.]=0;
g5[i,.]=0;
tb[i,.]=0;
st[i,.]=0;
se1[i,.]=0;
```

```
se2[i,.]=0;  
se3[i,.]=0;  
se4[i,.]=0;  
tax[i,.]=0;  
GOTO JUMP23;
```

EEXIT4:

```
g31[i,.]=gsodk-h2123;  
g32[i,.]=0;  
g33[i,.]=0;  
g41[i,.]=0;  
g42[i,.]=0;  
g43[i,.]=0;  
g44[i,.]=0;  
g45[i,.]=0;  
g46[i,.]=0;  
g5[i,.]=0;  
tb[i,.]=0;  
st[i,.]=0;  
se1[i,.]=0;  
se2[i,.]=0;  
se3[i,.]=0;  
se4[i,.]=0;  
tax[i,.]=0;  
GOTO JUMP23;
```

EEXIT5:

```
g32[i,.]=gsodk-h2131;
```

```
g33[i,.] = 0;  
g41[i,.] = 0;  
g42[i,.] = 0;  
g43[i,.] = 0;  
g44[i,.] = 0;  
g45[i,.] = 0;  
g46[i,.] = 0;  
g5[i,.] = 0;  
tb[i,.] = 0;  
st[i,.] = 0;  
se1[i,.] = 0;  
se2[i,.] = 0;  
se3[i,.] = 0;  
se4[i,.] = 0;  
tax[i,.] = 0;  
GOTO JUMP23;
```

EEXIT6:

```
g33[i,.] = gsodk - h2132;  
g41[i,.] = 0;  
g42[i,.] = 0;  
g43[i,.] = 0;  
g44[i,.] = 0;  
g45[i,.] = 0;  
g46[i,.] = 0;  
g5[i,.] = 0;  
tb[i,.] = 0;  
st[i,.] = 0;
```

```
se1[i,.] = 0;  
se2[i,.] = 0;  
se3[i,.] = 0;  
se4[i,.] = 0;  
tax[i,.] = 0;  
GOTO JUMP23;
```

EEXIT7:

```
g41[i,.] = gsodk - h2133;  
g42[i,.] = 0;  
g43[i,.] = 0;  
g44[i,.] = 0;  
g45[i,.] = 0;  
g46[i,.] = 0;  
g5[i,.] = 0;  
tb[i,.] = 0;  
st[i,.] = 0;  
se1[i,.] = 0;  
se2[i,.] = 0;  
se3[i,.] = 0;  
se4[i,.] = 0;  
tax[i,.] = 0;  
GOTO JUMP23;
```

EEXIT8:

```
g42[i,.] = gsodk - h2141;  
g43[i,.] = 0;  
g44[i,.] = 0;
```

```
g45[i,]=0;  
g46[i,]=0;  
g5[i,]=0;  
tb[i,]=0;  
st[i,]=0;  
se1[i,]=0;  
se2[i,]=0;  
se3[i,]=0;  
se4[i,]=0;  
tax[i,]=0;  
GOTO JUMP23;
```

```
EEXIT9:  
g43[i,]=gsodk-h2142;  
g44[i,]=0;  
g45[i,]=0;  
g46[i,]=0;  
g5[i,]=0;  
tb[i,]=0;  
st[i,]=0;  
se1[i,]=0;  
se2[i,]=0;  
se3[i,]=0;  
se4[i,]=0;  
tax[i,]=0;  
GOTO JUMP23;
```

EEXIT10:

g44[i,.] = gsodk - h2143;

g45[i,.] = 0;

g46[i,.] = 0;

g5[i,.] = 0;

tb[i,.] = 0;

st[i,.] = 0;

se1[i,.] = 0;

se2[i,.] = 0;

se3[i,.] = 0;

se4[i,.] = 0;

tax[i,.] = 0;

GOTO JUMP23;

EEXIT11:

g45[i,.] = gsodk - h2144;

g46[i,.] = 0;

g5[i,.] = 0;

tb[i,.] = 0;

st[i,.] = 0;

se1[i,.] = 0;

se2[i,.] = 0;

se3[i,.] = 0;

se4[i,.] = 0;

tax[i,.] = 0;

GOTO JUMP23;



```

elseif tb[i,.]<tt2; not2=ttt1+(tb[i,.]-tt1)*t2;
elseif tb[i,.]<tt3; not2=ttt2+(tb[i,.]-tt2)*t3;
else; not2=ttt3+(tb[i,.]-tt3)*t4;
endif;

```

```

st[i,.]=not2; @ 산출세액 산출 프로그램 @

```

```

If se1[i,.]>not2; GOTO EEEXIT1;
· else; GOTO EEEXIT2; endif;

```

```

EEEXIT1:
se1[i,.]=not2;
se2[i,.]=0;
se3[i,.]=0;
se4[i,.]=0;
GOTO JUMP24;

```

```

EEEXIT2:

```

```

not3=st[i,.]*0.2; @ 세액공제 산출 프로그램 @

```

```

if not3>segong; not4=segong; else; not4=not3; endif;
if x31[i,.]>0; not5=1; else; not5=0; endif;

```

```

sse2=not4*(1-not5);
se4[i,.]=st[i,.]*0.2*not5;

```

```

s12=se1[i,.] + sse2;

```

s13=s12+se3[i,.];

s14=s13+se4[i,.];

If s12>st[i,.];           GOTO EEEXIT3;  
  elseif s13>st[i,.]; GOTO EEEXIT4;  
  elseif s14>st[i,.]; GOTO EEEXIT5;  
  else;                   GOTO EEEXIT6; endif;

EEEXIT3:

se2[i,.]=st[i,.]-se1[i,.];

se3[i,.]=0;

se4[i,.]=0;

GOTO JUMP24;

EEEXIT4:

se2[i,.]=sse2;

se3[i,.]=st[i,.]-s12;

se4[i,.]=0;

GOTO JUMP24;

EEEXIT5:

se2[i,.]=sse2;

se4[i,.]=st[i,.]-s13;

GOTO JUMP24;

EEEXIT6:

se2[i,.]=sse2;

GOTO JUMP24;

JUMP24: @ 총세액공제 산출 프로그램 @

not6=st[i,.] - se1[i,.] - se2[i,.] - se3[i,.] - se4[i,.] ;

if not6 < 0; not7=0; else; not7=1; endif;

tax[i,.] = not6 \* not7; @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

GOTO JUMP3;

JUMP3:

endif;

i=i+1;

endo;

i=1; do until i > rows(xso); @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분류 @

if x3637[i,.] < 0.1; x36370[i,.] = 1;

elseif x3637[i,.] < 1.1; x36371[i,.] = 1;

elseif x3637[i,.] < 2.1; x36372[i,.] = 1;

else; x36373[i,.] = 1;

endif;

i=i+1;

endo;

no0[j+1,.]=x36370'x36370;  
no1[j+1,.]=x36371'x36371;  
no2[j+1,.]=x36372'x36372;  
no3[j+1,.]=x36373'x36373;

bu0sumt[j+1,.]=tax'x36370;  
bu1sumt[j+1,.]=tax'x36371;  
bu2sumt[j+1,.]=tax'x36372;  
bu3sumt[j+1,.]=tax'x36373;

gongje1[j+1,.]=sumc(g1);  
gongje2[j+1,.]=sumc(g2);  
gongje21[j+1,.]=sumc(g21);  
gongje22[j+1,.]=sumc(g22);  
gongje23[j+1,.]=sumc(g23);  
gongje3[j+1,.]=sumc(g3);  
gongje31[j+1,.]=sumc(g31);  
gongje32[j+1,.]=sumc(g32);  
gongje33[j+1,.]=sumc(g33);  
gongje4[j+1,.]=sumc(g4);  
gongje41[j+1,.]=sumc(g41);  
gongje42[j+1,.]=sumc(g42);  
gongje43[j+1,.]=sumc(g43);  
gongje44[j+1,.]=sumc(g44);  
gongje45[j+1,.]=sumc(g45);  
gongje46[j+1,.]=sumc(g46);  
gongje5[j+1,.]=sumc(g5);  
gongje6[j+1,.]=sumc(g6);

@ 이하 출력자료 @

```
gross[j+1,]=sumc(xso+x06+x08+x09);
gwase[j+1,]=sumc(xso);
bigwase[j+1,]=sumc(x06+x08+x09);
gsodeuk[j+1,]=sumc(xso-g1);
tbase[j+1,]=sumc(tb);
sanchult[j+1,]=sumc(st);
seaek1[j+1,]=sumc(se1);
seaek2[j+1,]=sumc(se2);
seaek3[j+1,]=sumc(se3);
seaek4[j+1,]=sumc(se4);
sumtax[j+1,]=sumc(tax);
```

```
return;
```

```
@ 프로그램 종료 @
```

<국문요약>

## 微視的 接近方法을 이용한 勤勞所得稅 稅收推計와 稅收效果 推定에 관한 研究

成 明 宰

그 동안 稅收推計에 관한 研究는 많았으나 대부분 巨視分析을 기초로 하고 있어 稅法改正이나 納稅者 分布 變化에 따른 稅收效果 分析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는 巨視分析에 의존한 稅收推計 研究가 稅收變化 趨勢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稅法이나 納稅者 分布 變化에 따른 稅收效果 推定에는 限界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稅法改正 效果를 예측할 수 있는 模型開發이 필요한바, 本 研究는 微視分析을 통해 그와 같은 勤勞所得稅 稅收推計模型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所得稅는 超過累進稅率 體系로 되어 있어 勤勞所得이 增加하면 課標가 增加하고 높은 限界稅率을 적용받는 納稅者 比重이 增大되어 所得稅收는 더 크게 增加하는 특성이 있다. 다만 최근 所得稅 輕減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稅法改正이 進行되었는바 勤勞所得稅 稅收의 增加率 및 實效稅率이 상당히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租稅減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經濟 全般에 걸쳐 賃金水準이 크게 상승하였는바 勤勞所得稅 收入은 크게 增加하고 있다.

1997年의 所得稅法은 勤勞所得控除 限度 擴大와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및 稅額控除率의 上向調整하는 등 稅負擔 輕減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稅收輕減效果는, 勤勞所得控除의 限度 擴大에 의한 것이 약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및 稅額控除率 調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勤勞所得控除의 限度 上向調整에 따른 限界稅收效果는 대체로 控除 水準의 引上幅

과 比例的이며, 勤勞所得稅額控除의 限度 및 稅額控除率을 上向調整의 경우에는 遞減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免稅點 水準 및 免稅者 比率 變化에 따른 限界稅率 適用 課標 區間內의 課標變化, 勤勞所得稅 課稅者들의 算出稅額의 分布 差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Revenue Forecast for Labor Income Tax Using Micro-simulation Model

Sung, Myung Jae

Almost all of studies on revenue forecast in Korea have mainly depend on time-series analyses, and so, it is impossible to predict the effects of tax reform or changes in distribution of taxpayers on revenue. This is because time-series analyses, which do not take into account changes in tax law and transitional changes, only can predict trend of tax revenue. Therefore, we began to develop the micro-simulation model using tax return data which make it possible to measure the revenue effects due to the changes in tax law or distribution of taxpayers.

Income Tax in Korea has progressive rates and so, the revenue growth rate outweighs that of income growth. In the last decade, general level of labor income grew very rapidly in Korea, even faster than the growth rate of nominal GNP. Therefore, Labor Income Tax revenue increased sharply despite several income tax reforms with huge tax relief, even if the effective tax rate declined.

Income Tax Reform in 1996, effective on January 1, 1997, allows higher levels of deduction and tax credit especially for labor income. Our study predicts that about two thirds of revenue effects of the tax relief will come from raising general deduction level and the rest from raising tax credit level. Furthermore, our

study shows that the marginal revenue effect of raising deduction level is almost proportional to the increment in deduction level. However, the marginal effect of raising tax credit level declines with the increment in credit level.

◆ 韓國租稅研究院 發刊圖書 案內 ◆

研究叢書

① KTI 金融模型：金融·巨視 統合模型

崔長鳳·李仁杓/B5 변형/212면/값 9,000원

研究報告書

93-01 租稅體系的 適正化에 관한 研究

孫光洛/B5 변형/101면/값 5,100원

93-02 消費稅 負擔 分布와 高稅率 商品市場의 正常化에 관한 研究

成明宰/B5 변형/205면/값 5,500원

93-03 取得課稅型 相續課稅制度 導入方案에 관한 研究

崔明根/B5 변형/149면/값 4,000원

93-04 租稅支援制度의 現況과 改善方向

尹建永·林周瑩/B5 변형/140면/값 6,100원

93-05 土地稅制의 評價와 向後 政策方向

李性旭·韓相國·崔明根/B5 변형/242면/값 6,500원

93-06 獨逸統一 3年에 대한 經濟的 評價

金裕燦/B5 변형/209면/값 6,000원

93-07 金融先物去來의 導入 妥當性과 經濟的 效果 分析

崔興植·洪範教/B5 변형/161면/값 7,000원

93-08 個別消費稅制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成明宰·金珍洙/B5 변형/330면/값 8,500원

- 93-09 租稅 및 社會扶助政策의 效果分析  
羅城麟·玄鎮權/B5 변형/243면/값 6,500원
- 93-10 共同稅制度의 活用方案에 關한 研究  
朴釘洙/B5 변형/170면/값 7,200원
- 93-11 臺灣의 換率運用과 輸出競爭力  
金宗萬/B5 변형/220면/값 6,000원
- 94-01 資本去來 自由化에 따른 效率的인 通貨 및 資本流出入 管理  
崔長鳳/B5 변형/117면/값 5,500원
- 94-02 租稅負擔率의 決定要因과 適正租稅負擔率의 摸索  
金明淑/B5 변형/102면/값 2,500원
- 94-03 經濟與件의 變化와 關稅率構造의 改編方向  
金珍珠·安鍾錫/B5 변형/216면/값 4,500원
- 94-04 稅收展望과 稅收推計의 改善方向  
成明宰·玄鎮權/B5 변형/174면/값 7,100원
- 94-05 租稅回避行爲에 대한 規制와 課稅合理化 方案  
崔明根/B5 변형/165면/값 7,000원
- 94-06 減價償却의 現況과 政策方向  
玄鎮權/B5 변형/249면/값 9,500원
- 94-07 國稅通則法의 改正方向에 關한 研究  
李哲松/B5 변형/257면/값 6,000원
- 94-08 우리나라 租稅制度 運營費 推定에 關한 研究  
郭泰元/B5 변형/172면/값 4,500원
- 94-09 換率運用과 輸出競爭力  
金宗萬/B5 변형/252면/값 9,900원

- 94-10 外國資本에 대한 課稅制度的 現況 및 改編方案  
金裕燦/B5 변형/159면/값 4,000원
- 94-11 金融實名制 實施 1年の 評價와 政策課題  
安鍾範 外/B5 변형/410면/값 9,000원
- 94-12 租稅政策이 對內外 直接投資에 미치는 效果分析  
安鍾錫/B5 변형/102면/값 3,000원
- 95-01 담배消費稅制의 國際比較와 政策方向  
金珍洙·成明宰·朴釘洙·李性旭/B5 변형/289면/값 11,000원
- 95-02 金融環境 變化와 銀行·企業間 關係의 發展方向  
安鍾吉/B5 변형/257면/값 6,000원
- 95-03 外換 및 資本自由化가 換率에 미치는 影響  
金宗萬/B5 변형/232면/값 7,000원
- 95-04 資産再評價制度的 評價와 改善方向  
玄鎮權/B5 변형/112면/값 4,000원
- 95-05 稅收推計模型과 稅收展望  
成明宰/B5 변형/152면/값 5,000원
- 95-06 財政政策 基調의 測定 및 運用에 관한 研究  
李昌鏞·趙潤濟/B5 변형/69면/값 3,000원
- 96-01 國際通貨制度的 改編論議와 우리나라의 對應  
金宗萬/B5 변형/193면/값 6,000원
- 96-02 教育財政의 構造와 財源擴充方案  
朴釘洙·安鍾錫/B5 변형/212면/값 7,000원
- 96-03 企業間信用과 生産者流通金融의 現況 및 政策課題  
李基榮/B5 변형/156면/값 5,000원

- 96-04 有形固定資產의 經濟的 減價償却 推定  
玄鎭權/B5 변형/169면/값 5,500원
- 96-05 우리나라 換率制度的 改編方向  
金宗萬/B5 변형/226면/값 7,000원
- 96-06 相續·贈與稅制의 合理化 方案  
韓相國·裴俊皓·李光宰/B5 변형/525면/값 16,000원
- 96-07 企業의 借入과 稅制  
孫元翼/B5 변형/138면/값 5,000원
- 96-08 韓國의 分期別 巨視經濟模型 : KIPF96Q  
朴宗奎/B5 변형/155면/값 5,500원
- 96-09 環境汚染低減을 위한 稅制 및 關聯制度 改善方向  
孫元翼 外/B5 변형/216면/값 6,500원
- 96-10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間 財源配分에 관한 研究  
安鍾錫·朴釘洙/B5 변형/275면/값 8,000원
- 96-11 附加價值稅 稅制와 行政의 改善方案  
柳時權/B5 변형/215면/값 6,500원
- 96-12 韓國의 土地稅制  
魯英勳·李性旭·李鎭淳/B5 변형/값 6,000원
- 97-01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間 財源調整에 관한 研究  
朴釘洙/B5 변형/160면/값 6,000원
- 97-02 所有構造와 資本構造의 關係  
金建佑/B5 변형/114면/값 4,000원